

K-IFRS와 세법과의 차이에 따른 개선과제



정영기
한국세무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교수

K-IFRS는 자본시장에서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를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손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엄격한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 경영상 중요한 불편사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IFRS의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결과가 K-IFRS이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왔고, 현재도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흔들리는 과녁에 맞추어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마찰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치유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화두를 꺼내본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는 격언과 같이, 로마제국이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거운 과세를 통한 재정확보가 아니라 가볍고 공정한 과세에 있다는 카이사르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낮고 알게 걷는 제도를 현실화시켰고, 이는 후대에도 계승되어 200년 이상 지속되면서 변영의 토대가 되었던 로마제국의 세제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즉, 오늘날에 있어 세금을 낮고 알게 걷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과 법인세율 인하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만우 교수의 지적^{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인세 부담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인기업의 수입금액이며, 기업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세수와 맞물려 있으며, 사회전체적 회계보고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제거래에 수반되는 과세포착률을 높여서 세율인하의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과 미래의 투자기회를 포착하려는 의욕을 높임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전략(Tax Planning)을 '반칙'이 아닌 '기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S사의 세무조사 결과 S사에 대한 추정 세액이 수 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사는 이에 불복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반칙'과 '기술'의 애매한 경계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S사는 100여개가 넘는 해외 법인을 거느리고 있

주) 이만우, "법인세율과 국가 경쟁력", 상장협연구 제63호(2011년 4월), pp.150.

으며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에 완제품 또는 부품을 사고팔고, 매출액 90% 가까이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업체이므로 과세관청은 S사가 각 해외 법인과 거래가격을 조작해 쉽게 세금을 탈루하는 '반칙'을 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S사는 현존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동원해 멋진 조세전략 '기술'을 발휘했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엄격한 규정에 둘러싸인 골프경기를 통해 가장 간단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몇 해전 미 LPGA에서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연못가에 들어가 먼진 샷을 날렸던 기억을 떠올린다면, '반칙'으로 정해진 것만 반칙으로 별타를 부과할 뿐이라는 간단한 사실을 '반칙'과 '기술'의 경계선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도록 세법에 규정된 '표준재무제표'를 이제는 재무보고나 증권시장의 공시용 재무제표로 '회계·증권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K-IFRS에서는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계정분류에 대하여 최소한의 원칙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비교가능성도 떨어지고, 내용상 동일한 항목이라도 재무제표상에는 다르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에 근거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다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

의 입장에서 증권시장 관련 공시용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업무부담과 비용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주석에 상세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IR 등 대 증권시장 공시효과 뿐만 아니라, IFRS의 원칙중심 접근에 더 충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 외감대상 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가 외부감사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된다면, 과세당국도 감사받은 표준재무제표를 기초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 받게 되어 한층 더 세정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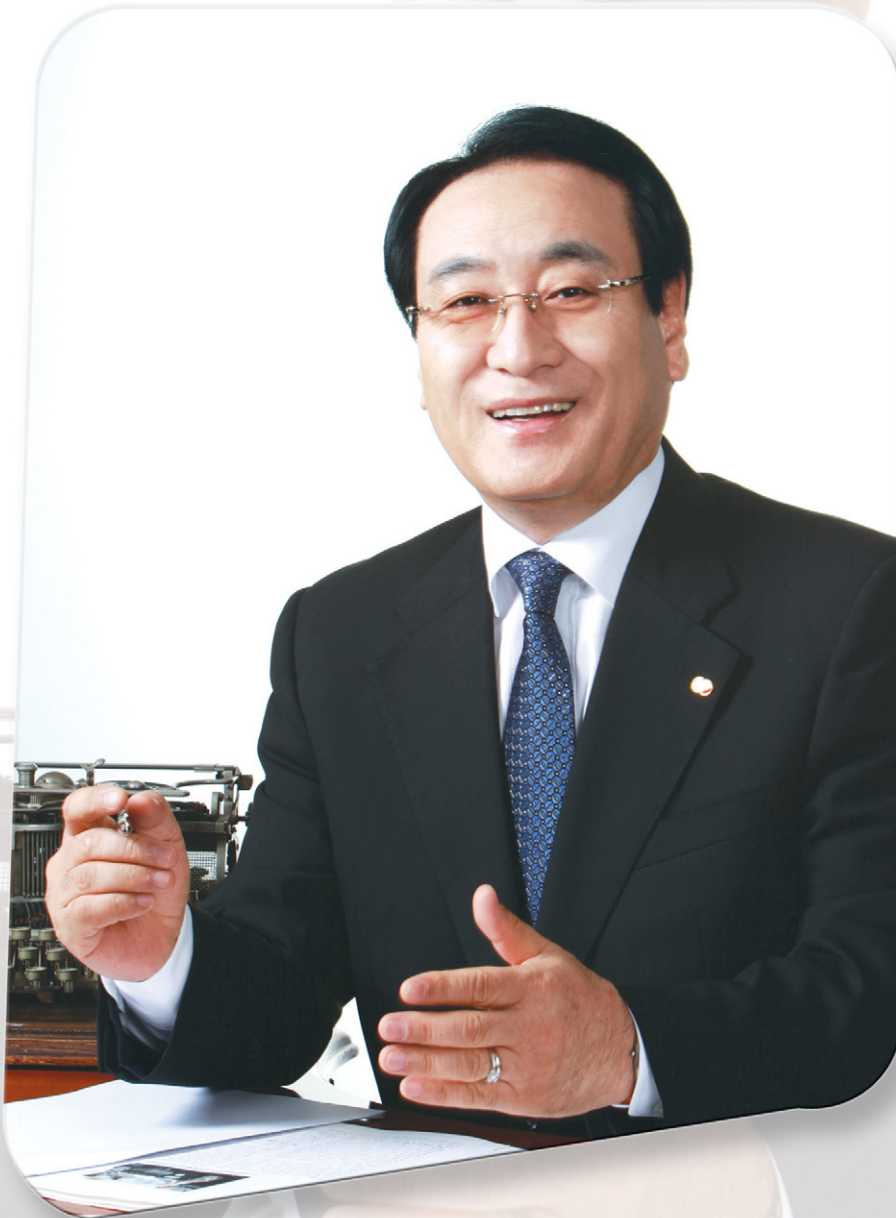
넷째, 법인세 납부대상 기업 중 외감대상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90%에 달하고, K-IFRS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상장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전체 법인세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의 근거에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실태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징수편의 보다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규모, 업종 및 회계기준 적용실태 등 기업별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회계처리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녹색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한전KPS주식회사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 CO., LTD



전국에 걸쳐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발전설비와 국가 주요 전력망인 송변전설비 등에 대한 고품질 책임 정비를 수행하는 한전KPS는 30여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전KPS 태성을 시장을 만나 향후 방침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편집자註〉



◆ 한전KPS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전KPS는 국내의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산업설비 등에 대한 고품질 책임정비를 수행하는 전력설비정비 전문회사입니다.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인 전력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1974년 10월 설립된 한전KPS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비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제작사의 다양한 발전설비를 정비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무결점 정비를 위해 혼을 신는 장인정신, 한번 관계를 맺은 고객과 설비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등은 고객감동으로 이어져 플랜트 서비스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리 3, 4호기 시운전정비’ 수주와 ‘인도 와디화력 O&M 공사’ 계약체결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며,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초로 한국서비스대상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선정됨과 동시에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지원서비스산업 부문 3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관련기관으로부터 서비스 및 품질경쟁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발전설비 리트로핏(Retrofit : 성능개선공사) 주기의 도래, 신항 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기회의 확대 등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부품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다각화와 원자력정비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한 원전 미래성장동력 사업개발 등에 집중하고, 수익 창출과 체계적 관리를 통

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감은 물론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기존 시장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전반적인 경영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KPS는 올해 전 임직원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매출 1조원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업무가무엇인지 세부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전KPS는 상업발전을 시작하기 전 첫 단계인 ‘시운전정비’, 정상 운전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결하는 ‘정상정비’와 설비의 불시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설비를 분해·점검·조립하며 성능을 시험하는 ‘계획예방정비’는 물론 설비의 상태와 성능을 진단·분석하여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정비함으로써 설비를 최적의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측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변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송전선로정비, 활선정비, 전력시설물의 감리·설계·건설·안전진단 및 특고압 직류 해저케이블 및 변환설비 유지정비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GT정비기술센터와 원자력정비기술센터, 솔루선센터를 통해 가스터빈 정비, 원전연료 교체작업을 비롯한 특화기술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발전설비에 관한 토탈정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비인력의 전문화와 고급화에 주력하기 위한 인재개발원과 원자력연수원을 운영,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KPS는 민자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체 자가발전설비, 지역난방 및 집단에너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정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전자, 진동진단, 성능시험, 수명평가, 전기설비 절연진단 등 특화된 기술을 활용한



전문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신규 민자 발전소의 시운전 및 O&M(운전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비교체, 성능개선공사 등 전문건설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진단에서 책임정비, 내용연수 종료 후 계속운전 까지 이어지는 토탈정비서비스는 설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할뿐만 아니라, 특화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A/S 및 B/S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설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관리하도록 도와주어 성능 향상과 계속운전 기여, 유지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뛰어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해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전KPS는 세계 제일의 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비 전문회사입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인재육성이야말로 한전KPS가 오늘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생존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략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와 함께 해외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반의 정비능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2개의 연수전문시설을 운영하여 연중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육성된 전문기술을 사내자격제도로 인증하

여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자격제도는 지난 2002년 정부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 및 보상제도와 연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지속성장과 회사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핵심적 실행주체가 되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전략과 연계된 시스템적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요

한전KPS는 1996년 7월 노사합동 한마음운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등에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3월에는 ‘한마음봉사단’을 창단하여 회사 특화 전문봉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지역주민 등과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어린이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희망터전만들기’라는 사회공



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특성을 부각시킨 전문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을 주요대상으로 회사의 물적·인적·지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음봉사단은 2011년 한 해 동안 63곳의 어린이시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한 2억여원과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의 매칭 도네이션을 합한 금액인 2억 3천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도,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세계 25여개 진출국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펼쳐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2011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신걸로 아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한전KPS는 명품정비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 세계 초일류 기업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액 9,255억원, 영업이익 1,191억원, 당기순이익 1,047억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재무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정비 대상설비의 7년 연속 고장·정지 제로화 등 완벽한 책임정비를 통하여 발전설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KPS 2020'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

여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176건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통해 중장기 수익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당시 5,985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이 2011년도말 1조 8,540억원까지 상승(210% 증가)하여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정비능력 수준과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녹색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2012년도 경영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 정비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내 발전설비의 리트로핏 주기가 도래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BRICs 등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한전KPS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도 경영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최고의 정비수준 확보**입니다. 2013년부터 화력부문에서 민간정비업체와의 경쟁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경영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발전설비 정비를 통하여 무결점 정비를 실현하고, 고객지향형 솔루션 제공과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최고의 정비수준을 확보토록 함은 물론 주력사업을 더욱 완벽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성장 기반 공고화**입니다. 해외사업을 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창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분투자 확대와 O&M 사업을 활성화 하고, UAE 원전수출을 바탕으로 해외 가동원전 용역사업 등 추가적인 원전수출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비기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IGCC 정비기술 자립방안 수립과 종합공사업 수행기반을 구축하는 등 특화사업 부문에도 힘을 기울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입니다. 발전설비 정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R&D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정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 직무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책임경영 내실화**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 확산으로 비전/전략의 공유 활성화, 신인사제도 정착을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등 윤리경영 확산, 임단협 조기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사회적 책임이행과 동반성장 추구를 통하여 지속가능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시부터 제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소통은 업무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서별로 소통이 안되면 본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자연히 사업소에서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고, 결국 회사 전체적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군간, 부서간에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소통함으로써 막힌 부분을 뚫고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이 쌓이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직장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회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회사, 이를 통해 우리들의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태성은 사장은?

- 1951년 생 대륜고(70년), 경북대 물리학과(74년)
- 2004~2005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1 발전소장
- 2005~2009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
- 2010~현재 한전KPS 사장
- (상훈) 1983 동력자원부 장관상
- 1993 과학기술부 장관상
- 2005 산업포장 수상

쌍봉사 철감선사 도윤(道允)의 승탑과 탑비



〈그림 1〉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국보 제57호)



〈그림 2〉 철감선사 승탑 세부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국보 제57호)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 승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승탑이다(그림 1). 쌍봉사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중리 중조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철감선사 승탑과 철감선사 탑비(보물 제170호)가 나란히 있다.

승탑의 주인공인 철감선사 도윤(道允 : 798~868년) 스님은 신라말 선종 9산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조이다. 속성은 박씨이며 어머니가 신이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고 한다. 18세에 출가하여 825년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남천(南泉) 보원(普願)의 법을 전수 받았다. 847년 당 무종의 불교탄압(회창법란)을 피해 범일(梵日) 스님과 함께 귀국하여 금강산에 머무르며 후학을 지도했다.

도윤의 법력과 덕망이 널리 퍼지자 경문왕은 그를 궁중으로 불러 스승으로 삼았다. 868(경문왕 8)년 4월 18일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법을 마친 후 나이 71세, 법랍 44세로 입적하였다. 이에 경문왕은 철감선사(澈鑒禪師)라는 시호와 정소(澄昭)라는 탑호를 내려 예우하였다.

철감선사승탑은 절 왼편 산기슭의 축대를 쌓아 조성한 평지에 세워져 있다. 기본 구조는 팔각당형이며, 각 부분의 표

현이 목조건축의 양식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수작이다. 이 때문에 통일신라시대의 팔각형 승탑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작품이라는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목조 건축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팔각당형의 기단부 위에 탑신과 지붕돌이 놓여 있으며, 지붕 윗면의 상륜부는 없어지고 원형의 찰주공(擦柱孔)만 남아 있다. 기단부는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졌고, 하대석은 상하의 2단이다. 하단은 원형의 평면을 보이며, 측면에는 운룡문(雲龍文)을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 전면에는 두 마리의 용이 보주를 가운데 두고 앞발을 내밀어 다투고 있으며 상단은 여덟 귀퉁이에 연잎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사자를 조각하였다. 각 면에 조각된 사자는 앞다리를 들거나 구부리고 앉아 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대석은 연화대와 높은 탑신괴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화대는 원형으로 측면에 16엽의 양련을 조각하였는데, 연판의 중앙에는 화려한 꽃문양을 장식하고 있다. 탑신괴임의 귀퉁이에는 상다리모양의 세로로 세운 짧은 기둥을 두고 그 안에 안상을 1구씩 깊게 표현하였으며, 안상 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가릉빈가를 양각으로 새겼다. 가릉빈가의 상반신은 나체형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였고 하반신은 넓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새의 모양이다. 큰 날개를 펴고 비파, 피리, 통소, 바라, 장고 등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가릉빈가는 극락정토에 사는 상상의 새로 철감선사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탑신부는 8각 탑신의 귀퉁이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위 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배흘림기둥이다. 배흘림기둥은 원래 목조 건축의 기둥 양식이지만 백제 무왕대에 건립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조건축을 석조건축으로 충실하게 변안할 경우 표현되기도 하였다.

탑신부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문비(門扉), 사천왕상, 공

양비천상 등이다. 특히, 문비 좌우의 기둥과 상부의 창방, 평방, 소로 등은 목조 건축물을 그대로 축소하여 만든 것 같은 뛰어난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문비 중앙부의 문고리는 반원형으로 위쪽으로 올려져 자물쇠는 양쪽에서 고리를 끼워 잠그게 되어 있다. 석조승탑에 표현된 문비 장식은 탑신 내부에 봉안된 스님의 사리를 튼튼하게 수호하기 위한 염원일 것이다. 이처럼 정성껏 문비를 제작하여 지물쇠를 걸어 수호하고자 하는 굳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괴되어 그 안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붕돌은 8각으로 낙수면이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기왓골이 표시되었다. 기와 끝에는 암막새와 수막새의 막새기와를 나타내었는데 수막새기와에는 실제 목조 건물의 지붕에 덮힌 기왓장처럼 8엽의 연화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지붕돌 아랫면에는 4곳에 비천상, 2곳에 향로, 나머지 2곳에 꽃무늬가 새겨졌으며 서까래와 부연까지 나타내었다.

기단부의 운룡문, 탑신부의 사실적인 사천왕상과 문비, 지붕돌의 세부 목조 건축양식 등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 최고의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문양이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는 장엄장식은 불교의 이상향인 서방극락 정토를 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감선사의 승탑 바로 옆에는 도운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쌍봉산고철감선사비명(雙峯山故澈鑑禪師碑銘)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현재 비신(碑身)은 없어지고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만 남아 있다(그림 3). 이수 상면 양쪽 끝과 중앙에는 귀꽃을 세워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수나 귀부의 전체적인 조형은 매우 동적이며, 특히 오른쪽 앞발을 들어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격동적인 신라 말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탑과 한 쌍으로 세워진 탑비는 사찰과 산문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며 불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



〈그림 3〉 철감선사 탑비(보물 제170호)

력의 일환이었다.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허락과 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후원 세력이 튼실해야만 가능했다. 이러한 승탑과 탑비의 건립은 고승대덕을 추모하는 목적과 함께 산문이나 사찰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9세기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오면서부터 승탑과 탑비의 건립이 유행하였다. 선종은 당시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던 교종과는 달리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선종 전래 이후 선승들은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방 호족들의 도움 아래 각 지방에서 구산선문을 개창하였다. 각 산문에서는 경전보다 가르침을 직접 전수해준 스승을 더욱 숭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불상보다 조사들의 사리와 유골을 봉안한 승탑이 더 중시되어 많은 승탑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철감선사 도운의 승탑이 가장 조형적으로 돋보인다. 📧

최선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유 배 군 대표이사

대표이사	유배근
설립년도	2000년 11월 01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9
대표전화	02) 2189-4567
상 장 일	2012년 02월 23일
결 산 기	12월
업 종	화학섬유 제조업
홈페이지	www.huvis.com

휴비스

Huvis
Advanced Material · Fiber Leader
JV of SK & samyang

▣ 섬유 산업의 핵심, 폴리에스터 국내 생산량 1위

휴비스는 첨단 화학 섬유·소재 전문 기업으로, 2000년 SK케미칼(주)과 삼양사가 화섬 부문을 독립시켜 전략적으로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출범했다.

국내 화섬업계 굴지의 두 기업을 모태로 탄생한 휴비스는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폴리에스터 전문 사업화를 진행하여 장섬유와 단섬유,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료가 되는 칩(Chip)에 이르는 폴리에스터 전 제품을 라인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용에서부터 자동차, 건축 자재, 위생제품 및 페트병 등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전북 전주시와 울산광역시 소재의 생산공장에서 국내 최대 생산량인 연간 60만톤의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사천공장을 포함하면 연간 75만톤에 이른다.

각 제품별로는 단섬유부문에서는 국내생산량 1위, 전 세계 LM 생산량 1위, 전 세계 Conju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섬유 부문에서는 국내생산량 3위, 국내 차별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량 1위를 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폴리에스터 업계 1위의 연구 인력(42명, 2011년 12월 말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R&D 센터는 다수의 세계일류상품 지정 및 국내외 특허를 개발하고 업계 최대의 국제 과제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휴비스는 출범 이후 2006년까지 사천휴비스화섬유한공사 설립, 둔포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 대전 R&D 연구소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차별화

제품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9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폴리에스터 산업을 주축으로

섬유 시장의 지속 성장 전망

섬유시장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작지의 한계와 기후요인, 높은 Cost 등으로 천연섬유의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폴리에스터 섬유는 천연섬유의 대체용도 이외에도 자동차 내장재, 의류소재, 위생재, 기능성 소재 등으로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산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대의 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폴리에스터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섬유 산업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기업이 최근 인건비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수혜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휴비스는 실제로 2011년 7월 1일에 발표된 한EU FTA이후 발효 이전보다 동 기간 대비 소폭의 매출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 국가인 대만에 비해 관세 철폐에 따른 4%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별화 제품군으로 판매를 집중하여 유럽시장의 관세 철폐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 섬유 수출국으로 연간 수출액이 약 800억원에 달해, 한미FTA가 발효된 현재, 4.3%의 관세 철폐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1,000억원대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차별화 제품 확대 및 운영개선 활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

폴리에스터 산업은 크게 단섬유(SF)와 장섬유(FY), 그리고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는 칩(Chip) 산업으로 구분된다.

폴리에스터 단섬유(SF)의 주요 제품으로는 LM, Conju(콘쥬), 제면 레굴러 등이 있으며, 제면 레굴러 및 Conju(콘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및 인도 업체들의 저가 경쟁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그러나 휴비스의 주력 제품인 LM 등의 차별화 제품은 당사의 몇몇 글로벌 메이저업체들이 과점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후발기업의 신규진입이 어렵다. 특히, 차별화 제품은 자동차 내장재, 산업 자재, 건축, 의류용 등 산업용 소재 시장을 대체하며 수요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FY)의 경우, 범용제품은 완전경쟁시장구조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가격 경쟁력이며, 발생 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갈수록 기술 진보를 통한 신설비들의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아지므로 늘 후발 주자가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갖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차별화제품의 경우는 기술진입장벽이 있는 독과점시장 구조로 휴비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시장 수요 증가 및 국내 직/편물 산업의 시장 경쟁

력 회복은 국내 폴리에스터 업체의 지속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존 핵심 사업인 폴리에스터 분야에서 차별화 제품을 확대하

는 등 기존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마켓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시장과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매출과 이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각 부서 간 업무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등의 운영개선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나 갈 방침이다.

▣ 슈퍼 섬유의 본격적 사업화 및 신소재 사업 추진

휴비스는 특수산업에 적용되는 슈퍼섬유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여 미래의 수익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그 동안 축적해 온 기술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난연성, 전기 절연성의 기능을 갖는 메타 아라미드(Meta Aramid)는 현재 세계 탑클래스 수준인 듀폰(DuPont) 수준의 기술력에 다다랐으며, 2012년 full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전주공장에 1,000톤 생산이 가능한 생산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3,000톤까지 생산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내열성 소재의 PPS 분야는 판매 채널을 강화하여 Bag filter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



한국회계기준원 2012년 총회 주제

박승복 회장은 3월 6일(화),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사업, 결산 승인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참석

이원선 상무는 3월 5일(월),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법률시장의 근간을 구축하고 있는 변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 제2차회의가 3월 15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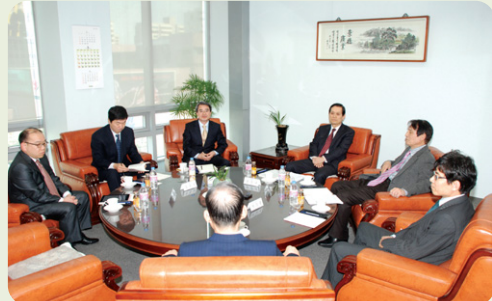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개정상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정코자 마련되었다.

한국IR협의회 현판식 참석



서진석 상근부회장은 3월 20일(화)에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IR협의회(구, (사)한국IR서비스) 현판식에 사원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와 개선방안’ 좌담회 개최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와 개선방안’에 관한 좌담회가 3월 13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좌담회는 사외이사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바람직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상구 명예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고 강병호 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선웅 소장(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운상 과장(법무부 상사법무과), 남영찬 상임고문(SK텔레콤), 연강흠 교수(연세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자세한 토론내용은 27p~38p 참조)

제154차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 개최



제154차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회가 3월 29일(목),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소속회원 및 관련업무 담당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조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차별화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격동기의 서양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위기극복 해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남경태 사회학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대 서양문명의 시작(대항해,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일본 회사법 개정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일본 회사법 개정관련 국제세미나가 3월 30일(금), 본회와 한일산업금융법포럼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한국예탁결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개정상법 시행을 앞두고 상장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중 이미 일본의 회사법에서 일부 수용하여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 일본의 회사법 대폭적인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일본 회사법제 개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1년 일본 회사법 개정시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 이어 우리 상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5월호에 게재 예정)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이원선 상무는 3월 30일(금),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법(회사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상장회사 특례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였다.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교육 서비스 실시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교육 서비스가 한화(3월 8일(목)), 미래에셋증권(3월 16일(금), 22(목)), 두산(3월 22일(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맞춤형 교육은 상장회사관련 법규 및 공시·회계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필요에 맞추어 실시하는 무상 교육서비스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법규상 상장법인 특례사항, 기업지배구조, 기업공시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불공정거래규제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원사를 직접 방문 또는 회원사가 본회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교육문의 : 공시제도파트 2087-7161~4

▣ 본회 인사발령 (4월 1일자)

• 승진

박성록 대리(조사2팀 경제조사파트)	→	과장
김도희 대리(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	과장

연수행사

근로기준법 주요 실무쟁점 연수 실시

근로기준법 주요 실무쟁점 연수가 3월 16일(금),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노사관련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된 법규내용을 심도있게 해설함과 동시에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및 예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교육과목으로는 2012년 노사관련 주요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실무쟁점 등 3과목(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계약체결과 국·영문계약서 작성실무 특별연수 실시



계약체결과 국·영문계약서 작성실무 특별연수가 3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2일간,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계약서 작성업무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성공적인 거래와 함께, 문제 발생시 법적공격 및 방어수단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노하우를 국문과 영문계약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계약체결의 개요, 계약체결 전후 관리, 주요 국·영문계약서 예시 및 해설 등 총 7과목(1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내부감사 실무기법 핵심과정 연수 실시

내부감사 실무기법 핵심과정 연수가 3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는 감사실무기법과 모범운영사례 중심 등의 교육을 통해 능동적으로 기업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내부감사 모범 운영 사례, 내부감사부서의 올바른 준법리스크의 이해와 접근방법, ERP 시스템 오류 확인 및 해결을 위한 감사실무 등 총 8과목(2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채권관리 Q&A 연수 실시



채권관리 Q&A 연수가 3월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2일간,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방법 등 전문적 절차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문답식 구성으로 마련되었으며, 임의회수, 담보관리, 채권보전 등 총 5과목(16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법 주요 실무쟁점 연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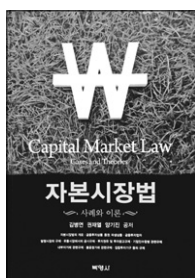


공정거래법 주요 실무쟁점 연수가 3월 28일(수),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공정거래관련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경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책이 집중 추진하고 있어 해당업무와 관련된 법규정 속지와 정확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 공정거래법의 전체적 구조와 원리, 등 총 6과목(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신간안내



자본시장법(사례와 이론)

저자 : 김병연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양기진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증권거래법 등 과거 6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으로 그 규제범위는 매우 방대하여 많

은 서적과 논문이 출간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 오랜 관심을 가져온 저자들은 이 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출간된 서적과 달리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풀이하여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관심있는 일반 독자까지 효율적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목 차

-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 제3장 금융투자업자
-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 제9장 불공정거래 관련규제
- 제10장 집합투자증권의 규제

발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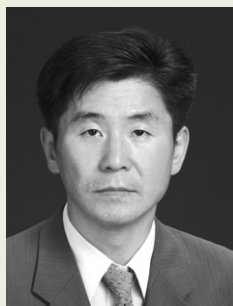


2011 개정상법상 이사의 이해상충거래규제 해설

본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가 신설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사의 이해상충거래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용의 해석이나 적용범위 등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관련업무 담당임직원이 손쉽게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 개정상법상 이사의 이해상충거래규제 해설'을 발간하였다.

본서의 주요내용은 이사의 신인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규제 등이 게재되었으며, 이론적 내용보다 실무적용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부분을 해설하였다.

퇴직급여부채 회계처리 관련 회계감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심 상 현 상무
유플랜보험계리컨설팅

I. 배경

K-IFRS의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부채의 측정개념이 보고기간말 현재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청산가치적립방식’에서 종업원의 퇴직시점을 예상하여 미래 퇴직시점의 퇴직급여를 보고기간말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바, K-IFRS에서는 퇴직급여부채의 측정과 관련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59).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계리보고서를 근거로 K-IFRS상 퇴직급여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의 인증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되는 3자 검증은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계리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독립된 제3자로 하여금 계리보고서를 심사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실무적인 이유로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의존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이해와 충돌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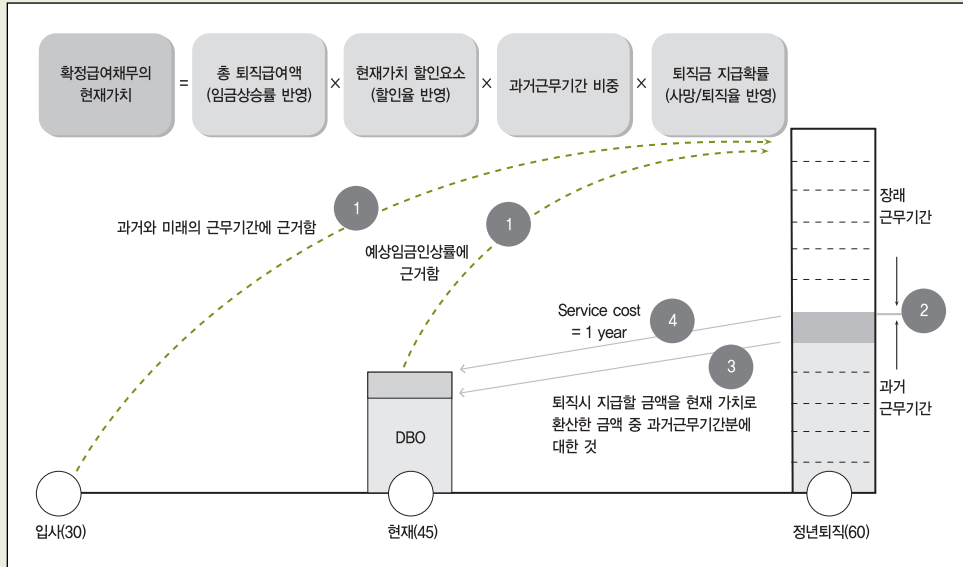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퇴직급여부채 평가절차 관련 주요 이슈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수리적 가정의 주요 내용과 퇴직급여부채 평가절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퇴직급여부채 감사절차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퇴직급여부채의 평가 - 평가로직과 보험수리적 가정

1. 퇴직급여부채의 평가로직

①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개별 직원에 대해 퇴직시점까지 매년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방식이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산출에 사용된다.



② 퇴직급여채무(Defined Benefit Obligation)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기전 총 채무액을 말한다. 재직 중인 종업원 각 개인에 대하여 산출 기준일 시점까지 투입된 근무용역으로 인하여 가득된 퇴직급여액이 언젠가는 발생할 해당 종업원의 미래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는 금액이 된다.

종업원 각 개인의 산출 기준일 현재 연령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퇴직급여액에 향후 매1년 단위로 해당 연령의 퇴직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을 산출기준일 시점의 근속년수로 할당하여 정년연령까지 계산하여 누계한 값으로 결정되며, 기초의 채무를 연초에 예상한 비용(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을 4등분하여 매분기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

③ 당기근무원가(Normal Cost)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1년 더 일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 채무의 증가액을 말한다. 재직중인 종업원 각 개인에 대하여 산출 기준일 시점까지 가득된 퇴직급여와는 상관없이, 당기 1년간 투여한 근무용역이 언젠가 발생할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미치는 금액이 된다.

종업원 각 개인의 산출 기준일 현재 연령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향후 매 1년 단위로 당해년도 퇴직급여액에 해당 연령의 퇴직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을 해당 근속년수로 할당하여 정년연령까지 계산하여 누계한 값으로 결정하며, 회계연도말 산출 값을 기준으로 당 회계기간 동안 비용을 확정한다.

④ 보험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 & Loss)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정치가 기초에 비하여 기말에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와 회계연도 동안 실제 발생하는 상황과 기초에 예상했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

부채관련

- 가정과 실제 경험의 차이에 의한 확정급여채무의 변화
(예 : 퇴직용 임금인상을 등이 기대한 것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가정치의 변화에 의한 확정급여채무의 변화
(예 : 이자율이 변동하여 할인율을 조정할 경우)

자산관련

- 가정과 실제 수익률 차이에 의한 자산가치의 변화
(예 : 기대수익률은 8%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5%인 경우)

2. 보험수리적 가정

① 예정 퇴직률

종업원 직군(정규직, 계약직 등), 직종(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등), 사업장, 성별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이 상이한 경우, 즉 퇴직률에 있어 각 그룹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각각의 그룹에 적합한 예정 퇴직률을 적용해야 한다.

하나의 퇴직률 적용 그룹에 속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기업 자체적인 경험퇴직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300명 미만인 경우는 자체 경험률 산출 모집단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계 공통률, 즉 보험개발원 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참조퇴직률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퇴직률 적용 그룹의 성격에 따라 전 기간 단일퇴직률 적용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른 경험퇴직률 적용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 및 판단은 경험 있는 보험계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험퇴직률은 통상 통계적 보정 기법을 활용하여 결정하는 바, 직전 3~5년 정도의 퇴직자 명부를 활용하여 각 연령별로 연간 퇴직자 수를 구하고, 각 기간 연령별 연시 재직자 수 대비 퇴직자 수를 계산하여 조제 퇴직률을 산출한다. 조제퇴직률의 Graph는 굴곡이 심한 곡선으로서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우발적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평평한 Curve로 보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5점 이동 평균법을 2회 정도 실시하여 보정퇴직률을 계산한다.

한번 산출한 경험퇴직률은 K-IFRS 제1026호 『퇴직급여 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문단 27을 근거로 하여 대체로 3년 정도는 퇴직급여 채무 산출 logic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② 예정 사망률

종업원 직종(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등), 사업장,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발생 빈도를 나타낼 것이나, 그 빈도수가 극히 미미하여 산출 모집단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개발원 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생존, 사망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③ 예정 승급률

종업원 직군(정규직, 계약직 등), 직종(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등), 사업장, 성별에 따라 기업의 임금정책에 있어 상이함을 갖는다면 각 그룹별로 적합한 예정 승급률을 적용해야 한다.

승급률이란 매년의 임금인상률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기업의 직급, 호봉 등 임금정책에 따라 연령 또는 근속년수가 증가하면서 상승되는 임금의 변화 추이다. 즉 미국, EU 등 지에서의 능력급 연봉제와 달리 연공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를 말한다.

하나의 승급률 적용 그룹에 속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기업 자체적인 경험 승급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300명 미만인 경우는 자체 경험률 산출 모집단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계 공통률 즉 보험개발원 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참조 승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급률 적용 그룹의 성격에 따라 전 기간 단일 승급률 적용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른 경험 승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 및 판단은 경험 있는 보험계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번 산출한 경험 승급률은 K-IFRS 제1026호 『퇴직급여 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문단 27을 근거로 하여 대체로 3년 정도는 퇴직급여 채무 산출 logic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예정 임금인상률

종업원 직군(정규직, 계약직 등), 직종(생산직, 사무직, 연구직 등), 사업장, 성별에 따라 기업의 임금정책에 있어 상이함을 갖는다면 각 그룹별로 적합한 예정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

매년 임금인상률은 기업의 임금정책, 국가의 경제 환경 및 물가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경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전 3~5년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산출 평균한 후 장래 예측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예정 할인율

장래 발생할 퇴직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를 반영한다. 기준서 문단 83에 따라 산출 기준일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단, 그 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때 예정 할인율은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은 국내 우량회사채 시장이 충분히 두텁다고 판단하여 우량회사채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채권 평가기관에서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모무보증 채권으로 가급적 초우량(AAA)회사채 수익률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종업원의 예상 평균 잔여근무기간을 산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만기의 우량회사채 수익률을 구간 보정하여 산출하되, 매 회계연도말 결산일에 산출하여 적용하고, 분기 및 반기 결산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Roll Forward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III. 퇴직급여부채 평가관련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체크포인트와 이슈

1. 퇴직급여부채 평가관련 회계감사 체크포인트

- ① 기업의 인구동태적 현황, 임금 구조, 급여 규정 분석 측면
 - 기업 분석 : 종업원 수, 평균임금 합계액, 통상임금 합계액, 퇴직급여 총당금 합계액, 평균근속연수, 평균 연령 등
 - 임직원 구성별로 퇴직률 및 승급률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Group에 대한 분리 산출 여부
 - 연령,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 산출 Group별로 상이하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 분리 산출 여부
 - 임금 Peak제, 직무전환제 등 기업의 독특한 고용 구조 확인
- ② 보험수리적 가정 측면
 - 예정할인율의 적정성 검증
 - 우량 회사채 수익률로서 예상지급시기에 대응하여 산출했는지 여부
 - 전년도 산출 방식과 일관성, 공인된 채권 평가기관의 공시 수익률 참조 여부
 - 예정퇴직률의 적정성 검증
 - 기업의 최근 3~5년간의 퇴직률 추이를 활용하여 최선의 추정을 하였는지 여부
 - 종업원의 고용 성향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했는지 여부, 경험퇴직률 산출 Group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여부
 - 예정승급률 및 임금인상률
 - 승급률 산출 Group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 여부
 - 종업원의 연령 및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추이를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
 -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임금인상률 추이와 장래 물가상승률 추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정 임금인상률

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 예정사망률
 - 사망퇴직시 중도퇴직 급부 이상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정사망률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③ 평가 Process 측면

- 퇴직급여 지급 규정의 산출 logic의 정확한 반영 여부
 - 법정 퇴직금 이외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예측단위 적립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 logic으로 구현했는지 여부
 - 중도퇴직과 사망퇴직의 지급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산출 logic으로 구현했는지 여부
 - 연 미만 근속연수의 처리 방법(일할, 월 미만 절상 등)의 구현방식
 - 휴직기간, 수습기간 등 근속연수에서 차감해야 하는 경우 및 군복무기간 근속연수 가산 규정의 산출 logic 반영 여부
- 기타 의제외무의 산출 logic에 반영 여부
 - 퇴직급여 지급 규정 이외 노사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규정
-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 산출 logic 확인
 - 근속기간 1년 이내 퇴직시 퇴직급여 미지급 logic 반영 여부
- 퇴직급여 규정의 변경 내력 확인 및 산출 logic에 반영 여부
 - 과거 누진제 규정에서 법정 퇴직금 규정으로 변경된 경우
 - 과거 근무분(가득급여채무)을 동결(Frozen)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경우
- 전출자 및 전입자, 파견자 등 특이한 Case의 처리 상태 확인

④ 재무제표 작성 측면

- 재무제표, 주석·공시 사항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작성된 퇴직급여채무 계리평가 보고서와 일치 여부
- 보험수리적손익 발생의 원인 분석
 - 기업 합병, 축소·정산, 과거근무원가 등 인위적인 퇴직급여채무 증감 요인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발생시킨 경우
- 당해연도 퇴직급여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 정산 손익의 회계처리
- 당해연도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의 축소가 발생하는 때 과거근무원가 회계처리

2. 퇴직급여부채 평가관련 회계감사 이슈

외부감사인인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계감사상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① 독립성 부재

연금사업자는 고객인 기업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수탁자의 추정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② 전문성 미흡

전문성이 부족한 저비용 인력(신입 계리사 등)이 과다한 산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③ 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업무관행

기업별 고용조건이 상이하고, 근로환경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연금사업자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이와 같은 기업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K-IFRS 조기적용기업의 퇴직급여부채 감사결과 다양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 퇴직급여부채 감사결과 발견된 오류사례 >

▶ A은행 사례(OO계리컨설팅에서 평가 대행)

- 각 직군별 종업원 수가 경험률 산출에 충분한 모집단 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빈약한 참조퇴직률의 일정 비율을 적용함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76에서의 보험수리적 가정 최선 추정 반영에 있어서 미흡함.
- 예정 승급률의 결정에서도 기업내 연공서열과 직급, 호봉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빈약한 일정률(5%)의 일괄 적용은 역시 퇴직급여의 궁극적 원가 결정에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함.
- 과거 3년간 퇴직률 추이는 물론 급여 체계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은 서로 상이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전체를 묶어서 적용함은 적절치 않음.

▶ B기업 사례(OO퇴직연금 사업자가 평가 대행)

-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의 퇴직자 발생 시점을 연 중앙으로 가정하지 않고, 연말 퇴직을 가정함.
- 국내 모든 보험수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 시점을 연 중앙으로 가정하는데, 이를 위배하고 연말 퇴직 발생을 가정한다면 산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 규모가 각각 1/2년씩 확대됨으로써 부채 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C기업 사례(기업 내부에서 자체 평가)

-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준정년 퇴직급여(정년이 임박해가는 시점에 조기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 퇴직금 이외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지급 특례를 산출 logic에 반영하지 않음.
- C기업은 방어 논리로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산출 logic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특례 규정에 일정 조건에 도달하여 퇴직하면 퇴

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산출 logic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 D기업 사례(OO퇴직연금 사업자가 평가 대행)

-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 퇴직시 근속기간 산정에서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1월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직 종업원에 대한 근속기간 산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업의 퇴직금 지급 관행은 계약직 종업원에 대해서는 일수 계산을 하여 지급함.
- 그러나 부채 평가 산출 logic은 계약직에 대해서도 월 미만을 절상하는 산출 logic으로 구현함. 이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업의 과거 지급 관행을 준용하여야 함.

▶ E기업 사례(OO퇴직연금 사업자가 평가 대행)

- 회계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개정함.
- 이에 직전 회계연도말 평가된 채무액이 당기말 평가에서는 크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부분은 퇴직급여 지급(비용)으로 인한 감소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보험수리적손익으로 계산하여 포괄손익으로 인식함.
- 그러나 이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이므로 규정 개정일 현재 퇴직급여 부채 평가를 시행하여 부채의 감소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재무제표상에 부(-)의 과거근무원가로 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IV.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회계감사 목적으로 별도의 계리법인을 활용한 퇴직급여 부채의 산출 · 검증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실익이 미미한 상황에서,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산출 자료를 활용할 수

〈주요 K-IFRS 조기적용 기업의 확정급여채무(퇴직충당부채) 현황〉

회사명	K-GAAP	K-IFRS		
	퇴직충당부채	확정급여채무	기준변경효과	총자산대비 비중
삼성전자	20,455	19,975	△2.3	2.2
한국전력공사	10,711	11,608	8.4	1.3
포스코	9,812	10,132	3.3	2.1
현대자동차	14,166	14,405	1.7	3.2
LG전자	6,100	6,272	2.8	2.8
SK텔레콤	1,097	1,060	△3.4	0.5
중소기업은행	963	844	△12.3	0.1
평 균	63,304	64,296	1.6	1.3

* 주요 K-IFRS 조기적용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가치에서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결과 평균 1.6%의 부채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경된 확정급여채무가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없도록 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퇴직급여부채 감사 실무에서 발견된 이슈사항들은 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의존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퇴직급여부채의 평가와 재무제표 작성의 최종 책임은 기업에 있으므로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계처리 실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정 퇴직물, 예정 사망물, 예정 승급물, 예정 임금상승물, 예정 할인율 등 퇴직급여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 전반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측단위적립방식, 확정급여부채 및 사외적립자산, 당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등 퇴직급여부채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구성항목을 이해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업무수행방식이 요구된다.

한편, 퇴직급여부채 평가와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체크포인트의 이해와 기업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리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외부감사

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금사업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K-IFRS 도입 초기에는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부채와 외부감사인 자체적으로 산출한 퇴직급여부채를 비교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절차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에서 발견된 외부감사 주요 지적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회사의 퇴직급여부채 관련 프로세스에 반영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요 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계리보고서 제공서비스를 유료화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퇴직급여부채 평가시스템 구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사업자 소속 계리전문가 1인당 약 100여사에 대해 집중된 시기에 퇴직급여부채를 평가하고 있어 과도한 산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마무리되면 주요 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계리보고서 제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가 유료화 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의 계리보고서와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 입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익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K-IFRS 도입 초기에 보험수리적 가정 및 퇴직급여부채 평가 프로세스 관련 계리 시스템을 상용 ERP 등을 통해 회사 내부적으로 구축하고(초기 비용 발생), 동결과에 대한 독립된 검증비용만을 지출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퇴직급여부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와 개선방안” 좌담회



이번 좌담회는 사외이사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사외이
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편집자 註〉

- 일 시 : 2012. 3. 13(화), 15:00
-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 사 회 : 남 상 구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 토론자 : 강 병 호 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 선 응 소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 윤 상 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남 영 찬 상임고문 (SK텔레콤)
연 강 흠 교수 (연세대학교)

(성명 가나다 순)

1 사외이사제도 도입효과



남 상 구 교수

■ **남상구** :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히 지났고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완·개선되어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고, 반면에 사외이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제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경험을 하지만 이런 관심이 일시적·피상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진지하게 사외이사제도를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외이사제도 평가에 대해서 연강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강흠** : 최근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사외이사제도가 그 동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사외이사제도가 없었다면 기업들이 현재보다 좋아졌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외이사제도가 나름대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의 비판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므로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개최 전 문제가 될 만한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안건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사전스크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사외이사를 도입한 지 우리보다 45년 이상 앞서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향후 더 발전할 기반은 충분히 마련하였으므로 사외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 강 흠 교수

■ **남상구** : 역설적이지만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웅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선웅** : 저도 연강흠 교수님 의견과 같이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들어와 회사의 경영 및 이익분배 등에 참여하여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영진과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사외이사가 선임되고, 언론의 비판과 같이 전직 관료를 대거 영입함으로써 회사 로비스트로 사외이사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직 관료 전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견제가 이루어지거나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이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의 숫자가 많다고 주주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할 텐데 하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남상구** : 말씀하신대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이를 두고 회사의 바람막이 내지 로비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바람막이 내지 로비스트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직접 제도를 운영하는 남영찬 고문님께서 사외이사 운영의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남영찬**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회사 지배구조개선이나 투명성 제고 등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외이사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회사는 과거보다 더 이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비교적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회사마다 차이도 있지만 최근 언론에서 사외이사가 감독기능 수행을 도외시키고 회사의 로비스트 내지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남상구** : 대체적으로 제도 도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가 제도적으로만 보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책당국에서는 또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김윤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상** : 개정상법이 공포되기 전인 작년 2월부터 상법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재무위원회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으나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개선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사회는 미국식 감독형 이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감독형 이사회를 채택하지 않는 한 사외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집행임원제도 등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사외이사제도만의 손질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을 보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기 보다 정치적이고 일시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 과연 회사제도를 위한 진정한 고언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위 관료출신 낙하산인사를 비난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열심히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분도



김 선 응 소장



남 영 찬 상임고문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느냐 보다는 사외이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겸직 부분을 개정해서 비상장회사의 집행임원을 두 곳 이상 맡고 있으면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 임원을 여러 곳 맡고 있으면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윤 상 과장

■ **남상구** : 제도적으로는 많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면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윤상 과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와 관련한 언론의 내용이 사외이사제도 개선의 제언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반응을 포함해서 강병호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사외이사의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호** :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를 열심히 보완해도 우리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어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사외이사가 1년에 4번 출석해서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들이 미국과 같이 연간 250시간 이상을 사외이사 업무에 투입하는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고, 반면에 그 정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외이사가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년중 몇 번 참석하는 행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 병 호 원장

■ **남상구** : 사외이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외이사라는 일종의 감시자를 세워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독립성은 무엇인가? 무엇 혹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김선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웅** : 결국은 주주에게서 위임을 받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대리인들을 잘 감시하느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성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내이사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조언 및

견제하는 감독이사회제도가 아닌 이사회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계열사의 전직 임원들이 여전히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대주주와 관계있는 자가 선임되고 있어 독립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이 5년 또는 10년 이상 계열사의 임원을 한 분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기준도 제정하는 등 많은 점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관만을 가지고 독립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느냐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 대주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독립성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남상구** : 사외이사와 관련해 주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수기에 불과하고 의안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외이사가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다투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외이사든 경영진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워야만 독립적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체계는 독일식 대륙법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외이사제도가 미국식으로 도입이 되어 사외이사의 역할이 무엇이나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김윤상 과장님께서 독립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이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상** : 답는 그릇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듯이 사외이사제도 또한 실제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운영에 대해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선하는 방안, 소수주주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선임시 집중투표문제,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해야 하는 기업범위의 확대, 집행임원을 대규모기업에 의무화하는 문제, 새도우보팅 패지 및 전자투표 의무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위원들은 사외이사와 관련된 추천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체 상장회사에 도입하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사외이사끼리 대물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방안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남상구** : 강병호 원장님은 사외이사를 경험해보셨으니 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호** :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형식상으로는 대주주나 경영진과 관계가 적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사가 과연 독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인지를 가지고 유죄, 무죄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사외이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김윤상** : 세계은행이 주도로 하는 사업 중에 ‘Doing Busines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 거래법을 일치시켜 국가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계약분쟁해결이나 채권자 보호분야는 세계 10위권 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분야는 60위권 밖입니다. 강병호 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로서 500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을 이사가 잘못 판단해서 800원에 매입하였을 때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경영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밀한 내용을 법률상으로 지적하는 것이 판례법 중심의 나라는 쉽지만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상법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조기에 강병호 원장님 기대에 충족하는 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강병호** : 통상적으로 사외이사는 기업에서 대우도 받고 주 업무외에 과외활동으로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기업의 중요한 위치이며 활동여부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면 함부로 사외이사 하겠다고 의사 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남상구** :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김선웅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 **김선웅** : 지난 2000년 (주)대우 사건 때 소액주주들이 대우가 채무보증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도 계열사의 보증 및 지원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많은 경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기업적 성격의 사외이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책임문제 때문에, 사임을 하거나 이사회 결정시에 기권하는 사외이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번복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책임문제를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 사법제도 풍토와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사외이사의 책임을 잘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법원의 사조가 바뀌면 사외이사제도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남상구** : SK텔레콤은 사외이사의 의견이 비교적 잘 반영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최근 여론에서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남영찬 고문님께서 독립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 **남영찬** : 독립성과 관련한 언론의 비판이 단편적이고 흥미유발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저해되었을 때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오는가를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대규모투자

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회사내부의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와 감시·감독이 중요합니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행규정으로 입법화하여 법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독립성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외견상 전문성이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컨대 회사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반대하거나 이익을 제기하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상구** : 김선웅 소장님께서 최근 사외이사와 관련해 일련의 법원의 사례가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는지요.

■ **김선웅** :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았던 판례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외이사 책임을 감정한 논리로 과실상계이론을 들어 이사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고 해서 책임을 감정한 예도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면 독립성이 강화될 텐데 최근의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와 사외이사의 책임감면조항도 있습니다. 정관에 정하면 일반이사의 경우는 연봉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연봉의 3배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외이사의 평균연봉이 3,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배라고 하면 1억원 미만의 책임문제가 될 뿐입니다. 기업에서 보통 대규모 투자결정이나 기업범죄에서 사건을 보면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현실에 역행하는 법 개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남상구** : 연봉이 몇 천만원이므로 1억원 정도 밖의 책임만 진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수백억원 단위의 책임과 달

리 개인입장의 책임액 1억원은 엄청난 부담이므로 상당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강홍** : 기업은 조직 내에서 서로 견제감시하고 한편으로는 지원 및 조언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조직구조 형편상 상하구조가 있는데 내부에서 제대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업외부에 있는 자를 선임해 수행토록 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의식하지 않고 적절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려면 조직 내에 있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사와 재정의 독립입니다. 인사로부터의 독립은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영진이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영진이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도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사외이사 보수를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정한다면 사외이사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가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독립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주주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대주주는 자연스럽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나 개인투자자가 집단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펀드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투자자로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 악용 등의 또 다른 부작용에 대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고, 관치를 배제할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스스로 내부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견하고 사전에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주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에 반대표시를 얹은 경우에 한정해 책임이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 **남상구** :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 즉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라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 **강병호** : 사외이사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면 사외이사 자신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당시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표시를 할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노력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사외이사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들은 통상 1년에 4번 정도 이사회에 참석해 거마비를 받는 정도의 시간을 투입합니다. 이에 비하여 사외이사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고 투자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회사에서 참석한 거마비 형식이 아니라 사외이사가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보수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남상구** : 보수체계는 회사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범죄가 발생할 때 범죄자를 보면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김선웅 소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선웅** : 아직까지 전문성 보다는 독립성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회사의 기밀문제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윤리로서 회사 기밀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풍토여서 아직까지는 외부인사에 대한 차단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의 대가입니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면 보수체계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성과보수와 관련해 스톡옵션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외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과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 신중을 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남상구** : 기업 입장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남영찬 고문님께 부탁드립니다.

■ **남영찬** : 이사회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회사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기밀유지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청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기밀유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도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사외이사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받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사회 당일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사회에서 매년 파열음이 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사전설명회나 적절한 타이밍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안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자 회사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법상의 사외이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제공요청권을 사외이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 **남상구** : 과거 사외이사 재임 시 관계자들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합동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부터 배웠는데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법규정에 전문성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김윤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상** : 사외이사 정보제공 문제는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준법지원인이 영업부서 등 각 부서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각 부서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준법지원인은 주주가 선임하고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사외이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무한제공하고 외부에서 영입된 사외이사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예정일시의 일정 기간 전에 사외이사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당해 기업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만 둘 것이 아니라 적극요건을 두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적극요건을 두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들이 모여져 적극요건은 두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듯합니다. 기존 이사들이 사내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사외이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자는 정도의 전문성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의 사전 스크린 기능을 위한 전문성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법 규정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선임권을 가진 주주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주주총회가 내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도우보팅 폐지나 전자투표 의무화에도 연결된 문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의 선임

■ **남상구** : 아무래도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이 독립성 및 전문성 모두 관련되어 있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적절한가 하는 여론의 지적이 대두되고 그와 관련해 일부 연금금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김선웅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웅** : 독립성,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수의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나 경영진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선임제도에서 아쉬운 점은 대부분 비독립적인 사람으로 구성되다보니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역할에는 이사회 감시감독 기능도 있어 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감사 선임 시과 같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제도와 관련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2/3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로 먼저 선임하고 나중에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더라도 선임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상구** : 기금의 힘을 빌려서 선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연강흠 교수님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연강흠** :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특정 주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소유구조나 경영권의 안정성 정도에 따

라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가 소액주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주주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남상구**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권장 문제와 국민연금의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 기금은 대체로 사적인 성격을 띠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호 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호** : 국가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국민연금은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고 의결권행사 지침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의결권을 분리하는(연금운영위원회와 의결권)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외이사 법규가 모든 행위 이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사 선임시 찬성표가 1표 이상이면 선임되는 복수투표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반대가 10표이고 찬성이 1표인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도를 만들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규율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도 개선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남상구** : 시장에서의 사회적 평가 및 규율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남영찬** :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Risk taking 등 대주주의 의결권행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을때 따르는 기업의 부담이 고려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강홍** :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사외이사라고 해서 해당 회사를 방문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대다수 회사에서는 이사회 소집을 통보받고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방문해 회의하고 돌아오는 정도 같습니다. 규정을 세밀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정보다는 기업과 사외이사의 인식 변화와 제도의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 **남상구** : 사외이사들도 현실적인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제도의 운영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기업이나 사외이사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지 김선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웅** : 말씀한 바와 같이 기업, 사외이사 및 주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외이사에게도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독립적,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외이사에게 중요한 책임을 묻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몫인데 현실은 기관투자자 자체도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의 운용자금 대부분이 법인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신경을 쓰는 상품을 만들어 운영해 시장의 감시역할을 하게 하면 법규정에 의한 개선효과보다 클 것으로 봅니다.

■ **남상구** : 과거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더니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견제가 없는 독립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강병호**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연금 측이 기관투자자에게 자금위탁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까지도 위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더니 기관투자자들이 전부 반대한다고 합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법인과도 거래관계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 **남상구** :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온 것도 상당부분 제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사외이사제도 만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외이사제도가 할 수 있는 기능 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당국에 바라는 점과 끝으로 마지막 정리 발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며 회사마다 규모나 지배구조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

■ **남영찬** : 김선웅 소장님께서 언급한 개정상법의 사외이사의 책임 완화와 관련해서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경과실의 경우에만 이사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로 제한하는 규정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투자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경영판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전업인 이사가 소액의 보수를 받고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그 이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의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지금도 무한책임이지만 법원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는 기업의 이사회 활동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반대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려던 안건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사회 개최 전의 기업 활동의 노력을 보지 않고 공식된 이사회 결과만 국한해서 판단한 오프라고 봅니다.

■ **김윤상** : 앞서 우리나라 성문법에서 너무 자세한 규정을 두어서 기업 활동의 장애내지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펀드책임자로 구성된 아시아법지배연구소에서 우리 법무부를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관련자와 논의하다 보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정부의 법안이 아니라 자율 규제기관의 기준 내지 모델 등에 의해서 규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혹자는 사외이사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가 있기 전에는 상법상 규정하고 있던 이사회 자체도 없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이

사회는 없고 이사회이사록만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이사회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국민과 사회가 원하는 사외이사를 기업이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법이기 때문에 주주가 원하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국민과 사회 입장에서 건전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는 나쁘고 소주주는 선이라는 선임견보다는 상법적 시각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대규모 기업의 사외이사가 중소 규모의 사외이사보다 비교적 잘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과반수와 감사위원회 도입 기준을 자산 2조원보다 낮추는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선웅** : 10여년 전의 기업 상황과 현재의 기업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가 꼭 사회적 책임 및 여론에 의해 제어장치가 이루어진 다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부의 유출, 대주주 경영 전횡 및 회사기회 유용문제 등이 핵심 사안이므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조금 더 제대로 작용하면 정치적 논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강홍** :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입니다. 제도 도입 이유는, 첫째 당시 국

민기업이라고 했던 소유와 경영분리가 잘된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소유와 경영분리가 잘된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측면이고, 둘째 일부 재벌그룹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는 측면입니다. 도입 당시 취지에 비추어 당분간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거래나 부정행위를 견제해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수준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을 지우는 정도로 개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강병호** : 김윤상 과장님께서 말씀한 사외이사가 상법상의 문제인데 너무 국민과 사회가 원하는 시각에서 본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도덕적 부분만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는 주주의 시각에서 회사를 위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많이 강조되어 사외이사가 사내주주와 사외주주 간의 소통뿐 아니

라 채권자나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법 개정시 주주의 시각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대변자라는 시각에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남상구** :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 규정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도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규모나 지배구조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틀은 갖추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 김윤상 과장님께서서는 기업 규제를 위한 제도보다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자 본 시 장 소 식

증 시 동 향

● 발 행 시 장 ●

2012년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총 12조 6,187억원으로 전월(10조 8,600억원) 대비 1조 7,587억원(16.2%)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리 기조 및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ABS발행 및 차환용도 회사채 발행(삼성중공업(0.7조원), 현대중공업(0.5조원))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12년 2월중 주식발행 규모는 1,257억원으로 전월(2,764억원) 대비 1,507억원(54.5%) 감소하였다.

기업공개는 3건, 806억원으로 전월(2건, 574억원) 대비 232억원(40.4%) 증가하였다.

유상증자는 5건, 451억원으로 전월(3건, 2,190억원) 대비 1,739억원(79.4%) 감소하였다.

2012년 2월중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 4,930억원으로 전월(10조 5,836억원) 대비 1조 9,094억원(18.0%) 증가하였다.

일반회사채는 6조 6,844억원으로 전월(5조 1,050억원) 대비 30.9% 증가하였는데 차환용도의 회사채 발행[삼성중공업(0.7조원), 현대중공업(0.5조원)] 및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투자수요(운영자금)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금융채는 9,970억원으로 전월(2조 2,945억원) 대비 56.5%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카드채 발행 감소(전월대비 6,990억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ABS는 2조 2,527억원으로 전월(3,400억원) 대비 562.6% 증가하였다.

은행채는 2조 5,589억원으로 전월(2조 8,441억원) 대비 10.0% 감소하였다.

※ 증시자금조달현황 - 139P 참조

<자금조달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1월	2012년 2월	전월대비(%)
조달총액	108,600	126,187	16.2
주식	2,764	1,257	△54.5
기업공개	574	806	40.4
유상증자	2,190	451	△79.4
회사채	105,836	124,930	18.0
일반	51,050	66,844	30.9
금융회사	22,945	9,970	△56.5
A B S	3,400	22,527	562.6
은행채	28,441	25,589	△10.0

● 유 통 시 장 ●

■ 유가증권시장

3월의 유가증권시장은 월초 KOSPI 지수가 2034.63P에서 출발하여, 전월대비 20.59P 하락한 2014.04P로 3월 증시를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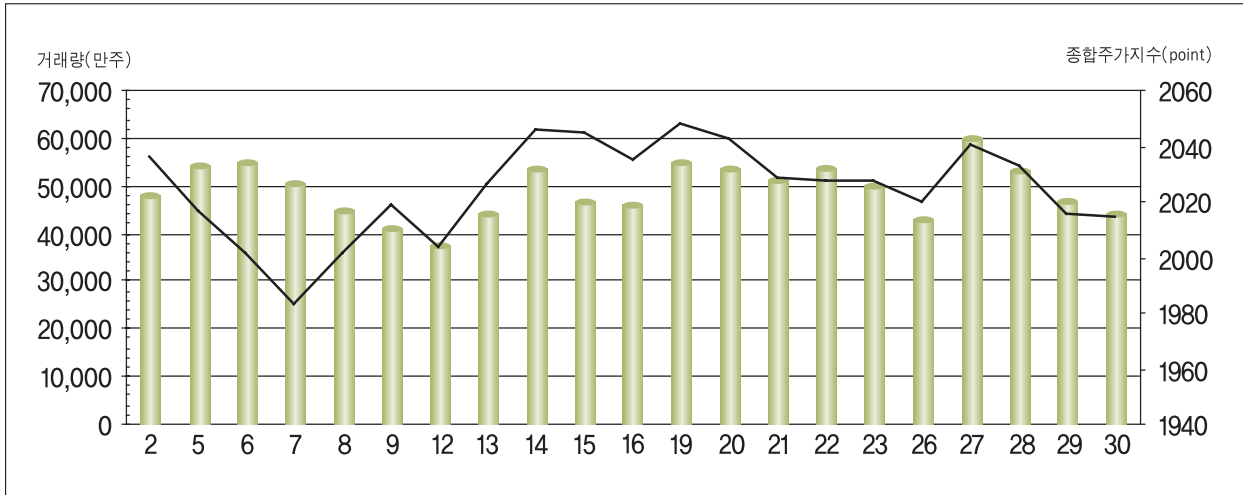
3월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와 삼성전자의 독주로 인해 대형주 및 우량주 중심의 매매로 인해 중소형주가 소외를 받는 가운데 대형주의 등락에 따라 지수가 변동하는 불안한 장세를 보였다.

■ 코스닥시장

3월의 코스닥시장은 월초 KOSDAQ 지수가 543.97P에서 출발하여, 전월대비 24.41P 상승한 519.56P로 3월 증시를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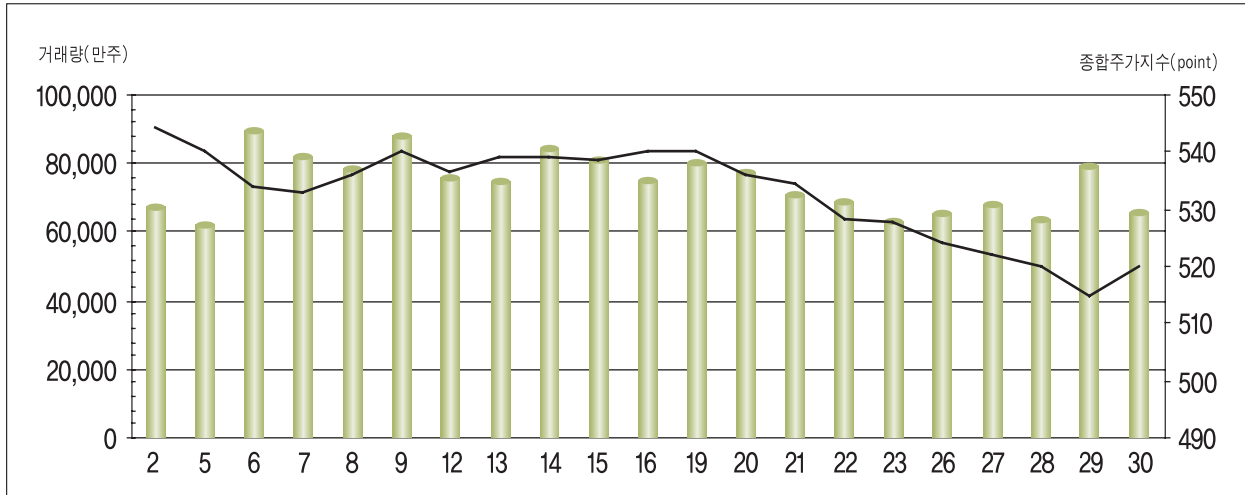
이처럼 3월의 코스닥시장은 전월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는 형국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로 8거래일 하락하는 장세를 연출하여 월초 540선을 반납하는 한 달 이었다.

◎ 유가증권시장(2012년 3월)



일자	종합지수	최고	최저	등락률 (%)	전일대비	거래량 (만주)	거래대금 (억)	시가총액 (조)	시황
2	2,034.63	2,046.82	2,033.50	0.22	4.38	48,318	58,427	1,166	강세로 장을 출발, 단숨에 2,040P선을 돌파, 오후 들어 기관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은 다소 축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
5	2,016.06	2,030.57	2,011.50	-0.91	-18.57	54,800	51,274	1,155	미국 뉴욕증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차익 매물에 밀려 소폭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세에 약세로 장을 출발, 장 초반 '매수'를 외치던 외국인도 팔자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확대
6	2,000.36	2,023.83	1,988.86	-0.78	-15.70	55,473	52,982	1,146	강세로 출발한 지수는 기관의 '팔자'로 돌아서면서 이내 반락, 주요 주체들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확대, 장중 1,980P대까지 떨어졌으나 장 후반 하락폭을 축소하여 2,000P선은 사수
7	1,982.15	1,987.97	1,966.69	-0.91	-18.21	51,128	49,764	1,136	수급의 핵심 주체인 외국인이 사흘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수급 공백이 증시에 영향, 장 초반 1,966.69P까지 밀렸지만 반발매수에 낙폭 축소, 사흘 연속 하락 마감
8	2,000.76	2,004.72	1,978.79	0.94	18.61	45,609	63,811	1,147	올해 첫 쿼터리 실적데이(지수 선물·옵션, 개별 주식 선물·옵션 만기일)에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나타내며 2,000P선 위로 올라섬
9	2,018.30	2,022.95	2,001.67	0.88	17.54	41,639	54,050	1,157	해외발 호재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 악재를 무난히 넘긴 지수는 4거래일만에 2,010P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
12	2,002.50	2,019.14	2,001.50	-0.78	-15.80	37,548	48,125	1,148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며 2,000P선에 턱걸이 마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나타내며 지수는 장 후반 낙폭을 확대
13	2,025.04	2,028.98	2,012.91	1.13	22.54	44,892	56,572	1,162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 오는 15일로 다가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자동차 및 부품주가 동반 급등, 금융주도 강세
14	2,045.08	2,057.28	2,045.08	0.99	20.04	54,111	64,273	1,173	미국발(發) 혼풍에 힘입어 2,040P선을 회복, 연중 최고치를 기록,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 이틀째 지수가 강세를 이어간 결과
15	2,043.76	2,050.48	2,038.60	-0.06	-1.32	47,610	60,063	1,173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며 거래일 기준 사흘 만에 하락,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매물이 출회, 코스피지수는 출렁이는 흐름을 나타낸 끝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
16	2,034.44	2,054.99	2,034.21	-0.46	-9.32	46,424	59,133	1,168	뉴욕 증시는 유로존 국제입찰 호조와 국제금리 하락,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마감했지만 코스피는 투신권의 매물 압박에 약보합권으로 이틀째 하락 마감
19	2,047.00	2,050.87	2,036.35	0.62	12.56	55,580	49,766	1,176	2,040P선을 넘으며 3일만의 반등으로 거래를 마감,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 건설업종 상승마감
20	2,042.15	2,055.34	2,035.26	-0.24	-4.85	54,033	54,042	1,173	반등 하루만에 하락세, 섬유·복, 전기전자, 운수창고, 서비스업종만 오름세, 은행업종이 1.53% 떨어졌고 음식료업종은 1.45%, 기계업종 1.46% 하락, 금융, 건설, 의료정밀, 의약품 업종도 약세
21	2,027.23	2,039.80	2,022.97	-0.73	-14.92	51,706	51,742	1,164	이틀째 하락해 2,020P선대로 후퇴,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도 나와 증시 하락을 부추김, 외국인 7거래일만에 매도로 돌아섬
22	2,026.12	2,031.42	2,017.93	-0.05	-1.11	54,172	53,014	1,164	전일 미국 증시가 주력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 내림세 출발, 개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장중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지수가 5개월 연속 위축했다는 소식에 대한 부담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약세로 장을 마감
23	2,026.83	2,029.77	2,013.72	0.04	0.71	50,677	48,290	1,165	지지부전한 흐름을 이어간 끝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 개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거래일 기준 나흘 만에 반등
26	2,019.19	2,041.05	2,012.86	-0.38	-7.64	43,697	45,911	1,160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기운을 잃음, 오전 10시를 전후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하락반전, 결국 약세로 장을 마감
27	2,039.76	2,043.75	2,028.39	1.02	20.57	60,641	51,473	1,173	버냉기 의장이 경기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드러 투자심리가 호전, 반등성공
28	2,031.74	2,038.45	2,028.11	-0.39	-8.02	53,380	51,178	1,168	장중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장 막판 순매도 폭을 크게 줄였지만 결국 지수를 상승세로 돌려놓지는 못함
29	2,014.41	2,025.23	2,004.94	-0.85	-17.33	47,032	50,075	1,158	하락세로 장을 출발, 장중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고 프로그램 매물도 덩치를 불러 지수는 2,000P대로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은 다소 축소
30	2,014.04	2,018.09	2,002.61	-0.02	-0.37	44,987	53,330	1,158	약세로 장을 출발, 장중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반등,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임

◎ 코스닥시장(2012년 3월)



일자	종합지수	최고	최저	등락률 (%)	전일대비	거래량 (만주)	거래대금 (억)	시가총액 (조)	시	황
2	543.97	545.47	543.05	0.31	1.67	67,796	20,557	116	장중 기관의 매도세에 부딪혀 상승폭을 다소 줄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 덕분에 사흘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감	
5	539.74	546.15	539.13	-0.78	-4.23	62,584	20,645	116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반전, 나흘 만에 하락해 540P선 붕괴	
6	533.62	541.40	529.42	-1.13	-6.12	90,927	25,478	114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림, 더욱이 최근 급등했던 정치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한 것도 지수하락을 부채질	
7	532.48	532.98	524.73	-0.21	-1.14	82,931	21,333	114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 재부각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장중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점차 낙폭을 줄이는 흐름	
8	535.76	537.07	535.08	0.62	3.28	78,956	23,536	115	전날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 지표 개선과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장 초반 개인의 자가 매수세가 유입, 나흘만에 반등	
9	539.55	539.71	536.81	0.71	3.79	88,885	23,580	116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상승 마감. 그리스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 전망도 긍정적이어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양상	
12	536.11	541.33	536.09	-0.64	-3.44	77,109	22,090	115	외국인이 나흘 만에 팔자로 돌아서 증시에 부담을 안겨 사흘만에 하락 마감, 운송, 출판매체복제, 섬유류,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폭 확대	
13	538.46	539.51	537.68	0.44	2.35	76,206	22,857	115	미국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닥지수는 강세로 출발, 장중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14	538.86	543.22	538.86	0.07	0.40	85,606	25,010	115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지수가 장 막판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 그러나 개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상승장을 지킴	
15	538.31	540.87	537.14	-0.10	-0.55	81,984	24,325	116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해 540P선 재등장에 실패, 업종별로는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출판매체복제가 2%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큰폭 상승	
16	539.78	540.42	537.51	0.27	1.47	76,081	23,556	116	개인의 5거래일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닥지수가 상승세를 회복, 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540P선 회복에는 실패	
19	539.83	542.49	539.53	0.01	0.05	81,018	21,241	116	외국인이 장 초반 순매도 전환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 개인이 순매수 규모를 늘려 수급 공백을 메워 강보합선은 사수	
20	535.55	541.64	535.30	-0.79	-4.28	78,735	22,800	115	이틀 연속 올랐던 코스닥지수가 초반 상승 출발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 제약, 비금속, 컴퓨터서비스, 화학, 제조, 인터넷, 통신장비업종 등이 모두 약세	
21	533.93	537.07	533.74	-0.30	-1.62	71,487	23,690	115	이들께 약세를 이어감,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	
22	527.90	535.46	527.90	-1.13	-6.03	70,162	22,667	113	사흘째 내리막길.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림. 업종별로는 운송(4.94%) 종이·목재(0.72%) 오락·문화(0.2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23	527.47	528.19	526.27	-0.08	-0.43	63,562	20,557	113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인해 장 막판 상승 반전했던 코스닥지수가 결국 하락 마감.	
26	523.39	530.60	523.39	-0.77	-4.08	66,365	21,267	112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는 반발 매수세 유입과 원유시장 공급 부족 우려 감소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물 출회 여파로 하락 전환	
27	521.74	527.97	521.54	-0.32	-1.65	69,207	21,905	112	거래일 기준 연세째 하락해 520P선 초반으로 후퇴. 미국발(發) 홍풍에 반동을 시도했으나 기관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함	
28	519.56	524.12	519.56	-0.42	-2.18	64,588	19,925	112	개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하며 반등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520P선마저 반납	
29	514.21	520.12	510.20	-1.03	-5.35	79,795	23,524	111	상승세로 출발해 약세 전환하는 전강후약의 흐름이 나흘째 이어짐, 8일 연속 하락세, 총선관련 테마주 급등	
30	519.56	519.96	514.73	1.04	5.35	66,525	22,150	112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마감, 정치테마주 요동	

주요 정책동향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는 3월 14일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전략수립을 위해 각 부처 장관급 18인과 민간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내에 장기전략국이 신설된 데 이어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추진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한 심의·의결기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18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경제, 사회, 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도 회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민간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내부에는 장기 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 기획재정부, 한미 FTA 발효, 세법개정안 조기 발표 방침

기획재정부는 3월 19일 매년 9월 발표되던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을 8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9월 초에 나왔던 세법개정안 발표시기가 빨라진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절차 과정에서 그동안 '20일 이상'으로 돼 있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연장은 기존에도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결정적 계기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FTA 협상 당시 우리와 법령체계가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미국은 자국 수준인 60일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30일을 주장하다 협상 과정에서 40일로 합의된 바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작년까지는 매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9월 초까지만 입법예고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늦어도 8월 20일 경까지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으며, 이밖에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개편도 추진하고 있고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종교인 과세방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수정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재정부, 'GDP 대비 보육재정비율' 등 새 통계지표 개발 방침

기획재정부는 3월 28일 '중기(2012~2016년)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총 125개 통계지표에 대해 개선 또는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업률 등 일부 통계지표들이 그동안 현실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감으로써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수입식품통계', '경제심리지표' 등이 새로 만들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6차 통계위원회에서 기존의 통계지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특성상 여러 논란이 있어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관련지표 중 예산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과 경기관련지표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표'가 내년까지 개발된다. '무역지수'를 산출할 때는 수출입단가지수가 아닌 수출입물가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아울러, 소득통계도 신설된다. 국세자료·주민등록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물가관련 지표로는 품목별·국가별로 나누어진 '수입식품통계'가 생긴다. 물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고려해 '주택가격지수(KAB지수)'는 2013년까지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 헤지펀드 운용진입장벽 완화 방침

금융위원회는 3월 5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헤지펀드의 경우 창의력과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및 전문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헤지펀드운용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1조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공기업의 투자은행(IB)업무에는 중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화·전문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단기적으로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

기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지원책도 모색된다.

우선 IT아웃소싱금지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증권사 매매거래전산시스템의 외부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스콤에 전산업무를 위탁 중인 17개 중소형 증권사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현행처럼 전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공기업 IB업무에 중소형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며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채무·담보권 신탁업무 가능

금융위원회는 3월 22일 신탁업무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이하 신탁업자)들이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탁 도입 등을 담은 신탁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내 신탁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부동산 관련 권리 등만 신탁이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신탁 가능재산에 채무(소극재산)와 담보권도 포함된다.

또한, 신탁업자의 자기신탁업무시 공정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신탁된 신탁재산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밖에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도 모든 신탁재산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시 엄중조치 방침

금융감독원은 3월 6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위반에 대해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도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전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요청했다.

■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증권(ELS·DLS) 신고서 기재내용 개선

금융감독원은 3월 7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증권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ELS·DLS 신고서 작성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해서 신고서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위험사항은 가격변동, 발행회사,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등의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투자필수 유의사항은 신고서 제일 앞부분에 기재토록 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코스피 200지수, 개별주식 등의 기초자산관련 정보는 최대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과거 6개월간 공시 주요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자동조기상환'을 '조기상환'으로 통일해 사용하게 하는 등 증권사들이 다르게 사용하는 중요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잔액이 33조 5,000억원에 달한다.

■ 금융감독원, 대기업계열사 독자신용등급 부여 방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올 2분기 이후 대기업 계열사는 신용등급평가 때 그룹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자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기업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사를 골라서 평가를 받는 '등급쇼핑'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서 시행할 방침으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신용등급의 적정성, 적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급쇼핑에 따른 '등급인플레이'와 신용등급 '뒷북조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대기업 계열회사에 대해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기업자체만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외부지원가능성 등을 종합한 최종등급을 분리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대기업 계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은 모회사 등 외부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신용평가사에 사전에 등급 향상을 요구하거나 높은 등급을 제시한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등의 등급쇼핑을 막기 위하여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두의뢰 및 예상등급 제시금지방안도 마련된다.

신용평가를 의뢰한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이해상충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평가 이외 컨설팅, 용역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이후 1년간 동일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상시접수 체제로 전환

동반성장위원회는 3월 26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접수를 일관접수에서 상시접수 체제로 바꾸고 제조업 분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에는 일정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며 “중소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입해 양측 갈등이 발생했거나 대기업 진입이 예정되어 있어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신청은 중소기업이 가입된 협회나 단체, 조합이 신청하거나, 단체가 없는 경우 같은 제품을 만드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 모든 업체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중소기업 과반수가 특정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다면 신청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접수된 품목의 서류를 검토해 실태조사와 조정 협의체 운영, 실무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혜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의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의 경우 먼저 신고한 사업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뒤늦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는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도 과징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개 이상의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유지된다. 단 2순위자의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이 2 ~ 4배 높아진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 위반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 ~ 2,000만원에서 1,500 ~ 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 ~ 300만원에서 400 ~ 1,200만원으로 4배 오른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시행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을 공시하도록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결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합산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범위도 확대된다. 종전 자본금의 10%나 100억원 중 큰 금액으로 돼있던 공시의무대상도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사 범위도 총수(지배주주)측 지분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8일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과 회사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시정조치 사례, 관련법령 등을 정리한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다수 기업이 신고경험이 적어 자체적인 신고의무 유무 판단이 곤란하고 신고서 작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방지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홍보를 위해 4월 기업결합업무 설명회에 이어 5월 기업결합미신고 현황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은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치 못한 해외제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신고요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청, R&D기획지원사업에 35억 지원 방침

중소기업청은 3월 19일 올해 연구개발(R&D)기획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원(17%) 증가한 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R&D기획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25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기획된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중기청의 R&D 사업과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133개 중 우수과제로 평가된 92개 과제를 R&D사업에 연계 지원한다.

또 민간 R&D기획전문기관을 추가해 실용과제의 비중확대,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및

지원품질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기관투자자 감시 '강화' 방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월 22일,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윈도우드레싱(Window-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증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로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운영성과 왜곡으로 인한 펀드매니저의 부당이익,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 회피 등의 부작용이 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구축한 '윈도우드레싱 감시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결산기에 증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해 금융감독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3월 30일 개장

한국거래소는 3월 27일 국내석유제품의 유통가격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안정을 위한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를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한 다수참가자 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를 통한 매매방식으로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가능하고,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며, 대리점은 매수매도 모두 가능하다.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시장에는 실물사업자인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가 참여하며 거래소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대상은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가 상장될 예정이며,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만ℓ 단위로 매매가 된다.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거래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법인 2011년 주요 영업실적 및 재무분석

이 자료는 본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법인 2011년 주요 영업실적 및 재무분석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세부자료는 본회 Web Site(www.klca.or.kr 내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註>

I 개별실적 분석

1. 분석대상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결산법인 : 668개사
- 분석대상법인 : 616개사
- 분석제외법인 : 52개사

구 분		회사수	회 사 명
제출대상법인수		668	
제외법인	결산기 변경	2010년 4	대웅, 대웅제약, 일동제약, 슈셀생명과학
		2011년 3	국제약품공업, 부광약품, 에스엘
	분할 및 합병	2010년 14	광전자, 동부씨엔아이, 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 퍼시스, 팀스,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한미약품, 한미홀딩스, 현대그린푸드, SUM, SUM홀딩스, NICE홀딩스
		2011년 15	대우자동차판매, 미원상사, 미원화학, 삼양사, 삼양홀딩스, 선진, 선진지주, 신세계, 이마트,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티이씨앤코, 하이트진로, 현대백화점, SK이노베이션
	감사의견	2010년 1	(한정의견) 대한해운
		2011년 1	(의견거절) 허메스홀딩스
	사업보고서 미제출	1	범양건설
	금융업*	13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우리금융지주, 우리파이낸셜, 신한금융지주,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소 계	52	
	분석대상법인수	616	

* 금융업은 영업수익 등 미기재로 분석에서 제외함.

2. 개별기준(616개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실적종합

□ 개별영업실적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해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자동차, 화학,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수출호조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원유가 상승으로 원가 압박을 받은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과 국제 IT수요 부진으로 경쟁이 심화된 전기전자업종의 마진 축소로 전체 이익은 감소하고 건설업 부진도 지속됨.

■ 2011년 개별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이익은 감소

제조·비제조업 1,000원 팔아 59원 영업이익(전년 동기 77원)

- 2011년 개별매출액은 1,1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0% 증가
- 개별영업이익은 6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0% 감소
- 개별순이익은 4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01% 감소

〈12월결산법인 2011년 개별영업실적(제조 및 비제조)〉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증감률
매출액	9,912,054	11,071,851	1,159,797	11.70
영업이익	763,692	652,180	△111,512	△14.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6,540	591,675	△124,865	△17.43
순이익	595,885	446,850	△149,035	△25.01
매출액영업이익률	7.70	5.89	△1.81	
매출액순이익률	6.01	4.04	△1.98	

* 개별재무제표 제출(125개사), 별도재무제표 제출(491개사)

※ 국제유가(WTI) 추이(연평균) :

('10년) \$79.62 → ('11년) \$95.13

□ 개별재무상태

- 2011년말 개별부채비율은 95.63%로 2010년말 91.95% 대비 3.68%p 증가

〈2011년말 12월결산법인 개별재무상태 (제조 및 비제조)〉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증감률
자산총계	11,795,933	12,644,917	848,984	7.20
부채총계	5,650,596	6,181,276	530,680	9.39
자본총계	6,145,337	6,463,641	318,304	5.18
부채비율	91.95	95.63	3.68	

□ 세부 업종별 실적(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 글로벌 수요위축과 반도체 가격 및 패널가격 하락으로 전기전자업종의 순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 이외에도 운수창고(해운), 전기가스, 철강금속 업종의 수익성 악화
-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확대로 화학업종, 자동차 수출 호조로 운송장비업종의 순이익은 증가
- ※ 서비스업종은 SK이노베이션의 종속기업투자 처분이익의 영향으로 증가(약 2.1조원)

〈2011년 업종별 순이익 증감 현황〉

- 흑자증가 : 서비스(13.00%), 화학(9.09%), 운송장비(3.61%), 유통(2.12%)
- 흑자감소 : 전기전자(46.74%), 음식료품(44.76%), 섬유 의복(44.25%), 기계(36.09%), 의약품(22.65%), 통신(18.51%), 철강금속(18.27%)
- 적자축소 : 비금속, 건설
- 적자전환 : 의료정밀, 종이목재, 운수창고
- 적자확대 : 전기가스

〈2011년 주요 업종별 영업실적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전년동기 대비〉

(단위 : 억원, 개사, %)

업종	회사 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금액	증감액	증감률	금액	증감액	증감률	금액	증감액	증감률
운송장비	44	1,713,005	205,295	13.62	151,500	1,130	0.75	127,002	4,430	3.61
음식료품	32	240,014	25,724	12.00	12,437	△3,486	△21.89	8,634	△6,996	△44.76
의료정밀	5	4,220	△480	△10.21	182	△297	△61.94	△188	△590	적자전환
의약품	29	71,131	1,120	1.60	6,134	△1,898	△23.63	4,434	△1,299	△22.65
섬유 의복	26	85,093	10,076	13.43	4,086	△1,783	△30.38	2,470	△1,960	△44.25
종이목재	24	79,287	4,980	6.70	2,384	△619	△20.62	△134	△1,845	적자전환
화학	85	1,438,049	268,172	22.92	117,770	8,589	7.87	88,074	7,338	9.09
전기전자	57	2,157,043	61,807	2.95	114,418	△77,783	△40.47	91,147	△79,980	△46.74
기계	39	241,709	22,641	10.34	15,851	△2,491	△13.58	7,423	△4,191	△36.09
철강금속	43	977,431	172,306	21.40	79,304	△3,765	△4.53	52,123	△11,655	△18.27
비금속	21	65,633	6,333	10.68	3,037	3,695	흑자전환	△419	2,808	적자축소
제조업	415	7,112,833	779,753	12.31	516,812	△78,700	△13.22	388,432	△95,669	△19.76
전기가스	12	856,874	115,063	15.51	△16,103	△16,638	적자전환	△30,296	△22,147	적자확대
통신	3	419,934	10,260	2.50	43,963	△6,148	△12.27	30,643	△6,961	△18.51
운수창고	20	531,960	13,670	2.64	4,758	△32,935	△87.38	△11,388	△33,441	적자전환
서비스	81	306,739	53,330	21.04	52,596	2,859	5.75	43,774	5,035	13.00
건설	34	579,308	△2,712	△0.47	8,501	15,187	흑자전환	△2,800	3,841	적자축소
유통	45	1,247,963	189,086	17.86	40,034	5,269	15.16	27,204	565	2.12
비제조업	201	3,959,018	380,044	10.62	135,368	△32,812	△19.51	58,417	△53,366	△47.74
전체	616	11,071,851	1,159,797	11.70	652,180	△111,512	△14.60	446,850	△149,035	△25.01

3. 흑자 · 적자회사 현황(개별기준)

- 적자기업이 141개사(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22.89%)로 대폭 늘어남.

〈 개별기준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 비교 〉

(단위 : 개사,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흑자회사	525	85.23	475	77.11	△50	△8.12
적자회사	91	14.77	141	22.89	50	8.12

(단위 : 개사, %)

구 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계
회 사 수 (비 중)	452 (73.38)	23 (3.73)	73 (11.85)	68 (11.04)	616 (100.00)

【 개별기준 2010년 대비 흑자전환 23개사 】

대우건설	아비스타	코리아씨키트	한국특수형강
SBS	동성제약	아티스	키스톤글로벌
한솔CSN	SH에너지화학	모나미	에넥스
태평양물산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YB로드	배명금속
영진약품공업	풀무원홀딩스	IHQ	성지건설
유니모씨앤씨	하이스틸	KCTC	

II 연결실적 분석

1. 분석대상

-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결산법인 : 538개사
- 분석대상법인 : 489개사
- 분석제외법인 : 49개사

구 분		회사수	회 사 명
제출대상법인수		538	
제 외 법 인	결산기 변경	2010년 4	대웅, 대웅제약, 일동제약, 슈셀생명과학
		2011년 2	국제약품공업, 에스엘
	분할 및 합병	2010년 13	광전자, 동부씨엔아이, 대성산업, 대성합동지주, 퍼시스, 팀스, 한국화장품, 한미약품, 한미홀딩스, 현대그린푸드, SJM, SJM홀딩스, NICE홀딩스
		2011년 12	대우자동차판매, 미원상사, 삼양사, 삼양홀딩스, 선진지주, 신세계, 이마트,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티이씨앤코, 하이트진로, 현대백화점
	감사의견	2010년 4	(의견거절) 동양건설산업, 보해양조, 삼부토건 (한정의견) 대한해운
		2011년 1	(의견거절) 허메스홀딩스
	사업보고서 미제출		1 범양건영
	금 융 업 *		12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소 계		49
	분석대상법인수		489

* 금융업은 영업수익 등 미기재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연결기준(489개사) 실적종합

□ 연결영업실적

- 2011년 연결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이익은 감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크게 감소)

제조 · 비제조업 1,000원 팔아 62원 영업이익 (전년 동기 76원)

- 2011년 연결매출액은 1,66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90% 증가
- 연결영업이익은 10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4% 감소
- 연결순이익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84% 감소

〈12월결산법인 2011년 연결영업실적(제조 및 비제조)〉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14,342,869	16,623,176	2,280,307	15.90
영업이익	1,082,219	1,028,809	△53,410	△4.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73,490	973,059	△100,432	△9.36
순 이 익	875,868	702,099	△173,769	△19.84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814,301	637,322	△176,979	△21.73
매출액영업이익률	7.55	6.19	△1.36	
매출액순이익률	6.11	4.22	△1.88	

□ 연결재무상태

○ 2011년말 연결부채비율은 132.42%로 '10년말 128.72% 대비 3.70%p 증가

〈12월결산법인 2011년말 연결재무상태 (제조 및 비제조)〉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증감률
자산총계	16,097,689	17,776,377	1,678,688	10.43
부채총계	9,059,374	10,127,852	1,068,478	11.79
자본총계	7,038,315	7,648,524	610,210	8.67
부채비율	128.72	132.42	3.70	

3. 흑자 · 적자회사 현황(연결기준)

○ 적자기업이 119개사(연결분석 대상기업의 24.34%)로 대폭 늘어남.

〈 연결기준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 비교 〉

(단위 : 개사,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흑자회사	410	83.84	370	75.66	△40	△8.18
적자회사	79	16.16	119	24.34	40	8.18

(단위 : 개사, %)

구 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계
회 사 수 (비 중)	348 (71.17)	22 (4.50)	62 (12.68)	57 (11.66)	489 (100.00)

【 연결기준 2010년 대비 흑자전환 22개사 】

경남기업	배명금속	태평양물산	효성TX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아비스타	한솔CSN
IB스프츠	YB로드	동방	아세아제지
한일건설	IHQ	동성제약	에넥스
화승알앤에이	S&T모터스	모나미	유니모씨앤씨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SH에너지화학		



통계

2012년 3월 납입 주권상장법인 유상증자 현황

납입일	회사명	발행주식수(주)	발행가액(원)	증자금액(백만원)	배정방식	자금용도
2012. 3. 23	한라건설	9,000,000	1,000	9,000	주주후일반	운영
계 1 건		9,000,000		9,000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며,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분은 제외함.

2011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2월결산 배당실시사 현황 분석

이 자료는 본회가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실시회사 현황을 조사·분석한 내용임. <편집자註>

조사 개요

-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3월 9일(금)까지 2011년도 배당결정 내용을 공시한 459개사 가운데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432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배당현황(중간배당 포함)을 전년도와 비교·분석
- 액면가 5,000원 이외 회사는 5,000원으로 환산하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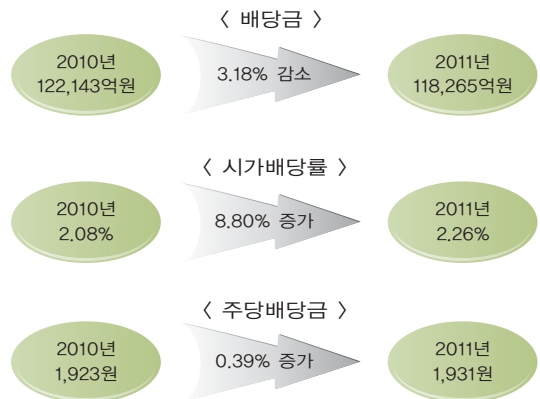
조사 내용

□ 2011년 유로존 위기의 영향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배당성향 소폭 증가 (17.38% → 17.54%)

- 배당규모 늘린 회사수(170개사)도 줄인 회사수(150개사)보다 많음(전년수준 유지사 112개사).
- 2년 연속 배당을 결정한 432개사의 배당금은 총 11조 8,265억원(1사평균 273억원)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
- 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배당금은 소폭 증가(10.7조원 → 11.0조원)하고, 배당성향은 그 증가폭이 더 커짐 [19.41%(‘10년) → 19.84%(‘11년)]

* 삼성전자는 적정 배당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규모를 대폭(전년대비 44.73% 감소) 축소 발표

< 12월결산 상장법인 2011년도 배당결정 현황(432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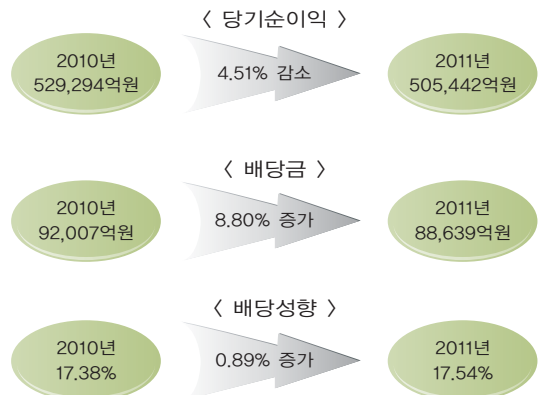


* 2년연속 배당을 결정한 432개사 대상

* 보통주, 소액주주, 유배당사 기준이며, 주당배당금은 액면가를 5천원으로 환산한 것임

*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1주일간의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보통주 주당 연간 배당금의 비율로서 회사가 제시한 수치임(유배당사 대상 단순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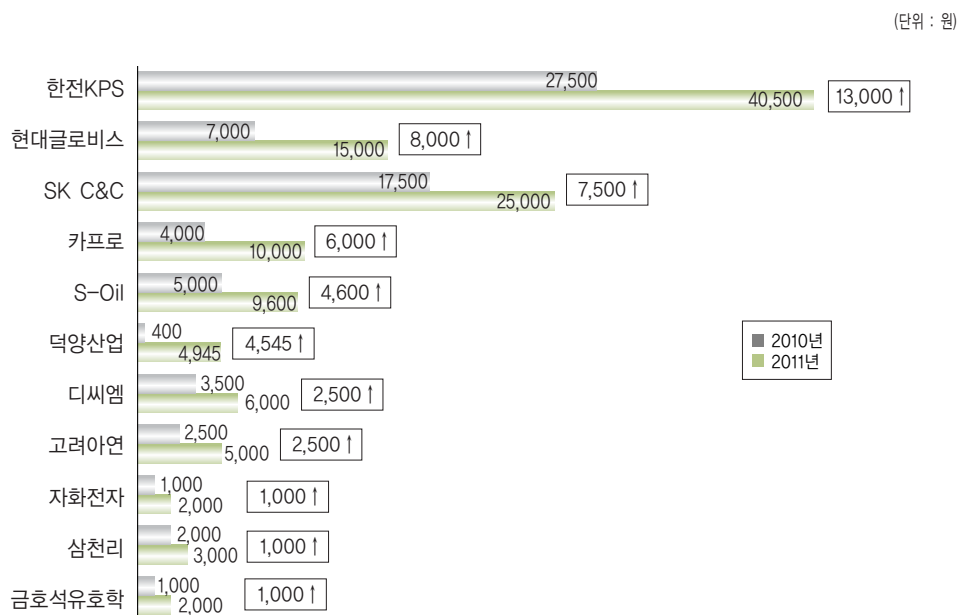
< 12월결산 상장법인 2011년도 배당성향 현황(294개사) >



* 2011년 잠정실적치를 공시한 294개사 대상(별도재무제표 기준)

□ 주당배당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한전KPS'

〈주당배당금이 1,000원 이상 증가한 회사 현황〉



* 보통주, 소액주주, 유배당사 기준이며, 주당배당금은 회사제시 수치를 액면가 5천원으로 환산한 것임

□ 본회가 Database를 구축한 1981년 이래(31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12월결산법인인 '샘표 식품' 등 총 48개사

〈1981년 이후 매해 배당 실시하는 기업〉

건설화학공업	대웅	삼아알미늄	아세아시멘트	한국유리공업
경농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영풍	한독약품
고려제강	대한제분	삼영전자공업	오리온	한일시멘트
남양유업	동아제약	삼천리	유한양행	현대자동차
남영비비안	동일고무벨트	삼화왕관	일신방직	BYC
녹십자홀딩스	동일방직	샘표식품	조광페인트	GS건설
농심	동화약품	성보화학	조선내화	JW중외제약
대림산업	롯데제과	세방	태광산업	KCC
대림통상	롯데칠성음료	신라교역	한국공항	
대성합동지주	삼성정밀화학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석유공업	



2011년 증권신고서 심사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3월 8일 발표한 자료이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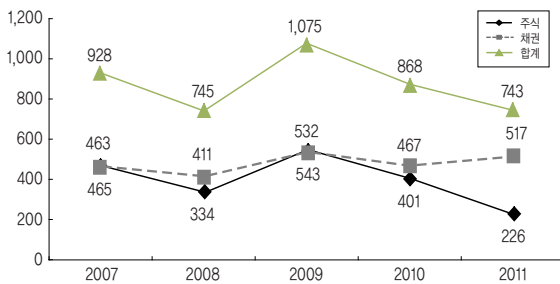
증권신고서 접수 동향

□ (접수 현황) 2011년 중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총 743건으로 전년도의 868건에 비해 소폭 감소(△14.4%)하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채권발행 신고서는 전년대비 소폭(11%) 증가(467건 → 517건)한 반면, 주식발행 신고서는 전년대비 대폭(△44%) 감소*(401건 → 226건)

* 2011년 중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됨

< 연도별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추이 >



정정요구 현황 분석

□ (정정요구 비율) 2011년 중 접수된 증권신고서 743건 중 73건에 대해 총 105회(재정정 포함)의 정정요구조치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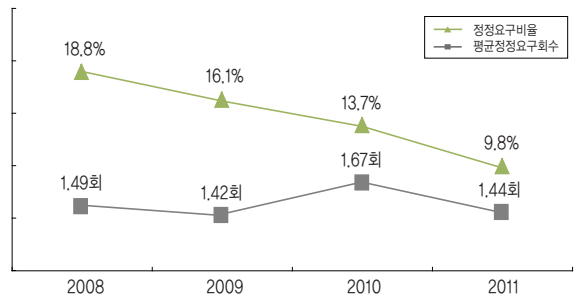
< 정정요구 제도 >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증권 발행 기업에게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정정요구비율*은 9.8%로 전년대비 3.9%p 감소하는 등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평균 정정요구회수도 전년대비 감소

* 총 접수건 대비 정정요구 조치를 받은 증권신고서의 비율

< 연도별 정정요구비율 및 평균정정요구회수 추이 >



□ (주요 특징) 2011년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신고서 유형별로는 유상증자(IPO 제외), 인수방식별로는 모집주선의 정정요구비율이 가장 높았음.

〈시장·신고서유형·인수방식별 정정요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장별			신고서 유형별			인수방식별			합 계
	유가	코스닥	기타	사채	유상 증자	기타	총액 인수	모집 주선	기타	
신고서 접수 건수(A)	345	112	286	488	114	141	551	61	131	743
정정요구 (B)	21	40	12	3	47	23	7	32	34	73
정정요구 비율(B/A)	6.1	35.7	4.2	0.6	41.2	16.8	1.3	52.5	26	9.8

□ (유상증자 신고서 분석) 2011년 접수된 유상증자 114건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47건으로 정정요구 비율은 41.2%로 집계

○ 특히, 코스닥 유상증자는 정정요구비율이 62%(50건 중 31건)에 달함.

※ 코스닥 유상증자(일반공모)는 회사의 직접공모나 증권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 또는 사실상 인수 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잔액인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음

주요 정정요구 주요 사유

□ 2011년의 개별 정정요구조치(총 105회)의 각 정정요구 사항(총 617건)을 세부 정정요구 사유별로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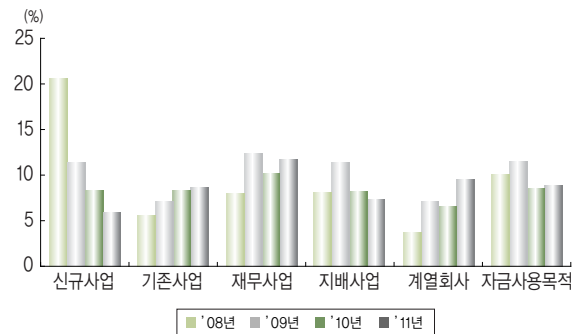
○ 재무사항(72건, 11.7%), 계열회사(59건, 9.6%), 기존사업(54건, 8.7%) 관련 투자위험요소 및 자금사용목적(55건, 8.9%) 등의 불충분 기재가 주요한 정정요구 대상이었음.

○ 한편, 2008년 이후 추이를 보면 신규사업 관련 정정요구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사업과 계열회사 관련 정정요구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

- 특히, 신규사업 중 자원개발 관련 정정요구는 0.6%(4건)에 불과하여 2008년의 약 10%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 자원개발의 투자성고가 극히 저조하고, 투자실패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원개발에 신규진출하는 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주요 정정요구 사유별 비중 추이〉



시사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정정요구 감소) 코스닥 시장침체와 거래소의 부실 상장 기업 다수 퇴출, 증권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등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한계기업 등의 공모 유상증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

○ 또한, 실질적 차등심사로 일반기업에 대한 정정요구가 감소되고, 고위험기업에 대한 심사역량 집중 및 정정요구 심사조정제* 도입으로 건당 평균 정정요구 조치회수가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침.

* 동일 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요구시 내부 심사조정(공시 심사개선팀), 3차 이상 정정요구시 합동심사(특별심사팀)를 실시하여 정정요구조치의 객관성·형평성을 크게 제고

한국사심사시스템을 통한 차등심사 본격 시행(2012년 2월 1일)과 기업실사 모범규준 도입(2012년 2월 1일)에 의한 증권사의 기업실사 강화 등으로 향후에도 정정요구비율과 정정요구회수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투자자 유의사항)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잠재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 해당 기업 투자시,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사항 대비표를 통해 정정요구항목 및 그 수정·보완된 부분을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토막의 여유



웹 브라우저 1993년 '모자이크'가 처음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끼리 미리 정해 놓은 규약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는 거대한 망을 말한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속에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오늘날 브라우저는 단순정보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이나 영상 편집처럼 사용자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별도로 저장해야만 실행 가능했던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바로 수행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대중에게 알려진 웹 브라우저는 '93년 미국에서 나온 '모자이크(Mosaic)' 이다. 이어 '94년 모자이크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라는 브라우저를 출시하면서 당시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며 순식간에 가장 많이 쓰는 웹 브라우저가 되었다. 그 이후 '95년 MS가 IE(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출시하면서 많은 판도가 바뀌었으며 우리나라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취하고 있다.

주요 웹브라우저

브라우저	제작사	출시일	특징
오페라	오페라 소프트웨어	1995년 4월	윈도, 맥OS,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 대부분의 OS에서 구동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1995년 9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씀
사파리	애플	2003년 1월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
파이어폭스	모질라 재단과 전 세계 개발자	2004년 11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개발 및 유지 보수 참여 가능
크롬	구글	2008년 9월	빠르고 단순한 화면, 보안성 우수

-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임

기업공시 유의사항 ④③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공시관련 업무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편집자註>

주관회사의 인수업무 공시 강화, 녹색경영공시 도입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을 마련하고,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 최근 기업공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중북 공시사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시행되고 있음.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들이 개정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 기준 중 정기관공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개정 기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주요 상담사례를 설명함.

I 녹색경영공시 도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과 녹색기술·산업 등의 인증 현황을 기재함.

○ 제재현황에 환경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기재함.
⇒ 관련조문 : 제11-3-1조(제재현황), 제11-3-11조(녹색경영)

• 질의내용

1. 이번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으로 모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시해야 하는지?

2. 사업보고서 등 정기관공시서류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할 때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3. 환경부 등 정부기관 외에 환경관련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녹색기술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지?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정부기관에 연간 1회 보고하여야 하는데, 정기관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 외에 분·반기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에 한하여 공시의무가 있음.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보고양식은 규칙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이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의 판단하여 작성 가능함.

3. 현행 기준은 인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외의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재를 허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4.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공시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을 분·반기보고서에 도 기재하여야 함.

II 사외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공시 강화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인력풀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함.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내부조직의 주요 현황 및 사외이사에 대한 내·외부 교육실적을 기재함.

⇒ 관련조문 : 제7-1-4조(이사의 독립성), 제7-1-5조(사외이사의 전문성)

• 질의내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업무만을 전담하는 내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만 그 현황을 기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내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그 현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조직이 사외이사 지원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III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재무정보 원화표시 공시 강화

□ 외화표시 재무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참고 목적으로 자산·부채는 해당 연도 기말환율을, 수익·비용은 해당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표시 재무정보를 함께 기재함.

⇒ 관련조문 : 제5-1-5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 제5-4-6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

IV 지주회사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공시 개선

□ K-IFRS 도입으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분법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법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수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에 따라 배당의 내용을 달리 한 경우 배당 관련 사항을 우선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함.

⇒ 관련조문 : 제3-6-1조(배당)

• 질의내용

1. 지주회사의 경우 반드시 지분법 이익을 적용한 당기순이익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2.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분법 이익을 적용한 당기순이익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지분법 이익을 적용한 당기순이익 등을 주식사항으로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지주회사가 선택할 수 있음.
2.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한해서 지분법 이익을 적용한 당기순이익 등을 주식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음.

V 단기매매차익 환수현황에 대한 공시 마련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중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제척기간 등을 기재함.
- ⇒ 관련조문 : 제11-3-1조(제재현황)

• 질의내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작성기준일 현재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VI 기타 변경 내용

- Ⅰ 주요자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인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 합계의 상위 75%에 해당하는 자회사
⇒ 관련조문 : 제1-1-2조(용어의 정의)

② 정정신고서 작성원칙의 적용대상 명확화

- 증권신고서를 제외한 기타 공시서류에 대한 정정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관련조문 : 제1-1-6조(정정신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③ 상환주식을 발행하거나 상환주식의 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자본금의 변동현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현행 회계기준이 상환주식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 관련조문 : 제3-3-1조(자본금의 변동현황)

④ 시장위험과 공정가치평가 등 재무정보와 중복 공시되고 있는 사항을 참조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 관련조문 : 제4-2-8조(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제5-5-1조(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⑤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정보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출·이익 항목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함.

⇒ 관련조문 : 제5-1-1조(요약재무정보)

⑥ 정가공시서류상 '주식의 분포'는 주식의 '보유'*가 아닌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경우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 보고대상으로 함.

⇒ 관련조문 : 제8-1-3조(주식의 분포)

• 질의내용

주주명부의 주주현황과 대량보유상황보고의 지분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한편, 분·반기보고서 작성시점에는 주주명부를 따로 폐쇄하지 않는데 그 경우에도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정기공시서류의 '주식의 분포'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인 반면 대량보유보고는 주식외의 특정증권도 보고대상으로 하고, 소유가 아닌 보유의 경우에도 보고대상이므로 '주식의 분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대량보유상황보고를 기준으로 '주식의 분포'를 기재할 경우 대량보유상황보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것임.

[7] '임원의 현황'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하고,

○ '직원의 현황'은 사업부문별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급여 총액에는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공시대상기간 중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을 기재함.

⇒ 관련조문 : 제9-1-1조(임원의 현황), 제9-1-2조(직원의 현황)

• 질의내용

1.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급여총액에 합산하여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이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직원의 현황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에 따라 작성하고, 퇴직금은 공시대상기간 중에 지급한 퇴직금을 기재할 경우 현재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합산하게 되는데?

• 답변내용

1. 퇴직금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중 현실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기재하면 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함.

2. 퇴직금은 작성표의 연간 급여총액과 별도로 기재하여도 무방함.

[8]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공시대상을 신용공여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 관련조문 : 제10-1-1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IFRS 적용실무 해설 ④8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註>

관계기업이 발행한 복합금융상품 보유시 회계처리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일부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등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 시 이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분과 관련한 경제적효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분법 회계처리 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근거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28호 문단 12).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관계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의 부채 또는 자본 분류를 판단하게 된다. 관계기업이 복합금융상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자본으로 판단 (즉, 확정된 금액으로 확정된 수량의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조건)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을 취득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시 주의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제 보유한 지분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지분 이외에 복합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이 중 잠재적 의결권 해당 요소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계기업이 복합금융상품의 일부 요

소를 자본으로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본인이 취득한 잠재적 의결권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자본의 증가액을 지분법 평가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 례>

A사는 2010년 12월 30일에 B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를 40에 취득(B사의 순자산공정가치는 80이라고 가정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하였다. B사는 A사의 지분 투자 직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A사는 이를 60에 인수하였다. 전환사채에 부과된 전환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확정된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다.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B사는 전환사채를 자본요소(전환권) 20과 부채요소(사채) 40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A사는 40을 B사에 대한 투자채권으로 인식하고, 20은 파생금융상품자산(공정가치라고 가정함)으로 인식하였다고 가정한다.

2010년 12월 31일에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법을 수행하였고(취득 후 1일간의 손익은 없다고 가정함), 이 때 B사가 전환권의 인식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의 50%(즉, $20 \times 50\% = 10$)를 지분법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잠재적 의결권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지분법으로 반영한 관계기업의 지분의 증가는 실제 보유한 지분에 근거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10은 제거하여야 한다. 상기의 거래를 A사 입장에서의 분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B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 취득			
(차) 관계기업투자	40	(대) 현금	40
(2) B사의 전환사채 취득			
(차) 투자사채	40	(대) 현금	60
파생금융상품자산	20		
(3) 지분법적용			
(차) 관계기업투자	10	(대) 관계기업자본 중 투자회사지분	10
(4) 지분법 적용효과의 취소			
(차) 관계기업자본 중 투자회사지분	10	(대) 파생금융상품자산	10

결과적으로 A사는 관계기업 B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B사의 자본의 증가효과를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지분법으로 반영하고, 동액을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자산에서 차감하게 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유승경 회계사

금융상품의 유동성 공시

기준서 제1107호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양적 정보 공시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중 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에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가 포함된다. 유동성위험은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의 충족이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며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할 수도 있으나 계약상 가장 이른 만기일에 기초한 공시는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때, 유동성위험은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으로 정의된다.

아래에서는 금융상품의 유동성공시 중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를 보여주는 만기분석에 해당하는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조기상환권

기준서 제110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에는 차입금,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부채에는 종종 해당 금융부채의 보유자가 발행자인 기업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기상환권은 기준서 제1039호의 내재파생상품 규정에 따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나, 기준서 제1107호 문단 B11A에서는 유동성공시 목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부채는 관련 조기상환권의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조기상환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기업이 해당 금융부채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만기일(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 최초일)에 조기상환권이 행사되는 것을 가정하여 관련 유동성구간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관련 조기상환권이 분리되어 별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면 재무제표상 별도로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생상품은 따로 유동성공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그 조건에 따라 파생상품 또는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형의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러한 신주인수권도 그 조건에 따라 파생상품 또는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다.

이러한 전환권/신주인수권이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

는 경우 기준서 제1107호 문단 B11A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유동성공시 목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지 않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유동성공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해당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으로 이를 결제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기업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동성위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유동성위험만을 공시한다.

한편, 신주인수권이 분리형에 해당하고 자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이를 결제한다면 이러한 파생상품은 기업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신주인수권은 유동성공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기준서 제1039호에서 채무상품의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므로 특정 채무상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채무상품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즉시 해당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보증계약 발행자는 유동성공시에 일반적으로 전체 약정금액을 가장 이른 유동성구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유동성위험이 가장 이른 유동성구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보증계약이 현재 존재하는 특정 채무상품에 관련된

것인지를 재검토하여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계약이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대출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유동성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

● 대출약정

대출약정의 대부분은 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이러한 대출약정에 대해 금융부채의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대출약정은 기준서 제110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유동성공시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며 흔히 체결하는 대출약정의 형태 중에는 유가증권 매입약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가증권 매입약정을 포함한 대출약정은 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유동성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해당 대출약정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자가 속한 유동성구간에 실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대출약정은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자가 즉시일 수도 있고 특정 향후 일자 또는 기간일 수도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매도옵션

매도옵션이 외가격 상태인 경우, 해당 매도옵션의 유동성공시 포함 여부는 해당 계약이 총액결제 조건인지 차액결제 조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매도옵션이 총액결제 조건이라면 외가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시에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총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편, 해당 매도옵션이 차액결제 조건이라면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유동성공시에 포함될 금액이 없다.

다만, 매도옵션 등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상 궁극적인 결제금액이 변동가능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의 조건에 근

거하여 유동성공시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실제 현금흐름은 유동성공시에 제시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홍윤기 회계사

K-IFRS 제1012호 “법인세” –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이연법인세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즉,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당해 투자자산 또는 지분의 세무기준액(대개 원가임)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의 발생,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을 때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나 제1039호에 따른 평가금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손상하는 경우 등에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된 종속기업 등의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계산되는 일시적차이가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달라지게 되므로, 인식되는 이연법인세 또한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다른 금액으로 인식된다.

제1012호는 종속기업투자의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

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서는 (1) 지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서는 (1)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2)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금액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지배·종속 관계에서 지배기업은 배당정책을 포함하여 종속기업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만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손익과 잉여금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 받지 않을 것이고, 종속기업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투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할 가능성 또는 종속기업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투자와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로 측정하여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없어 일시적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종속기업 취득 후 누적된 미배당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적차이가 있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이연법인세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이연법인세

20X5년 1월 1일 현재 A기업은 B기업의 지분 100%를 ₩ 6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에 A기업의 B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무기준액은 ₩ 600,000이다.

20X5년 12월 31일까지 B기업은 ₩ 150,000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 80,000의 배당이 적절히 승인되어, 20X5년 12월 31일 현재 B기업의 부채로 인식되었다. 20X5년 12월 31일 현재 B기업의 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0X5년 1월 1일 순자산(공정가치조정을 포함)	450
20X5년 1월 1일 영업권	150
유보이익(₩ 150,000의 순이익에서 ₩ 80,000의 배당차감)	70
20X5년 12월 31일 순자산	670

〈 A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A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B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종속기업투자자산에서 조정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종속기업투자과 관련된 일시적차이가 없으므로,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는다.

B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00
세무기준액	600
일시적차이	Nil

〈 A기업의 연결재무제표 〉

20X5년 12월 31일 현재, B기업에 대한 A기업의 종속기업투자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B주식의 취득금액	600
B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지분(150 × 100%)	150
종속기업의 배당으로 인한 지배기업 지분감소	(70)
장부금액	670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서와 달리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과 관련한 일시적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장부금액	670
세무기준액	600
일시적차이 = 취득일 이후 누적된 미배당이익	70

만약, A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B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면, 종속기업투자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A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 금액 ₩ 70,000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만약, A기업이 B기업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나 또는 B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유보된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A기업은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세율은 A기업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배당을 통하여 소멸시킬 것인지 투자자산을 처분 또는 청산시킬 것인지 그 예상 방법을 반영하여야 결정된다.

판례 및 예규

I.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두19892 판결)

【판결요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

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직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의 성질(= 제척기간)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 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II. 국세청 예규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는지 여부

(조특, 법인세과-120, 2012.02.22.)

【질 의】

–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이 2011.7월 중 제조사업 부를 분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제조사업부 종사직원 전원을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 함.

- 법인 분할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감소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중대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설비 및 기관의 범위

(조특, 조세특례제한법-58, 2012.01.26)

【회 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

(법인, 법인세과-58, 2012.01.16.)

【질 의】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호텔형 오피스텔을 신축 하였는 바,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 준공일 : '06.6.12, 준공인가일 : '06.6.30,
- 乙법인과와의 건축물 임대차 계약기간 : '06.6.30 ~ '07.6.30, 사용승인일 : '06.7.

【회 신】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질 의】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
- 1998. 01. 08 : A법인 주식 2,000주 취득(@3,000원), 1999. 10. 01 : A법인 주식 3,000주 취득(@5,000원), 2005. 05. 01 : A법인 주식 1,000주 증여(수증자 : 甲의 자녀), 2012년에 A법인 주식 잔여분 4,000주 중 2,000주 유상감자 예정
-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2,000주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회 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유상감자 및 증여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199.10.01.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5,000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01.17.)

【질 의】

-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A법인의 주식(기타자산)을 乙에게 양도할 예정임(乙은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A법인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주주 1인(甲) 및 그와 특수관계자(乙) 간의 거래시 기타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자 등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증, 재산세과-23, 2012.01.18.)

【질 의】

-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2011. 10. 7(금요일) 증여 (이하 '증여주식')하였음. 동 증여주식은 2011. 10. 10.(월요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를 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증여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적용한다면 동조 제1호에 의하는지 아니면 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호규정에 따라 2011. 10. 7. 이후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즉,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 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김 교 창
본회 상담역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Tel. 2183-5601

유가증권 공시규정상 '판결을 확인할 때'의 의미

Q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한국거래소규정임) 제7조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중략) 판결사실을 확인한 때' 그 내용을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항 제3호 다목). 여기에서 '확인한 때'란 회사가 승소여부만을 확인한 때인지,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의 요지까지 확인한 때인지 알려 주십시오.

A 가. 판결선고일에 법정에 출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판결결과(승소, 패소, 일부승소)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을 공시하는 것으로는 공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제도는 중요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에게 추상적인 정보로는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회사로서는 판결결과만을 보고 바로 그 결과만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서를 본 후에 그 결과와 요점을 함께 공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사실을 확인한 때란 회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때라고 풀이합니다.

다. 혹시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접수한 후 즉시 회사로 보내주지 아니하여 회사가 판결문을 접수하는 시기가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회사는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리스」 공개초안의 논의경과 및 전망

Q

2010년 8월 IASB와 FASB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초안 ‘리스’에 대한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A

2010년 8월 IASB와 FASB는 공동으로 공개초안 ‘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개초안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현행 기준을 대신하여, 리스 이용자의 리스자산사용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리스료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한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공개초안의 상세내용과 그 후의 잠정 결론은 「상장」 2010년 10월호 및 2011년 4월호 참조).

그러나,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리스기간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자산사용권리와 리스료지급의무 각각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리스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유지하되, 리스기간의 초기에 비용이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리스자산의 상각방법을 모색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열린 IASB와 FASB 연석회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1. 기초자산접근법(Underlying Asset Approach)

리스기간 동안 예상되는 리스자산의 사용추세(예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변화)에 따라 상각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리스기간 초기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작은 경우 리스기간의 후반부에 더 많은 상각비가 인식되어 연도별 총 리스관련 비용이 평준화 됩니다. 13명의 IASB 위원이 이 접근법을 선호하였습니다.

2. 이자율기준상각접근법(Interest-based Amortization Approach)

이 접근법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분류하는 현행 기준과 유사하게 리스를 분류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기간의 후반부에 보다 많은 상각비를 인식하여 연도별 총 리스관련비용을 평준화하고,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리스기간 초기에 보다 많은 비용을 인식합니다. 6명의 FASB 위원이 이 접근법을 선호하였습니다.

IASB는 위 두 가지 접근법의 실무적용가능성과 정보유용성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외부의 의견을 타진한 후,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리스’ 기준서의 제정작업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성 남

본회 상담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Tel. 3787-6520



정창모

본회 상담역

삼덕회계법인 전무이사

공인회계사

Tel. 512-3870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Q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합병법인)으로 다른 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기 위하여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다음과 같은 외국법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자회사 현황〉

베트남 자회사 : 2005년 10월 1일 취득, 80% 소유, 비상장, 중소기업(종원원 수, 매출액, 자본 규모 등이 국내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함)

태국 자회사 : 2007년 9월 1일 취득, 40% 소유, 비상장, 최대주주

인도네시아 자회사 : 2008년 4월 1일 취득, 10% 소유, 비상장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시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평가대상회사가 비상장법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유권해석(서면4팀-1862, 2005. 10. 12.)하고 있으며,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를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후 그 결과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합니다(재산상속 46014-1829, 1999. 10. 1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및 출자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20% 또는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10% 또는 15%)를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4팀-2460, 2007. 8. 17.).

따라서, 태국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1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평가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내용은 본회 상담역의 개인의견이며, 소속법인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이달의 자료실

이달의 자료실에 게재된 자료는 전월에 등록된 자료로서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자료실', '회원Plaza', '보도자료'의 각 목차별 첨부파일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파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2087-7000).

제 목	담당파트	목차별 자료
주요 경제지표 현황	경제조사	통계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회사 배당결의 내용	"	"
상장협 e-Tax Letter (2012-2호)	회계제도	기타자료
K-IFRS에 의한 테마별 실무해설 Vol.2 -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	"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	최신 회계세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공개초안	"	"
12월결산 상장법인 2011년 배당금 현황	경제조사	보도자료

금욕주의와 규제의 함정



이영재 기자
연합뉴스

〈장자(莊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의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떨쳐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들로부터 도망치고자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그림자는 그를 따라잡았고 발자국 소리는 더 커졌다. 더욱 힘을 내어 달리던 그는 숨이 차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금욕주의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준다.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체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금욕주의라 한다. 장자는 금욕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봤다.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욕망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현대 정신분석학이 발견한 무의식 개념도 금욕주의의 어리석음을 조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억압된 욕망은 소멸하기보다는 의식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간다. 욕망이 일단 무의식에 자리잡으면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머릿속이 담배 생각으로 가득차게 돼 역설적으로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도 종종 금욕주의의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는 잘못된 관행을 무리한 규제로 억누르려 할 때 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성매매 금지법이 올바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다 교묘하고 퇴폐적인 성매매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한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성매매 확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로 대응한 것도 금욕주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ELW 시장은 출범 초기만 해도 개미들에게 높

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창출 기회를 주는 시장으로 각광받았으나 최근에는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빈사 상태에 빠졌다. ELW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작년 초 2조원을 넘나들었으나 올해 3월 중순에는 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불과 1년 만에 2.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시장이 고사 직전 상태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ELW 시장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국은 ELW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작년 8월 ELW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예탁금을 부과해 진입장벽을 높였다. 고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다. LP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개미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ELW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타가 됐다. 일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거래 구조 자체에 손을 댄 결과였다.

당국의 ELW 시장 규제는 개미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투기성 거래를 잠재우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장 자체를 고사 위기에 빠뜨릴 정도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규제 본연의 역할은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지 시장을 존폐 위기로 내모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투기 욕망을 억누르려는 금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투기를 억누르기보다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살림으로써 투기가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품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감동기업 KUMHO TIRES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지속가능 경영기업으로 기반을 굳건히 다져온 금호타이어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10대 타이어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내실을 기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생생한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註〉



세계 속의 금호, 금호 속에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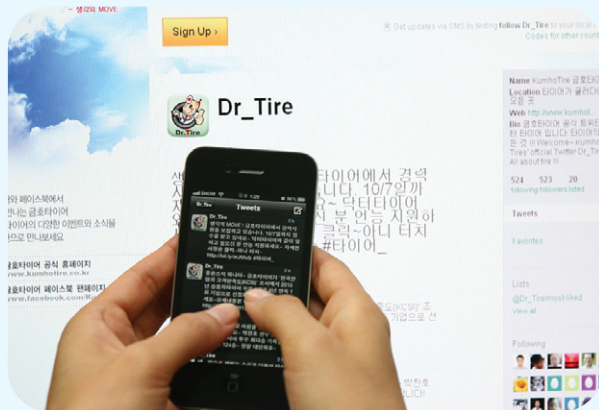
1960년 첫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한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국내 본사를 기반으로 해외 9개 판매법인과 17개 지사/사무소를 운영하며, 180여 개국에 연간 18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광주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중국의 R&D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쌓아온 기술 역량을 토대로 국내외 8개 공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은 3조 8,924억 원(2011년 글로벌 매출 기준)을 달성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함께 영업망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 2의 도약을 하고 있다.

검증된 기술력

-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력과 품질을 한꺼번에 사로잡은 금호타이어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UHP 타이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화 상품으로 지정된 금호타이어는 2008년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실시한 타이어 테스트결과 종합 순위 3위, 2009년 독일 '아테아체(ADAC) 모터벨트' 테스트에서 강력추천등급(Very Recommendable)을 획득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 최대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인 타이어랙(TIRE RACK)에서 자사 SUV용 '로드벤처 SAT' (KL61)가 '전천후 타이어 부문' 1위에 올랐으며, 호주 유력 자동차 매거진인 휠이 실시한 타이어 테스트에서 종합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3개 제품, 1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KCSI(고객만족도 우수기업) 승용차 타이어 부문 7년 연속 1위, KNPS(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동일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국내외에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기술

- 환경까지 생각하는 타이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중에서도 금호타이어는 일찍부터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90



년대 중반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을 국내 업계 최초로 인증 받으며 친환경 행보를 본격화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제품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11개 제품에 환경마크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7월에는 업계 최초로 탄소성적인증표지를 획득하였다. 2002년 세계 타이어 업계 최초로 인증 기준이 매우 엄격한 북유럽 환경라벨(Nordic Ecolabel)을 획득한 것도 오랜 준비의 결실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년간 약 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업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타이어를 개발해 왔다. 친환경 저연비 타이어 개발을 위해 16개국의 다국적 재료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과거대비 연비, 제동성능을 개선한 다양한 친환경 타이어용 재료를 개발·적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 출시된 'ecowing All Season' (에코잉 올시즌)은 연비절감과 환경보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제품으로 금호타이어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친환경 성능 최적화 시스템(ETOPS)'과 특수 컴파운드를 적용하여 연비는 물론 성능까지도 실현시킨 획기적인 저연비 친환경 제품이다.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회전저항 기준)을 받은 에코잉-S(ecowing-S)는 국내 중형차(YF소나타)로 연간 20,000km 주행시 1년에 약 23만원을

절감(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 기준)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 기준(3년)으로는 144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마케팅

- 금호타이어를 보여주는 무대

금호타이어의 스포츠마케팅은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생생한 감동과 박진감을 그대로 전해 주는 무대이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지역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모터스포츠 후원 현황(2011년 기준)

지 역	국 가	대 회 명
한 국	한국	CJ TVing SUPER RACE
중 국	West China	China Rally Championship(CRC)
	East China	Asia Formula Renault(AFR)
유 럽	영국	Irish Tarmac Rally Championship
	프랑스	French Rally Championship
	네덜란드	Masters of F3
	독일	Veranstaltergemeinschaft Langstreckenpokal N_rburgring (VLN)
	이태리	Irish Tarmac Rally Championship
호 주	호주	Australia Rally Championship(ARC)
		Australia F3
남아메리카	브라질	Latam Touring Car Series
글로벌	4대륙 7개국	Auto Grand Prix World Series(2012년 참여)

유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함부르크 SV와 라 피드 빈 스폰서십으로 각각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 소비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는 인기 대중 스포츠인 북미미식축구리그(NFL)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NBA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NFL(뉴욕제츠) NBA(LA레이커스 / 마이애미 히트) NHL(밴쿠버 캐넉스) 공식 후원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와 타이어 메이커가 기술력을 겨루는 각축장이자 마케팅 무대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도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전세계 F3 타이어 시장에서 No.1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금호타이어는 F3의 월드컵인 마스터즈 F3, 이태리 F3, 호주 F3 등에 공식타이어 업체로서 참가하며, 독일 VLN 시리즈, 중국랠리챔피언십(CRC) 등 국제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 활발하게 참가해 세계적인 레이싱 타이어 브랜드로서 활약하고 있다. 각종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뿐만이 아니라 서울모터쇼와 프랑크푸르트모터쇼 등 국내외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금호타이어는 F1 공식 타이어의 차기 주자로서 행보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다가서기 어려워 더욱 아름다운 섬 응진군 백령도

4월은 본격적으로 봄을 누리는 시기이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의 기분 좋은 스침을 만끽하며 어디로든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럴 땐 짝조름한 바다향기 가득한 섬으로 여행을 계획해보자. 쉽게 찾아갈 수 없어 그립고, 사람이 많지 않아 깨끗한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로의 여행이다. 4월 봄날을 화려하게 수놓는 꽃들의 향연보다 아름다운 섬으로의 여행.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글 · 사진 | 한은희(여행작가)



❑ 효녀 심청의 이야기가 담긴 곳, 심청각

대한민국 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섬 면적 50.96km²인 우리나라 8번째 섬이다. 따오기가 많아 따오기 곡자를 탄 곡도(鵲島)라 불리었던 이 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석을 팔려간 효녀 심청이다. 곳곳에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흔적도 남아있다고.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올린 절이라는 연화정사, 심청이 타고 올라온 연꽃이 바위가 되었다는 연봉바위, 장산곶 앞 바다에서 바다의 두 물줄기가 부딪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데 그 모양이 마치 바다에 연꽃을 새겨놓은 것처럼 보이는 인당수 등등이다. 실제 백령도 앞바다는 예부터 중국 상인들이 오가던 바닷길이라 한다.

웅진군은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1999년 10월, 백령면 진촌리에 심청각을 지었다. **심청각 돌아보기는 문화해설사로부터 심청이야기와 백령도 역사를 들을 수 있는 2층부터 시작**하면 된다. 사방으로 난 창너머로 장산곶과 인당수, 연봉바위 등이 보인다. 아래층은 심청전시관이다.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진 심청전 장면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판소리와 소설로 만들어진 심청전도 전시되어 있다. 여러 국악인들이 부른 심청전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으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녀의 이야기가 절절히 담긴 심청전 한 대목을 감상해 보자.

❑ 백령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두무진

백령도는 인천항을 출발해 약 200km를 가야하는 곳이지만 북한의 장산곶으로부터는 불과 17km 떨어진 섬이다. 그래서인지 섬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유난히 많은 군인들과 부대를 만나게 된다. 해안선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곳이든 해가 지면 출입할 수 없고, 낮 동안도 침투를 막기 위해 쳐 놓은 철망과 함께 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나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해안의 아름다움은 숨김없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거대한 암석절벽이 바다와 맞닿아있는 두무진은 풍화작용이 만 들어낸 자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심청각

일찍부터 그 이름을 남겼다. 조선 광해군 때인 1612년, 이곳을 돌아본 이대기의 '백령지'에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기록되어 있는 곳. 규암으로 이루어진 두무진의 절벽은 흰색과 회색, 붉은 색 등을 띄며 층층이 쌓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부서지는 땅의 성질 때문에 절벽은 다양한 모습의 바위들로 변신했다. 선대바위, 꼬끼리바위, 물범바위, 병풍바위 등 기기묘묘한 바위 모습에 따라 붙은 이름도 다양하다.

두무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바라보는 것과 절벽 길을 따라 내려가 해변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두무진을 감상하려면 두무진유람선을 이용하면 된다. 포구에서 오후 3~4시에 출발해 40여 분간 바다를 달리는 유람선을 타면 명승은 물론, 백령의 명물인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도 볼 수 있다. 꼬끼리바위를 지나면서부터 나타나는 물범은 맨눈으로는 보기 어려우니 작은 망원경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두무진 포구에서 유람선을 내리려 오른쪽으로 가면 횡집단지를 지나 해안을 따라 선대암 쪽으로 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이다. 높이 30~40m의 바위기둥들이 만들어 내는 절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백령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백령의 독특한 해변을 누리다

진촌리에 위치한 사곶해안은 고운 모래가 촘촘히 쌓여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해변을 가진 곳이다. 약 2km나 이어진 이 해안을 한국전쟁 당시엔 미군비행장으로 사용했다고, 지금도 자동차들이 모래해안을 달린다. 최근 방파제를 막아 간척사업을 하면서 조류가 바뀌어 사곶해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한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





백령도 두무진 횃집촌



백령도 공돌해안



공돌해안의 돌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다. 모래사장 끝부분이 갯벌로 변해가는 것 때문에 자동차로 모래위를 달릴 때 끝부분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칫 개흙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더불어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다는 천연비행장**으로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동 오군포구에는 작고 둥근 돌로 이루어진 공돌해안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된 이곳의 돌들은 규암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졌다. 공돌은 백색, 갈색, 적갈색 등 다양한 색을 가졌다. 바닷물과 맞닿은 곳의 돌은 더욱 맑고 투명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해안을 걸으면서 듣는 자그락거리는 돌 소리도 듣기 좋다. 이곳에서는 조금 춥더라도 과감히 신발을 벗고 걸어보자. 공돌이 발바닥을 적당히 자극해 온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밖에도 **백령도에는 중화동교회의 기독교사관과 무궁화, 천안함 46용사위령탑** 등 돌아볼 곳이 많다.



| 찾아가는 길 |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1599-5985, <http://dom.icferry.or.kr>)에서 백령도행 배가 뜬다. 먼 바다로 운항하는 배는 결항이 잦기 때문에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비수기에도 배편은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다. 백령여행사(032-889-6667, www.prtravel.co.kr)의 1박2일 또는 2박3일 백령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 싱싱한 백령의 맛을 누리다

백령도는 드넓은 바다를 가진 섬이지만 어업보다 농업이 발달했다. 때문에 바다에서 얻는 해산물뿐 아니라 땅에서 얻는 다양한 곡식과 야채, 고기 등도 풍부하다. 하지만 백령도 음식의 기본재료는 바다가 제공한다. 바로 까나리액젓이다. '백령사람들은 밥 빼고 모든 것에 까나리액젓을 넣어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관광객도 그들처럼 까나리액젓을 기본으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메밀을 굵게 뽑아 흡수한 육수에 말아 내는 **냉면(사곳냉면 032-836-0559)**이다. 냉면에 까나리액젓 몇 방울을 넣어야만 맛이 완성된다고. 처음, 까나리액젓을 넣어 먹으라는 말을 들은 외지사람들은 '그냥' 냉면을 먹는다. 하지만 모험심을 발휘한 일행의 냉면 맛을 보고 나면 '왜 내게 강권하지 않았느냐'고 원망을 한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과감히 까나리액젓에 대한 모험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백령바다는 물살이 세다. 덕분에 물고기들의 맛이 좋다고 한다. 게다가 백령도에는 양식장이 없다. 당연히 백령도의 모든 **횃집(해당화횃집032-836-1448)**에서는 모두 자연산 횃감을 취급한다. 두껍게 썰어 내어주는 회 맛도 일품이다. 참쌀과 메밀을 섞어 만든 피에 김치와 굴을 소로 넣은 왕만두 모양의 찐지떡도 백령도 별미이다. 찐지떡은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미리 주문해야 맛볼 수 있다. ☑



일흔일곱 살의 길



성 춘 복 수필가

여든이 바라보이는 희수(喜壽)까지 살았으나 아직도 제 길이 어떤 것인지 몰라 나로선 허둥대고 있다. 덜 성숙시킨 삶인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나잇값만큼 변덕을 부리며 살아 온 탓에 그저 낮이 쉰다. 그런 크기와 숫자만큼의 헛발질에 남우세스럽기가 그지없다.

돌이켜 생각하면 욕심에 향수만 젖어 속 빈 강정이거나 허황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그 수만큼 세상걱정을 짊어졌고 아픔 또한 많이 걱정도 술한 것 같다. 누가 보아도 의아심 깊어 자주 길을 바꾼 내력에 종잡을 수 없는 취향으로 걱정을 안긴 것도 사실이다.

취향이나 취미로 볼 때 나의 이 변덕은 마치 '할 일'을 가지고 '놀이'고 할 그 삶의 깊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다. 그러나 모형 만들기나 변화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돌아보면 본질을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듯싶다.

예컨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모형 만들기가 그 지름길이다. 이 길은 창조적인 통찰이고 그것은 놀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패턴의식을 통해 '일을 놀이'의 창조적 통찰로 출발시키고, 패턴 형성의 단순한 요소들로 결합시킴으로써 복잡의 생성을 이룩하여 유추와 은유의 기반을 조성한다면 창조에도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생각은 곧 느끼는 일이고, 느낌은 또 우리로 하여금 달리 생각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이 변형적 놀이는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시켜주고 지평을 넓히는 계기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른다.

내게도 그런 고집이 있었다. 거의 여든 해를 살아내면서 참으로 많은 취향의 이름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 했다.

가장 최근의 예 하나를 들어보자. 물론 출발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바로 서너 주일 전으로 별 일도 아닌 것에 아내와 다투었다. 저녁까지 잘 먹고 후식을 챙기다가 마찰이 생겨 나대로 고집스럽게 주장을 내세웠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옳다는 주장이니 소리가 높았을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러다가 내가 엉뚱한 일에 빠진 사이 아내가 사라졌다.

두어 시간이 지난 뒤 대문 따는 소리에 내다보니 어둠 속의 아내는 나들이 복장이었다. '언제 나 갔던가?' 하고 속으로 의아했으나 좀 전의 기분에 알은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플라스틱 어항에 성냥 알보다 작은 물고기가 네댓 마리 수초를 누비며 물장구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한 마디 던지기 십상이다. "산 짐승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잘못하면 그 목숨 죽이는 꼴 되지." 그런데 어제의 전투 때문에 나는 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이틀인가 사흘 뒤에 식솔이 하나 줄었고 며칠 지나 또 식솔이 줄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암수 두 마리. 그로부터 몸집이 작은 무지갯빛 꼬리의 수놈구피가 몸집이 큰 암컷을 연
신 쫓아다니는데 전혀 눈썰미가 없는 내가 보아도 안타까울 정도의 구애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구려 얼마를 지난 어느 날 아침 어항의 물을 갈아주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에 보니, 어항 속의 부유물이
배설물인 줄 알고 버리다가 깨알 같은 생명체가 납질거리는 게 수상쩍어 손을 뚫었다는 것이다.

분명 구피의 새끼에 틀림없었다. 자세히 새끼가 네 마리나 떠 있는 게 아닌가.

그날로부터 아내와 나는 바꾸어가며 어항 속을 살피기 시작했다. 예측하던 내 주장이 다시 걱정스러움으로 바뀌어
갔다. 혹 큰놈이 제 새끼를 다치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새끼들은 날로 몸피를 늘여가는 듯 또렷해지더니
어미를 피하는 일도 익숙해졌다. 새끼들의 먹이도 염려스러웠으나 벌써 여러 날을 지탱해 왔으니 큰 탈은 없으려니 했다.

이로부터 변화 하나가 분명 있었다. 이젠 몸집이 큰 암구피가 수컷을 조아대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한마디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저놈도 나를 흉내낸 것일까. 큰일 저질러놓고는 요즘의 내 처신처럼 암컷에게 꼼짝을 못하는 꼬락서니가 꼭 나를 닮는 것 같아.”

남자란 늙으면 별수 없이 나약하게 되어 꼬리를 내린다는 친구들의 농담처럼, 그런 신세란 뜻이다.

지금 이 얘기는 근자의 나로부터 일어난 일들 중 하나이다. 또 내 삶의 한 단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는 내 길이 새들의 둥지 만들기였다. 그 일은 구상하고 그 틀을 다듬기에 거진 한 해를 소비했다. 물론 그 바탕이 될
만한 과목은 몇 년 전 산책을 나섰다가 그럴듯한 죽은 나무뿌리를 들고 오면서 비롯된다.

쇠술로 흙이며 실가지를 털어낸 뿌리를 거꾸로 세워 안정판에 붙여 새의 둥지를 삼기로 했다. 굵은 손톱 크기의 나는(새) 것들을 앉혔다.
먹이를 찾아두리번거리는 새의 군락이 보기에도 멋들어져 보인다. 받침엔 실물대의 참새 두어 마리가 지킴이로 나앉았다.

이런 일들이 두어 번씩 거듭되고 그 집중적인 시기가 거꾸 이어지다 보니 내 취미와 생활에 여력이 생기는지라 나이로 따져 여든 해에
가깝다면 그 변덕도 그 많은 수치가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내 소꿉질이 우스꽝스럽긴 해도 한계와 제한을 타고 넘는 사실로 보아 그 나름
의 값을 지닌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번의 삶에 단 한 번의 살기가 아닌, 그 곱이나 또는 여러 차례였으면 좋겠다. 더더구나 많은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가면 분명 덧보탬이
있어야 할 터, 거기에 이왕이면 그 질도 좀 다양하고 체험 역시 여럿 겹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다.

어떤 여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양의 차원을 벗어나 그 질에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느낀다.

이주 어린 날 바닷가에 살아 이따금 조가비를 주워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중학교 시절엔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부
러워 미술 전공을 고집하다 ‘무엇 때문에 화쟁이가 되어야 하느냐고 아버지의 치도곤을 맞아 엉뚱한 길을 찾기도
했다. 고교 시절엔 진공관이 아닌 광석 라디오에 몰두했고 그러다가 다시 문학으로 돌아 책 읽기가 전부란 생
각도 했었다.

지지난해는 나무토막을 쪼개고 덧붙여 장난감 집을 3백여 채나 지어 이웃돕기도 했고, 아내를 통해 이룩
한 부채그림 만들기와 ‘나는 것들의 모자이크’를 위한 몇 해의 새 수집도 내 삶의 한 단면이다.

분명 ‘놀이’는 그 일거리의 가치에 앞서 사색과 관찰이 중요했고 다른 수집과 만듦이 뒤를 잇게 되
어 나는 정신없는 몰두의 급행열차가 된다.

이런 몰두나 행위는 창의적인 삶 가운데 으뜸가는 일이다. 이성과 본능이 동원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용도 한다.

내 집 안팎에는 지금도 빨간 동백도 때늦은 백매화도 피어있다. 좀 복잡하긴 해도 나
는 늘 즐겁고 마냥 기쁘다. 여든 해에 가까운 내 변덕이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른
다. 그런 일들 모두가 내 길이라면 이 노릇은 죽는 날에나 맺을 것이다. 📧

혹시 나도 치매? 미리미리 예방책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 환자 대기석. 나란히 앉은 중년 부부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오는 TV 화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그날의 주제는 ‘치매를 극복하는 법’. 정신과 의사의 말을 한참 들던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난 치매가 제일 무서워. 자식들한테 못할 짓이지. 저 병만 안 걸리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무슨 재미로 살겠어? 무슨 영광을 본다고.” 기사를 포함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TV를 봤던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대화에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병, 치매. 그래서 더 무서운 병.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스럽다면 치매 걱정 훌훌 털어버릴 예방대책에 미리미리 관심을 갖자.

Part 1

치매, 남들보다 빠른 뇌의 노화

모든 사람은 늙는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환경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 늙는 것은 마찬가지다. 몸도 늙지만 신경계의 중추인 뇌도 서서히 늙어간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뇌는 좀 성질이 급하다.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뇌의 노화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이 감퇴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신경정신계질환이 바로 치매이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뇌 장애성 치매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가 늙고 죽어서 생기는 병이다. 특히, 대뇌의 콜린성 신경의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일단 걸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을 때 세 포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이 주원인이다. 뇌 장애성 치매란 교통사고, 뇌염, 가스 중독, 뇌종양 등 직접적인 뇌 손상으로 세포가 손상돼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술을 자주 많이 마셔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이 생길 수 있다.

치매에 걸리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치매가 건망증과 비교되는 이유가 이 인지기능의 문제 때문이다. 먼저 기억력이 떨어진다. 보통은 먼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으로 기억력이 나빠



진다. 이와 더불어 대화가 어려워진다. 특정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틀린 단어를 말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을 입고 벗는 것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차원적 생각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질병이다.

Part 2

‘뒷방 늙은이’ 되지 않게 해주는 치매 예방 12계명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일이다. 치매와 멀어지는 생활습관 12가지를 알아본다.

1. 적게 먹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과식과 고열량 식사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혈관성 치매를 유발한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육류보다는 생선을 먹는 것을 권장한다. 짜고 매운 식사는 피한다.

2. 적절한 운동을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이민수 교수는 “간혹 60대 노인 중에 자신의 몸매가 40대 같다고 해서 40대의 운동량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조언한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걷기나 수영 등이 좋고, 수영이 힘들면 물속에서 걸어도 된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 좋다.

3.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한다.

이런 병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는 몇 년 후에, 늦게는 20~30년 후에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4. 술을 끊거나 줄인다.

술은 알코올성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을 유발하여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까지 높인다. 도저히 끊지 못하겠다면 최소한으로 줄인다.

5. 담배는 끊는다.

담배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다.

6. 전문가의 처방이 없는 약은 먹지 말아야 한다.

처방받은 약을 먹되, 가능하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는 것보다 먼저 먹은 약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좋다. 이교수는 “약은 부피가 작아서 조금 먹으면 몸에 무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은 크기가 작아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7. 검증되지 않는 비과학적 자연요법은 중단해야 한다.

8.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꼭 토래 친구가 아니어도 된다. 배우자, 가족이나 이웃 등 마음이 맞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면 이들도 친구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9. 몸과 머리에 자극을 주는 여가생활을 해라.

치매 예방에 화투가 권장되는 이유도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거나 운동같이 자극이 되는 취미생활을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10. 뇌에 충격을 주지 말자.

뇌의 직접적인 손상도 치매의 원인이 된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대표적인 예다. 평소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스트레스를 다스리자.

스트레스는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와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12. 치매에 좋은 음식을 가능하면 자주 챙겨 먹는다.

견과류와 콩 같이 항산화·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의 괴사를 막고, 신경전달물질의 재료로 쓰여 신경세포를 강화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콩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신선한 채소, 과일을 자주 먹는 것도 좋다.

Part 3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이교수는 “치매는 예방과 함께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치매로 판단되면 빨리 치매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인지기능이 유지되는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함께 오기 쉽다. 환자 스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고, 가족의 반응이 걱정되며, 잦은 실수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가 발견되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치매 초기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현명한 행동이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 환자가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왜 깜빡했느냐?”고 따지지 말고 수첩에 메모해서 자주 기억하게 해야 한다. 또 치매 환자와 대화를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핵심만 말하는 것이 좋다.

중증이 아니라면 치매 환자라도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 맛있게 먹었던 음식, 좋아했던 장소에 데리고 가서 자주 과거를 떠올리게 하자. 자주 생각할 수 있게 매일 신문을 읽고, TV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치매 환자의 건강은 가족이 챙겨야 한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배려한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정상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므로 항상 다른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은 치운다. 어두우면 불을 끄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잠을 잘 때도 완전히 불을 끄지 말고 약한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식기, 물건 등도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

이교수는 “치매를 발견하는 것도 사랑이고, 치매를 극복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봐야 치매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야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이민수 교수
출처 | 건강다이제스트

쥐를 잡자니 그릇 깨까 걱정
投鼠忌器



이천
생이년
호규



“현 정세는 통곡할 일이 하나요, 눈물을 흘릴 일이 둘이며, 길이 탄식할 일이 여섯이요, 기타 사리에 어긋나고 도(道)를 손상하는 일은 일일이 들 수 없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양(梁 : 한 초기 황족에게 봉해진 지방 정권의 하나)의 태부(太傅) 가의(賈誼)의 상소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제후의 세력이 비대해지면 중앙의 통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해지는데 그 세력을 삭탈하지 않으면 통곡할 일이다. 오랑캐가 약탈을 하고 불손한 짓을 하는데 한에서는 금과 비단을 바치고 받들고 있으니 눈물을 흘릴 일이다. 흉악한 적은 제재하지 않고 뱀돼지나 사냥하며, 잔단 즐거움에 빠져서 큰 걱정을 떨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덕과 위엄을 멀리 펼 수 있음에도 수 백리 밖에 명령과 위엄이 퍼지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일이다.

백 사람이 일을 하고도 한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 못한다면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받을 갈아서 열 사람이 먹는다면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려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절실한데 비리를 없애려 한들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길이 탄식할 일이다.

천하란 큰 그릇이다. 그릇을 편안한 곳에 두면 안전하고 위험한 곳에 두면 위태롭다. 사람의 정이란 그릇과 같아서 안전과 위험은 임금이 농기에 따라 달라진다. 속담에 ‘쥐를 잡자니 그릇 꺾까 걱정[投鼠忌器]’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좋은 비유이다. 쥐가 그릇에 접근했으나 곧 내려치지 못하는 것은 그릇을 꺾까 보아 망설이기 때문이다. 임금 가까이 있는 귀한 신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엄치와 예절로 군자를 대하므로 죽음을 내림(자살)은 있을지언정 욕을 보이는 일(형벌)은 없다. 그러므로 자자(刺字)나 의형(劓刑 : 코 베는 형벌)을 태부(大夫)에게 가하지 않는 것은 임금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혹 잘못을 저질러도 신체형,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높이기 위함이다.

위에서 예의엄치로 신하를 대우하는 데에도 신하가 절개 있는 행동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이는 사람이 아니다. 교화가 이루어지고 풍속이 안정되면 신하된 자는 오로지 군주를 생각하고 자신을 잊으며, 나라를 생각하고 집안을 잊으며, 공을 생각하고 사사로움을 잊으며, 이익에 구차하게 나아가지 않으며, 손해를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의를 따를 것이다.

가의는 전한의 낙양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생(賈生)이라 일컬었는데 18세에 《시경》, 《서경》을 외우고 글을

잘 짓는다 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오공(吳公)이 하남(河南)의 수령으로 있을 때 불러서 곁에 두고 몹시 아꼈다. 오공이 검찰총장직인 정위(廷尉)로 옮기면서 그를 추천하여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나이 20여 세였고 박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었다.

위에서 정사에 관해 논의하라는 명이 내려면 간혹 노숙한 박사들도 선뜻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생은 주저 없이 말하곤 하였다. 이에 여러 박사가 그의 유능함을 인정하였고, 문제(文帝)는 인재라고 기뻐하며 자주 승진시켜서 1년 만에 언론을 관장하는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임명하였다.

이때 한은 성립된 지 20여년이었고 천하는 안정되었다. 정령을 정비하고 복제(服制)를 개정하고 관명을 고치고 예악을 진흥시키려고 모든 의법(儀法)을 기초하였는데 가생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문제는 크게 임용해서 장차 재상의 지위에 앉히려 하였는데 풍경(馮敬) 등의 무리가 어린 나이에 권세를 쥐고 제 마음대로 휘두르려 한다고 참소하였다. 문제도 의심을 품고 거리를 두다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임명하였다.

가생은 부임했으나 심사가 유쾌하지 않았다. 마침 상수(湘水)를 건너게 되어 전국시대 초(楚)의 굴원(屈原)을 조상하는 부를 지었다. 굴원은 초 회왕(楚懷王)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를 당하여 한때 방랑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회사부(懷沙賦)》를 지어서 읊고는 먹라수에 몸을 던져 죽었다. 가생은 자신의 심정이 굴원과 비슷하다고 한탄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부는 서정미가 넘쳐흐른다고 일컫는다.

가생이 장사에 있은지 3년, 비습한 풍토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 부름을 받고 잠시 경도에 머무르다가 양 회왕(梁懷王)의 태부로 임명되었다. 양 회왕은 문제의 아들인데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가생은 그의 스승으로서 달갑지 않은 일을 겪고서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역시 세상을 떠났다. 이때 그의 나이는 서른셋이었다.

‘쥐를 잡자니 그릇 꺾까 걱정’이란 말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부로 나서다가 더 큰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주도면밀하게 대비하고서 일에 착수해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장래에 관계된 큰일은 말해 무엇 하랴!

[漢書 卷48]

홍혁기 고전연구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송 원 준
보령제약(주)

얼마 전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해 줄 케익을 사기 위해 대기업의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점에 간적이 있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매장 인테리어와 예쁜 모양의 케익은 만족감을 주었다. 다소 비싼 가격이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문득 어린시절 부모님과 함께 가던 동네 빵집이 생각났다. ‘케익’을 사면 빵을 덤으로 넉넉하게 같이 담아주곤 했는데 언제, 어디로 옮긴 것인지, 아예 문을 닫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씁쓸한 여운이 케익 무게와 함께 전해졌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의 제과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논쟁, 비판적인 여론과 언론 보도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그 지나간 시간의 길이에 상응할 만한 그 어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니, 오히려 이 문제의 해결이나 그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대기업의 SSM,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다양한 형태와 브랜드로 이미 골목상권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제와서 규제를 통해 사업을 철수시키고 골목상권을 영세상인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미 투자를 한 기업, 그 곳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에게 또 다른 손해 혹은 피해를 안겨줄 것임은 분명하다. 동네에 새로 개점한 SSM이 매장을 철수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우리 동네를 떠난 ‘기쁨슈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없어진 SSM의 자리에 영세상인의 탈을 쓴 수십억 자산가의 점포가 들어설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얹질러진 물’이라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뒤늦은, 무조건적인 규제 정책은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변칙을 통해 우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미 어려워진 영세상인들의 수입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골목상권에 진출한 기업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있을 것인가? 어려운 취업환경,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조기 퇴직자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어느덧 600만명이다. 또한, 그들 중 상당수가 영세상인들임은 말할 것도 없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의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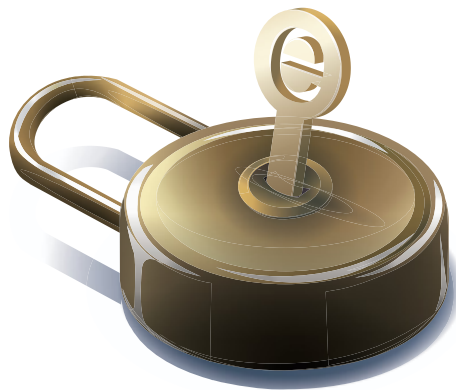
는 그들이 곧 우리 이웃, 혹은 우리 가족, 남이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그렇다면 바로 이들 600만 자영업자의 몰락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정부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의 대기업 진출을 막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의 매장을 철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영세상인의 점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세상인은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보다 앞서 지역의 소비자가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점포를 애용하고 지켜주고자 한다면, 기업의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소비활동은 어떠한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집 앞 골목의 가까운 작은 구멍가게를 두고 몇걸음 더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산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음료수의 더 맛이 훌륭하다거나, 가격이 저렴했던 적은 없었다. 별로 합리적인 판단과 소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혹은 SSM과의 제수(祭需) 용품 물가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재래시장이 저렴하다는 내용이다. 굳이 명절때가 아니라도, 평소 재래시장의 물가가 대형마트나 SSM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다. 물론 서비스, 청결과 같은 이유로 영세점포 대신 기업의 마트나 SSM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맞는, 대기업에 맞춰진 소비성향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가 설자리를 잃고 점포를 단계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정부보다 우리의 소비자의 외면일 수도 있다. 그 외면의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영세상인 살리기 정책 등과 관련된 뉴스를 보며 기업과 정부를 비판했다면, 당신은 암묵적으로 영세상인, 동네 자영업자의 '편'에 섰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외에 그들을 위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할 계획인가. 북한의 핵문제, 정치 부패 문제 같은 것들과는 다르다. 바로 우리가 그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열쇠는 바로 지금부터 문을 여는 데 쓸 수 있다. 이 열쇠를 우리 동네의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 쓰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기업의 SSM, 제과점 등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에 기업과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라면 이미 열쇠를 어느 쪽에 사용할지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 뿐' 요즘,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제과점, 커피전문점에서 합리적인 소비, 알뜰한 소비를 했던 것일까? 합리적이었다고 해도, 우리 이웃이고 가족일지도 모를 수많은 영세상인들을 진정 위협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우리의 그 '선택' 일지도 모른다. 넓고 쾌적한 SSM에 비해 우리동네 '기쁨슈퍼'의 매장이 좁고 어두웠던 것은, 서비스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동네 빵집 아주머니가 꾸벅꾸벅 졸고 있던 것은 불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



‘열린 주주총회’를 다녀와서



매년 5월이면 美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에서는 수만명의 주주들이 함께 모여 2박 3일 동안 Rock 페스티벌을 즐기고 경영자와 주주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주총회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이 만든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자리다.

이런 장면과는 달리 우리 기업의 주주총회 모습은 어떠한가? 작년 본회가 발간한 ‘2011주주총회백서(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주주총회 평균소요시간은 31.6분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절차가 끝나는 우



리기업의 주주총회는 2박 3일간 개최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와 비교해 보면 소요시간이나 진행면에서 많은 부족감을 느낀다. 주주의 관심내용도 경영진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대한 질문(56.4%) 및 배당정책(44.2%)과 주가관리(41.0%)에 대한 질문이 많음에 따라 소통보다는 주주와 경영진과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배당수익과 주가차익을 바랄 것이고, 경영진 또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많은 배당과 투자수익을 안겨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주주총회장의 분위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참예하게 대립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대립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던 주주총회에 최근 조그마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열린 주주총회’로 주주총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풀무원홀딩스의 주주총회장이다. 주주총회 장소 또한 특이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남산 자락에 위치한 ‘문학의 집’ 넓은 앞마당은 참석된 주주들에게 풀무원의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주주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여느 주주총회와 같이 감사보고와 의안상정 및 의결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부에서는 분위기가 바뀐다.

3년째 행사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남승우 총괄사장과 한운우 전략경영부문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된다. 섹션별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2011사업연도의 재무현황,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신규 출시제품에 대한 설명,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 회사 전반에 대해서 사회자가 주주가 된 듯 경영진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다. 마치 TV 토크쇼를 보는 것 같다. 참석한 주주들이 궁금해 하는 54페이지 분량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혹시 주주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신규제품과 경영현황에 대한 퀴즈도 준비한다. 정답을 맞춘 주주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준다. 이 모든 것이 주주의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한 세심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주주총회는 1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날 참석한 한 주주는 “주주총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지만 시간가는 줄 몰랐다. 회사의 경영현황 전반에 대해 이처럼 토론형식으로 쉽게 설명해 주어 주주로서 회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플무원홀딩스 CFO인 김도석 부사장은 “올해까지 5년째 진행된 저희 회사의 주주총회는 해마다 참석 주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과의 불상사를 우려하여 총회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상장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회사도 처음에는 열린 주주총회를 시도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여러 해 진행하다보니 상장회사들이 우려하는 소위 총회꾼이라 불리는 전문주주들이 사라져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는 주주와의 대화의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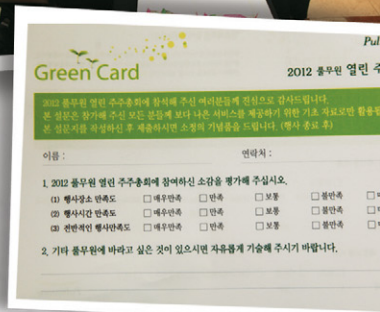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결산 상장법인 및 프리보드법인 1,762개사의 순투자자는 482만명으로 2010년의 454만명에 비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1인당 평균 3.49종목에 12,116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개인주주가 전체 순투자자의 98.9% (4,769,209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투자인구가 증가하고 개인주주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상장기업도 주주총회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주와 함께 즐기는 행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주주와 만나는 소중한 자리이다. 이러한 주주총회가 경영진에게는 주주에 대한 배려와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하여 주주를 모시는 자리여야 할 것이며, 주주 또한 기업의 장기적 동반자로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함께함으로써 기업과 주주 모두의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신뢰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병철 파트장(기획팀 홍보파트)



고객에게 편리함을, 지역에 희망을, 직원에게 행복을 DGB금융지주

- *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종합금융그룹
- *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녹색경영
- * 작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 대표이사 : 하춘수
- 업 종 : 기타 금융업
- 설 립 일 : 2011년 05월 17일
- 상 장 일 : 2011년 06월 07일
- 본 사 :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 홈페이지 : www.dgbfg.co.kr

■ 신뢰와 사랑의 금융동반자로 종합금융그룹 출범

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종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45년 역사를 가진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DGB캐피탈, 카드넷, 대구신용정보 등의 4개 회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초 IT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초우량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주사체제의 틀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구은행의 지역밀착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고유의 사업사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지역고객에 대한 금융편의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015년 중기 비전인 총자산 100조원, 당기순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할 목표를 그룹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Ⅰ 대구은행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대구은행은 주 영업기반을 대구·경북지역에 두고 고객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많은 사랑과 높은 관심으로 숏한 난관을 극복해 오면서 총자산 32조원, 점포수 231개를 지닌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해 왔으며, 특히 2010년에는 탄탄한 재무성격을 실현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 '201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아시아-태평양 지수와 한국지수' 편입되었고,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신뢰받는 은행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 DGB캐피탈 |

DGB금융그룹은 2012년 1월 10일 DGB캐피탈 출범식을 개최하고, 동시에 DGB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DGB캐피탈은 대구·경북지역에 영업망을 확충하여 대구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하준수 회장은 “현재 DGB캐피탈은 자본적정성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올해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무리한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캐피탈 업계에서도 DGB캐피탈은 은행계 캐피탈로서, 자금조달 및 영업기반 확대 등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구신용정보 |

대구신용정보는 2000년 7월 대구은행이 7개 지역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기관으로 부실채권 회수와 신용조사 및 민원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지역발전과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목표를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로 정하고 특수채권 매출 10% 이상증대, 대외채권 영업력 강화, 임대차 조사업무 점유율 확대, 아웃소싱이 가능한 신사업 업무 지속 발굴, 금융지주사 설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대, 실적 제고를 위한 성과 배분제도 등의 주요 영업전략을 추진하여 주주 가치창조와 경쟁력 있는 정보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 카드넷 |

1999년 설립된 카드넷은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가치 아래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의 리더로 앞장서고 있다. 대경교통카드를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RF전자화폐로 재탄생시켜 교통은 물론 유통, 인터넷, 통신, 보안 시스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제2의 창업’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더 높은 도약, 제2창업 원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원칙 경영, 신성장 동력 확보, 시너지 창출이라는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환경사랑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

DGB금융그룹의 대구은행은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경영 모범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기반 환경분야 특화점포인 'DGB사이버 그린지점'을 개점·운영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 CDP Korea'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3년 연속 금융분야 리더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2006년부터 환경경영 추진조직을 구축하여 매년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영업점 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사업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금융권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을 받아 녹색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전략과 신성장 동력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경영

DGB금융지주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DGB동행봉사단은 권역별로 대구지역 20개, 경북지역 8개, 서울지역에 1개 등 총 29개의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봉사, 환경보전, 사회문화, 기부·기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DGB사회공헌재단' 창립총회를 갖고 금융권 최초로 '종합 사회공헌재단'을 출범하였다. 지방 금융권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의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및 후원, DGB금융장학재단, 사회복지, 문화·예술·체육, 환경·글로벌, DGB봉사단 등 6개 분야의 종합적인 사회공헌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DGB금융지주는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항상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그룹의 사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의 아동복지 이용시설 '파랑새드림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사회 내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특성화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내의 아동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김재호
본회 전문위원

개정 상법시행령 주요내용 해설

I 개정배경 및 취지

2011년 4월 개정된 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상법 시행령도 대폭 개정이 되었다.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무와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물출자시 조사의 면제 범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 범위 및 준법지원인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주요내용은 ①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물을 출자한 경우에 감사인에 의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현물출자한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제7조 및 제14조),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게 한 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법에 의하되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등을 이사회에서 사전 결의하도록 하며(제9조 및 제10조), ③ 회계 원칙을 구체화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회사로 세분하여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제15조), ④ 다양한 사채의 발행절차와 발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제20조 내지 제24조), ⑤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요건과 범위 및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였고(제26조 내지 제27조), ⑥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에 합동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을 포함하였으며(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⑦ 준법통지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조원, 2014년 1월 1일부터는 5천억원인 상장회사로 정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부칙 제5조).

금번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전부개정으로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해산, 제5편 항공운송과 부칙 등 총 49개 조문과 부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시행령의 주요내용 중 실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주요내용

1. 5,000만원 이하의 현물출자 등 감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7조, 제14조)

감사인은 현물출자, 변태설립 등 일정한 법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회사의 임시기관으로서 그 임무는 선임목적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발기인·이사·청산인의 직무수행의 적법여부, 계산의 정확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i)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상법 제298조 제4항)와 ii)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상법 제366조 제3항)가 있다.

개정상법은 현물출자 또는 재산의 인수에 있어서 i)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ii) 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i)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절차를 면제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상법 시행령에서 이를 5천만원으로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또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한 거래소에서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로써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가액의 변동이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조사, 보고의무 중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법원에 보고하는 것만은 이를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과 절차 등 (제9조, 제10조)

개정 전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취득 후에도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익배당의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41조). 특히,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i) 배당재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와 ii) 배당재원의 규제 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의 2)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과, 상환주식 이외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시행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고(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하여 주주 등 열람에 공여토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의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밖에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을 정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0조).

3. 회계원칙의 구체적 기준마련(제15조)

최근 개정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제446조의 2). 이에 따라 회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상법에 두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은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회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별로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5조).

4.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에 현금흐름표와 주석 등을 포함(제16조)

개정 상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6조). 다만,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이사는 지배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상법 제447조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5. 미실현이익의 범위 설정(제19조)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상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6. 다양한 사채발행의 절차와 근거 마련(제20조 내지 제24조)

상법 제46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발행기준을 마련하였다(상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4조).

즉,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사채권자가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기타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발행기준 등을 마련하였다(상법 시행령 제 21조 내지 제24조).

7. 사채관리회사의 범위 등 기준마련(제26조 내지 제27조)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존, 그 밖의 사채의 관리를 공인된 금융회사 등에서 수행토록 지정하고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가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그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이 있는 곳은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이다(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채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채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27조).

8.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 조정(제30조)

개정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그 대상자에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외에 집행임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542조의 3).

그리고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과 행사기간, 부여할 주식의 종류 등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법에서 위임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하되 시행령에 위임한 100분의 3)내에서는 이사회가 이를 결의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한 회사 중 이를 규모별로 다시 세분하여 i)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하고, ii)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종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금액으로 하던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개정하였으며, iii)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하던 것을 이를 폐지하고 자본금 3,000억원 이하의 상장회사는 모두 그 범

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 통일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상법 시행령에서는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정년으로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못하고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후단). 다만 금번에 개정된 규정은 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상법 시행령 부칙 제3조).

9.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및 겸직금지 요건 강화(제34조)

개정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i)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 ii)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로 명문화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아울러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령은 이 중에 제34조 제5항 제2호의

사목을 개정하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의 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변호사 2명 이상의 합동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외이사의 겸직금지관련 상법시행령 제34조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13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④ (생략) ⑤ (생략)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u>이사·감사</u>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계열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u>이사·감사</u>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다음 각목의 법인의 <u>이사·감사</u>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u>이사·감사</u> 및 피용자이었던 자 가. ~ 바. (생략) 사. 해당 상장회사와 <u>법률자문·경영자문</u>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u>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로</u> 재임 중인 자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④(좌동) ⑤ (좌동)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u>이사·집행임원·감사</u>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계열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u>이사·집행임원·감사</u> 및 피용자이었던 자 2. 다음 각목의 법인 등의 <u>이사·집행임원·감사</u> 및 <u>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u>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u>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u>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u>이사·집행임원·감사</u> 및 <u>피용자</u>이었던 자 가. ~ 바. (좌동)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u>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업무 수행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u> 그 밖에 자문요역을 제공하고 있는 <u>법인</u>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u>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u> 재임 중인 자

한편, 사외이사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로 재임중인 자’로 규정하여 제한하였으나 개정령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로 변경하여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강화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여기에서 ‘이사’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장회사는 물론이고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 경우 어느 회사의 이어나 감사 또는 집행임원 등을 사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요건 중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제34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시기를 경과조치로서 일정기간 유예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상법 시행령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였다(부칙 제4조).

10.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제35조)

상법 제542조의 9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하여 이를 세분하여 규정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즉, 개정 전에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령은 이를 세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관련 상법시행령 제35조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1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② (생략) ③ 법 제542조의 9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u> ④~⑨ (생략)	제1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② (좌동) ③ 법 제542조의 9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다음 각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u> 1. <u>법인인 주요주주</u> 2. <u>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회사 및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u> 3. <u>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회사 및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u> ④~⑨ (좌동)

11.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집행임원을 포함 (제36조)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에 정하는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에 기존의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외에 '집행임원'도 포함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이에 따라 i)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

1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 결정(제39조 내지 제42조)

상법 제542조의 13 제1항, 제5항 3호 및 제12항에 따라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조원, 2014년 1월 1일부터는 5천억원인 상장회사에 적용토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부칙 제5조). 아울러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명시하였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도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상법 시행령 제41조).

금융관계법에 따라서 이미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개정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법 시행령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개정상법 및 동 시행령에서 두도록 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단서).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도록 하는 명문을 둔 것이다.

이하에서는 준법통제기준 등에 관하여 상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적용범위

상법 제542조의 13 제1항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규모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하되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에 따라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토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부칙 제5조). 이는 그동안 경제단체에서는 2조원이 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법무부는 당초 3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하기로 한 초안에서 절충형태인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그 범위를 정하되 그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한 것이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5천억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으로서 모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다.

(2)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할 사항

상법 제542조의 13 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할 사항에 대하여 상법 시행령은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법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

상법 시행령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① 법 제542조의 13 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13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이하

-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9.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한편,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개정상법상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하고 적합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3일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을 제정·공표하였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 평가, 기타 등 총 5장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다.

(3)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 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41조).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상법 시행령 제41조(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 13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학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로써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할 것의 요건을 삭제하여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41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두고 있던 준법지원인의 소극적 요건인 결격요건은 이를 삭제하였다.

(4) 준법지원인의 영업업무 제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시행령 제42조).

여기서 '영업관련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에서도 준법지원인은

상근이사나 집행임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준법지원인이 되는 자는 준법지원인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기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11조).

III 실무상 유의사항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관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상법 시행령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취득의 **목적** 등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취득목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그 처분을 자유롭게 하였다. 한편 개정 전 상법에서는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 규정을 아예 삭제하였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관련

상법 시행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개정상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 3,000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3/100으로 단순화하였다.

한편, 이미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정년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후단). 다만 이 규정은 상법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부칙 제3조).

3.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제한 관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요건에 종전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감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외에 집행임원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의 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변호사 2명 이상의 합동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외국법자문사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그리고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로 재임중인 경우만 제한하였으

나 개정상법 시행령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다른 회사 (비상장회사 포함 의미)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까지 확대하였다.

4.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관련

기준에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로 i)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만이 해당되었으나 개정상법 시행령에서는 여기에 각각 집행임원을 포함하였다.

5.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의 범위 등 관련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부칙에 상법 시행령 시행일(2012. 4. 15)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억원을 1조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상법이 시행되는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토록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토록 하여(상법 시행령 제39조, 부칙 제5조)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였다.

금융관계법에 따라서 이미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다.

준법지원인의 겸직여부도 해석상 논란이 되는데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상법 시행령 제42조) 준법지원인이 상근감사 등을 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강경진 과장/ 공인회계사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유의사항

지난 2011년 4월 14일에 공포된 상법(이하 '개정상법')과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12년 3월 28일, 이하 '개정상법 시행령(안)')*은 배당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정의와 개정상법 및 개정상법 시행령(안)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12년 4월 5일 최종 공포 예정

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과 미실현이익의 정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은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은 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9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말함(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5조)

2. 개정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위한 유의사항

(1)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 재무제표 :

개별(별도) 재무제표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순자산액의 기준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에서 '대차대조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62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K-IFRS에 따른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연결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개정상법 제451조 제1항,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제외)으로, K-IFRS상 '자본금'과 일치한다.

*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했던 舊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과는 달리 K-IFRS는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기업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제451조(자본금)

-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3) 자본준비금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개정상법 제459조 제1항)을 말한다.

제459조(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8

조)을 의미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말함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자본준비금의 원천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준비금의 원천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개정상법 제459조 제1항). 그런데 개정상법이나 舊상법에 '자본거래'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舊상법 제459조는 자본잉여금의 종류를 열거(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한 바 있어(개정상법에서는 관련 사례가 삭제됨), 이를 통해 상법상 '자본거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2) 자본준비금의 적립방식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름

상장회사는 K-IFRS에 따라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자본잉여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표시할 것을 요구했던 K-GAAP과는 달리 K-IFRS는 '자본잉여금'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개정상법상 자본잉여금과 K-IFRS상 자본잉여금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에서 '소유주(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동 기준서 BC 49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라고 하여 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소유주와의 거래(자본변동표에 표시)'와 '비소유주와의 거래(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K-GAAP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서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는 자본잉여금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고, 舊상법에서 열거했던 자본잉여금의 종류(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K-IFRS에서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신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한편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는 K-IFRS상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 32).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모두 자본항목으로서 잠재적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의 가산항목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이들 역시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개정상법상 대표적인 법정준비금(개정상법 제458조)이므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배당예정액의 1/10)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미실현이익

개정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을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상장기업의 경우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앞서 기술하였다.

상기 정의를 요소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미실현이익은 ① K-IFRS에 따라, ②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③ 순자산 증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K-IFRS 수익(이익)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K-IFRS상 분류(표시) 방법을 먼저 살펴 봐야 한다.

K-IFRS는 수익과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8),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 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9). 이때 기타포괄손익이란 '다른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

-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K-IFRS 제1016호 '유형자산'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K-IFRS 제1039호 참조)

1) K-IFRS상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지분법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등은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는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이익잉여금 마감절차를 통해 순자산에 반영되므로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 이후 후속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증감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관리 없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이익잉여금 중 미실현이익 누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상법 시행령(안) 부칙 제6조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상기 경과규정으로 인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제외하지 않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당기손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누계액 관리는 개정상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3년 1월 1일,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K-IFRS상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보험수리적 이익 등도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이들 항목은 당기손익을 통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반영하여 계상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 자산이 제거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조정(일종의 실현손익화)되어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언제나 특정시점 현재의 관련 항목 누계액으로 표시되므로 미실현이익 누계액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사항

당기손익이나 포괄손익에 반영된 손익 사항 중 어떤 항목이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K-IFR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정과목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 부채의 성격과 회계처리 유형별로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을 판단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은 제외하도록 하는 반면 미실현손실은 가산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실현이익만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가능증권 계정에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각각 300원, 1,000원 발생하여 재무상태표에 700원의 순손실로 계상(순자산 700원 감소효과)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는 300

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항목별로 미 실현이익과 미 실현손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K-IFRS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상태로 계상되어 있는 바, 개정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 실현이익이 관련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인지, 고려 후의 금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개정상법상 미 실현이익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후의 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순자산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FRS를 최초채택한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이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에 따라 K-GAAP상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었던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한 바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상법상 미 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재무상태표상 계상 위치(자본잉여금 혹은 이익잉여금)에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원칙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개정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12. 2. 6) 부칙 제2조에서도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 실현이익은 미 실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당기순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 실현이익만을 경과규정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당기순익'을 통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재분류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은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정상법 시행령(안) (2012년 3월 28일)에서는 '당기순익' 부분이 삭제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 실현이익은 미 실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도 부칙 제2조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배당재원으로 활용가능). 이와 같은 논리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행한 보험수리적손익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93A ~ 93D 참조). ☑

토막 상식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국가가 경제 주체의 하나로 상업적 활동에 나서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유(국영) 기업과 국유 상업은행, 국부펀드 등을 앞세워 경제 행위를 한다. 해당 국유기업은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규모를 키운 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4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역시 국가자본주의의 산물로 세계 자원·금융·부동산 분야의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국유기업의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도희 과장/공인회계사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영리내국법인에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 해설 Ⅲ : 국세기본법

영리내국법인이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받을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 즉,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및 증권거래세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중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6년 세법의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중 위에 언급한 세법 중에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세법의 부과권과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세법에 정해놓은 제도로, 형식상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고 본세의 세액에 가산해서 함께 징수하는 것이지만 국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본세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집행기준 47-0-1, 대법원2004두2356, 2005.9.30.).

1.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정신고기한^{주1)}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는 1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가산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1)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① 일반 무신고가산세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산출세액 등^{주4)}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경우^{주2)} :
= 납부세액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 영세율과세표준의 0.5%

② 부당^{주3)} 무신고가산세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MAX [① 산출세액 등^{주4)}의 40%,
② 수입금액의 0.14%]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주2)} :
납부세액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 영세율과세표준의 0.5%

주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

주3) 부당한 방법

-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해서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의 방법을 말함. 이하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이 글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포함된 산출세액

또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때에 중복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은 했지만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이 미치지 못했거나,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① 일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과소신고한 경우 :
= 산출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과소신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납부세액 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 영세율과세표준의 0.5%

②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부당과소신고한 경우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Max [①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 (과소신고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10%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부당과소신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 (과소신고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10%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

제받았지만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어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당초 신고한 세액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그런데,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는데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조세정책과-339, 2011.3.18.).

또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해서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조세정책과-8, 2011.1.3.).

3.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 × 미납(초과환급) 일수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할 사업장에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에도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법인은 또한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MAX [① 미납세액 × 3%, ②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3%]

※ 단,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5.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유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서 상종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에 한함)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을 통해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20%를 감면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10%를 감면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
7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

6. 가산세의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

법인이 세법에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이 가산세에 해당되지만 세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의 금액에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과세기간 단위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비중소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한도에 대한 규정은 고의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목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



토막 상식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한 기업의 특허가 세계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이 이를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프랜드 원칙에 해당되는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특허권 사용료 협의 없이도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을 원천 봉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채 동 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위법한 경영권 분쟁의 제기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요건

이 자료는 채동현 변호사가 사건 판단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판례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이다. <편집자註>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야 한다는 법리하에,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와 불화가 있자, 공모하에 戊를 협박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戊가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후 戊를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소집통지 없이 그를 배제한 가운데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戊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丙과 丁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丙과 丁은 戊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¹⁾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나○○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오○○ 2. 권○○

1) [각공2012상, 325]; 확정



2. 사실관계

가. 원고 등의 S회사에 대한 투자와 피고 오○○과 조○○의 투자금 무단 사용

- (1) 피고 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회사')를 운영하였고, S회사는 2004. 1.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은 투자유치 등 S회사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다.
- (2) 원고는 친구 조○를 통하여 피고 오○○과 조○○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아 2005. 3. 3.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S회사에 8억 원을 투자하였고, S회사와 사이에 위 8억 원에 대한 '투자지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3) 피고 오○○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8억 원 중 2억 원을 조○○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오○○과 조○○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 (4) 한편, 구○○은 조○○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2005. 5. 16.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S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조○○은 구○○에게 위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Y통상(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오○○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억 3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 오○○의 동의를 받고, 위 금원 중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만을 S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오○○

과 조○○은 위 1억 3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한 바 없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투자유치 및 S회사, N홀딩스에 대한 경영 참여

- (1) 원고는 S회사에 위 금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 오○○으로부터 "2005. 7.경이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시작되어 바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2005. 12.경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05. 7~8.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PF대출이 나오지 않자 S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S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 오○○이 자신과 구○○의 투자금 중 일부를 조○○에게 임의로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 원고는 당시 S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투자금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이라고 여기고, 피고 오○○과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3) S회사는 2005. 12. 14. D회사와, S회사가 D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지분 중 49%를 대금 40억 원에 양수하여 D회사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
- (4) 원고는 S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이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권 지분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이 2005. 12. 15. 20억 원을, 소외 2가 같은 날 10억 원을, 소외 3이 2006. 1.경 10억 원을 각 S회사에 투자하였다.



(5) 한편, 피고 오○○과 원고는 2006. 7.경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S케미칼을 인수하여 법인상호를 원고와 피고 오○○의 성을 딴 'N홀딩스'로 변경하였고, 그 후 N홀딩스는 2007. 5. 17. S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49%를 보유하게 되었고, S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6) S회사의 주식은 2006. 5. 30. 당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0만주 중 80%(8만주)를 피고 오○○이, 20%(2만주)를 박○○이 보유하고 있었고, N홀딩스의 주식은 2006. 7. 7. 당시 피고 오○○이 100%(8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7) 피고 오○○은 원고 및 피고 권○○(원고의 동생 나○○의 친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탁으로 N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과, ① 2006. 6. 15. S회사 주식 중 피고 오○○ 명의의 주식 35%(3만 5천주)와 박○○ 명의의 주식 20%(2만주)를 원고에게, 피고 오○○ 명의의 주식 5%(5천주)를 피고 권○○에게, S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06. 7. 10. N홀딩스의 주식 중 55%(4만 4천주)를 원고에게, 5%(4천주)를 피고 권○○에게, N홀딩스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라고 한다).

(8)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S회사와 N홀딩스의 각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이 원고 55%, 피고 오○○ 40%, 피고 권○○ 5%로 변경되었다.

(9) ① S회사는 2006. 7. 4. 원고가 지정한 강○, 나○○, 소외 4이 각 이사에, 소외 5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18.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② N홀딩스는 2006. 7. 14. 원고가 지정한 피고 권○○이 대표이사에, 소외 6이 이사에, 소외 7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25.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10)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07. 5. 28.까지 S회사의 이사 및 N홀딩스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어 등기부상 등재되었고, N홀딩스의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결재권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이전에 S은행에 같이 근무하였던 강○을 2006. 8.경부터 N홀딩스에 근무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와의 경영권 분쟁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들이 야기한 원고와의 경영권 분쟁

원고와 피고 오○○은 2007.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매각 방안 등에 대하여 마찰이 있는 등 업무적으로 불화가 있어 왔는데, 피고들은 원고 몰래 별도의 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로 하여금 D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 권○○은 2007. 12. 31. A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협박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오○○은 2008. 7. 31. 13:00경 N홀딩스 사무실 내에 있는 원고의 집무실에 들어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주)S자원개발의 소외 8, 소외 9(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원고에게 "난 너 죽이고 감방가면 그만이다. 한 시간 내로 강○ 본부장 데리고 나가라. 이 시간 이후 사무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23.자 2010비합59 결정



근처에 얼씬하면 죽여 버리겠다. 여수에서 애들도 올라오라고 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다. 서류 몇 켤레 찢었다고 마치 너의 회사인양 얘기하지 마라. 내가 100% 최대주주다. 채권은 네 것 없다.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감방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원고의 집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에게 “오늘은 업무가 끝났으니 모두 퇴근하세요”라고 말하고, 직원 여○○에게 큰 소리로 망치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망치를 들고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와 강○은 피고 오○○의 요구로 원고의 짐을 싸 사무실을 나갔다.

(3) 원고에 대한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권○○은 그 다음날인 2008. 8. 1. 직원 여○○에게 지시하여 N홀딩스의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온 원고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채 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권○○이 여○○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8. 8.경 여○○에게 지시하여 N홀딩스 사무실 내 원고 집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전화와 인터넷을 해지하거나 피고들의 A회사 사무실로 이전하여 버리고, 원고의 N홀딩스 이메일계정을 삭제하고, N홀딩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를 위 A회사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원고가 위 집무실에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4) 원고의 N홀딩스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N홀딩스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전원(피고 오○○ 95% 지분, 피고 권○○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N홀딩스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사 소외 10, 소외 6, 감사 소외 7을 각 해임하고, 피고 오○○과 소외 11(2006. 12. 26.부터 2007. 12. 31.까지 A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는 자이다)를 이사로,

소외 12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같은 날 피고 권○○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오○○과 소외 11, 소외 12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 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이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5) 원고의 S회사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S회사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전원(피고 오○○ 95% 지분, 피고 권○○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강○, 나○○, 소외 4, 감사 소외 5을 각 해임하고, 피고 권○○을 이사로, 소외 12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6) 부존재 내지 무효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과의 법인등기부 등재

피고들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S회사 및 N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을 제출함으로써, S회사 및 N홀딩스의 각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 해임 및 선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N홀딩스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기존 투자자들의 채권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N홀딩스의 직원인 강○, 여○○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① 위 사람들 중 자신이 관리하는 구○○ 등으로부터는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위임을 받았고, 소외 12로부터는 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자신의 자금을 소외 12 명의로 S회사와 N홀딩스에 투자한 것이어서 소외 12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이 모 등 에 대한 투자계약서도 강○에게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기 이전에 피고 오○○이 유치한 투자자들로서, 원고는 그 투자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 오○○과 직원 여○○의 말을 믿고 투자사실을 인정하여 주었다.

(2) 그런데도 피고들은 2008. 10. 27.경 방배경찰서에 “원고가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2배로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투자자 또는 대여자 사이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S은행의 법인실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강○, 여○○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구○○, 소외 12 등 이○○ 명의의 각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다.

마. 관련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1) 원고는 2008. 10. 29. N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하고, 원고의 N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 등을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1.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N홀딩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3. N홀딩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4. 피고들과 소외 11, 소외 1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홀딩스에서의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 및 소외 11, 소외 12이 N홀딩스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10. 피고들 등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3) 원고 등은 2008. 10. 29. N홀딩스와 S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및 원고 등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오○○은 2009. 4. 15. N홀딩스와 S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보유한 N홀딩스와 S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피고 오○○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4.경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2. 17.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의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라.항 기재의 무고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오○○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권○○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



여 피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3. 피고 오○○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 권○○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2. 8.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 피고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현재 확정된 위 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3. 1심의 판단²⁾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협박,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무고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친과 회사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협박으로 원고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행위 내용은 단순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 측에 투자하게 된 경위, 피고 오○○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본 이 사건 각 불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피해의 정도,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을 믿고 수십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회사 경영권에서 배제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2심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금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 이므로(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 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의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합90691 판결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 및 다수 지분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원고의 경영권을 무단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원고의 주주권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등기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까지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스스로 원고의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무고까지 하는 등의 고의에 의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도 함께 입었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을 알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친과 회사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협박으로 원고

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이후 피고들이 행한 위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업에의 영향,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명예 등의 피해, 이후 피고들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해설]

1. 일반적으로 형사적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배상



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적 범죄행위가 아닌 민사적 위법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고 생각된다.

2. 이 사건의 특수성은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민사적 분쟁상황과 관련하여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전제로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그 지급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어 대법원의 법리설시가 나온 사건은 아니지만, 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위자료의 청구요건으로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 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의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법리설시에서 분명하지 아니한 점은 형사적 범죄행위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이러한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되는가의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심각한 협

박과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가 동원된 사건이므로 그 위자료의 인정이 다소 쉬운 사건이 아닌가 보이는데, 위 법리판시에서는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로 요건을 특정하고 있고, 1심과 달리 최종적 법리판시에 반드시 형사적 위법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사적 범죄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발전적인 법논리를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법이 동원되었음에도 1심이 1억, 2심이 4천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의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제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법원이 너무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기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회사의 규모와 지장을 받게 된 사업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선례적 효과를 위하여는 좀 더 과감한 손해액수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최신 법령 정보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세부자료는 법제처의 Web Site(www.moleg.go.kr) 한국거래소 Web Site(www.krx.c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註)



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이산화탄소(CO₂)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에 이산화탄소(CO₂)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범위 조정(안 제7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신설(안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분의 100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터보볼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3. 시행일자

2012년 2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신고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증권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등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3일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2012년 3월 2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치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시장감시규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정비하고, 회원의 수탁업무 처리를 현실화하여 업무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투자위험종목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종목으로 확대(제135조제1항)
- 나.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에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조건부호가의 입력제한을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에서 제외(제12조의2제5호나목)

3. 시행일자

2012년 3월 12일

입 법 예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 급변기 등에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안 제208조제2항제3호 신설)
- 주식 등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대량 보유하거나 변동된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사채의 만기

이재혁 과장(조사1팀 공시제도파트)

【질 의】

당사는 2011년 11월 A법인과 합병을 하였으며, 동 합병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에 일부 시설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채의 만기가 도래되고 교환권이 행사되어 자기주식을 교부했을 때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후자의 경우가 맞는다면 사채의 만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응 답】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자기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 동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은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규정내용 때문에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이 조를 적용할 때' 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처분으로 간주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4항, 동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3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교환사채권이 행사되어 자기주식을 교부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채의 만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공시업무 - FAQ 참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산공고시 유의사항

강택신 대리(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질 의】

당사는 금번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정관변경 및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를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공고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요?

【응 답】

회사의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상법 제292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바로 유효하게 변경되며, 공증인의 인증·서면의 변경·등기 등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6.28. 판결, 2006다62362). 이에 귀사의 정관변경시 별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의 이후 발생한 공고사항에 대하여도 즉시 효력을 미치게되므로 곧바로 전자적 방법에 따른 공고(이하 '전자공고'라 줄임)를 통해 결산공고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상법상 전자공고를 위한 회사의 홈페이지 구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요건이 열거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공고내용을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조치 외에 추가로 공고내용의 입증가능성, 법정 공고기간 이행의 증명가능성, 공고기간 이후 공고사항의 열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 중 전자공고 전용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고의무를 이행하는 '게시판형(web bulletin board system)전자공고'를 구성·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전자공고관련 별도 메뉴를 개설하고, 해당 메뉴를 전자게시판형태로 ② 공고사항의 제목일람 및 검색, ③ 공고문의 등록일 및 변경일, ④ 공고문의 화면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등은 본회 홈페이지 [상장협 간행물] - '전자공고 표준예시 및 실무매뉴얼(2011년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이예지(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질 의】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정원 8인승, 배기량 2,000cc)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출장 등 사업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매달 지불하는 렌트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응 답】

귀사가 임차한 자동차는 운수업 등의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비영업용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렌트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¹⁾. 그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이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실무상 사업관련성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앗겠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수업 등의 영업용에 사용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²⁾. 영업용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둘째,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는 제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이 원동기인 것은 총배기량 125cc 초과,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는 정격출력 1KW 초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정원 8인 이하의 전기승용자동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는 제외)에 해당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귀사의 임차 자동차는 전자제품업에서 직원들의 출장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인승이므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렌트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실 전 상 담 사 례 ●

그 밖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주차료, 유류비, 주차장 관리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서, 동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해당 매입세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주3)}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2조).

그러므로 귀사와 같이 운수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에는 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자동차를 사용하실 것을 고려하셔야 매입세액만큼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동차를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부인당하게 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1)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여부 요약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

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공제
○	×	공제
×	○	불공제
×	×	공제

주3) 법인세법은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불명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자본주의 4.0

박윤진 과장(업무팀 연수파트)

□ '자본주의 4.0'의 개념

-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며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 것임.

- 자본주의 1.0

- 역사적 시기 : 자본주의의 태동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본주의 1.0에 해당하는 시기는 18세기 애덤 스미스로부터 1929년 대공황까지를 지칭함.
- 주요 인물 : 애덤 스미스, 해밀턴, 막스 후버 등
- 특징 : 자유방임의 시기. 이 시기의 정부는 '야경 국가'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개입할 수 없었고,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 창출과 시장 지배가 허용됨.

- 자본주의 2.0

- 역사적 시기 : 1930년대 뉴딜정책 시기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직후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
- 주요 인물 : 루스벨트, 케인스, 닉슨, 카터 등
- 특징 : 수정자본주의 시대. 케인스주의가 지배하던 이 시기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지배

- 자본주의 3.0

- 역사적 시기 :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 주요 인물 : 대처, 레이건, 부시, 그린스펀
- 특징 : 신자유주의 시대.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파생상품, 주식 등 금융경제가 활성화됨.

- 자본주의 4.0

- 역사적 시기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 특징 :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적응성 혼합경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함.

〈아나톨 칼레츠키에 의한 자본주의 분류〉

분 류	시 기	주요인물	특 징	비 고
자본주의 1.0	애덤스미스 ~ 1929년 세계대공황	애덤 스미스, 해밀턴, 막스 후버	자유방임	
자본주의 2.0	1930년대 뉴딜정책 시기 ~ 1970년대 석유파동	루스벨트, 케인스, 닉슨, 카터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3.0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래기 ~ 2008년 금융위기	대처, 레이건, 부시, 그린스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4.0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응성 혼합 경제	

□ '자본주의 4.0'의 출현 배경

○ 위에서 설명한 각 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은 1803 ~ 1815년 나폴레옹 전쟁, 1930년대 경제위기, 1970년대 경제위기라는 역사적 사건들이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음.

○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자본주의 4.0)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07년부터 일어난 일련의 세계금융 위기들로, 아나톨 칼레츠키는 가장 최근의 전환점으로 2008년에 일어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자신의 책 머리말에서 다음과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함.

- “2008년 9월 16일 무너진 것은 단지 하나의 투자는 행이나 금융시스템이 아니다. 정치철학과 경제 시스템 전체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 '자본주의 4.0'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내용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 : 위기를 계기로 신흥국의 부상이 가속화

- 글로벌 불균형과 신통상질서 :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역내 교역이 증가됨에 따라 다자주의체제 약화와 지역무역협정의 지속적 확산이 예상됨.

- 글로벌 금융질서 :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스템, 달러화에 대한 신뢰의 약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산업과 기술의 영역 구별이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에 신상품, 신산업이 등장

-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적 · 정치적 위상의 약화와 중국, BRICs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헤게모니의 변화 가능성

□ 자본주의 4.0의 특징 '적응성 혼합경제'

○ 아나톨 칼레츠키는 앞서 요약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적응성 혼합경제'라는 말로 압축하면서,

- 미래가 불확실하며 미래가 인간의 행위와 기대 그리고 현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합리적 기대라는 가정 아래 한 가지 정확한 경제 작동 모델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며,

-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시장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가야 한다고 주장

○ 적응성 혼합경제의 특징

-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인정
: 세계가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이 모두 오류를 범할 수 있음과 변하지 않는 하나의 관점으로 경제 제도를 관리할 수 없음을 인정

-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
: 정부와 시장의 일방적 추종주의를 벗어나 제도와 시스템에서 더 한층 유연한 적응성이 필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상호 의존성 확대
: 정부개입과 자유시장의 동반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자본주의 4.0'의 시사점

- 정부의 탄력적 정책 운용
 -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
 - 통상, 금융, 산업 전반의 정책에 있어 개입을 통한 성장거점확보와 개입 자체를 통한 시장자율 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용
 -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중시하되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확산
 - 환경, 기부, 문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필요
 -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문화가 요구됨
-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
 -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식융합시대에 적절한 창의적 가치기반 확립
 -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넘어 도래하고 있는 문화자본주의에 필요한 인재 발굴과 새로운 교육제도의 정착 

• 토막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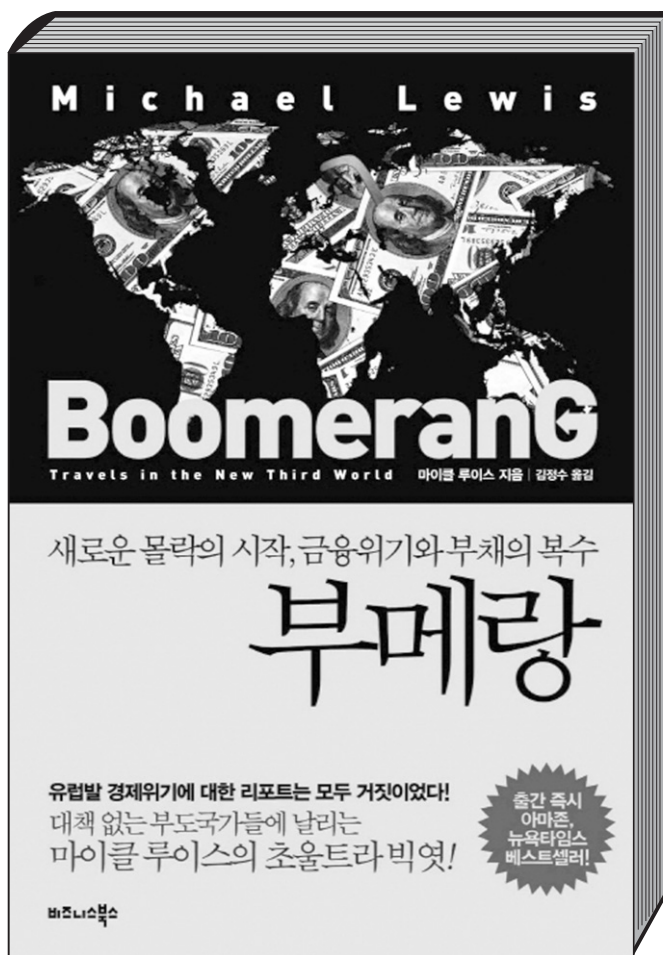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 또는 기업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징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담합행위자의 자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준다. 리니언시의 작동원리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된다.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숨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백할까 두려워 둘다 죄를 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거래에도 리니언시를 도입해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부 메 랑

이 자료는 세계 베스트셀러 및 국내의 우수 도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네오넷코리아(<http://www.summary.co.kr>)에서 제공한 것이다. <편집자 함>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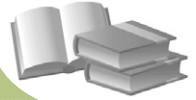
경제 독설가 마이클 루이스가 고발하는 연쇄국가부도 사태의 실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재정불량국들의 연쇄부도 사태 이면에 감춰진 실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금융 쓰나미의 경로를 추적하고, 부도국가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낱알이 보여준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랜드는 물론 해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일, 도시 파산문제로 흔들리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찾아냈다.

각 나라들은 부채로 인해 파산 상태에 직면했지만, 사실 문제는 그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과도한 탐욕, 무능한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불균형, 포퓰리즘의 폐해 등이 금융 시스템 문제와 맞물려 국가 붕괴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국가재정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는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반문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저 자

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 - 세계 최고의 논픽션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 미국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경제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살로먼 브러더스에서 일했으며, 이후 저널리스트로서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글을 썼다. 시사주간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미국판의 편집인, 미국의 저명한 진보적 평론지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의 주필을 거쳐 현재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글을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머니볼」, 「눈먼 자들의 경제」(공저), 「빅 숏」, 「패닉 이후」, 「라이어스 포커」 등이 있다.



<< 차 례

해제 - 과일과 탐욕의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_ 최공필 한국금융
연구원 상임전문위원
서문 - 사상 최악의 연쇄부도사태

제1장 툰드라의 월스트리트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금융왕국, 아이슬란드의 붕괴
'국가'의 탈을 쓴 해지펀드
반값으로 폭락한 VIP룸
빛으로 즐긴 파티의 대가
자기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들
노래 두 곡에 100만 달러
거품가격이 만들어진 가짜 자본
귀를 틀어막은 사람들
또 한 번의 역사적 금융 광기사건
재무장관은 수의사, 중앙은행 총재는 시인
어민들이 부유하지 않은 이유
그들에게 주어진 끔찍한 생계수단
하루아침에 외환금융인이 된 어부
진절머리 나는 은행 시스템

제2장 그들은 새로운 수확을 창조했다

싸구려가 되어버린 국가신용, 그리스의 위기
문제는 은행이 아니라 '나라' 자체
비상식이 상식으로 군림하는 곳
온 국민이 탈세범인 나라
그리스 경제 해법을 찾아 수도사들의 세계로!
적자와 부채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
부동산 제국을 일군 수도사
수도사들의 대담한 투자 전략
'죄의 용서'를 파는 부동산 제국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폭주 기관차

제3장 구제금융의 뒤편에 갇힌 켈틱 호랑이

부동산 시장 붕괴로 드러난 금융 시장의 거품, 아일랜드
유럽 최초의 경제 시스템 붕괴 국가
미스터리로 가득한 켈틱 호랑이의 등장

구글의 성적을 뛰어넘는 부동산 수익률
완벽히 예견된 아일랜드 은행의 붕괴
피라미드 사기로 자멸한 국가
재앙으로 전락한 부동산 기적
은행의 부채를 떠안은 아일랜드 정부
광기의 절정에서 멈춰버린 시간
선장의 치명적인 오판
아일랜드를 침몰시킨 단 한 번의 결정
인구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부동산 왕국
버림받은 중소기업자들
분노의 썩은 달걀 세례

제4장 칼자루를 쥔 그들의 은밀한 두 얼굴

유로존 부채위기와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는 불안한 나라, 독일
깨끗한 외면에 가린 더러운 속내
칼자루는 독일이 쥐고 있다
미친 짓에 돈을 대주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제스처
쓰레기를 사들인 뒤셀도르프의 멍청이들
'고지식함'을 함정에 빠뜨린 '영악함'
알다가도 모를 독일인
IKB의 광적인 집착
또 하나의 대학살 기념품

제5장 세금을 집어삼키는 괴물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 제국, 미국의 추락
재정위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
신용위기에 놓인 지방정부
희망의 땅에 벽돌을 쌓아올린 젊은이
미국 안의 그리스 사태, 캘리포니아
세금을 집어삼키는 괴물
이미 부패해버린 공무원
공무원 연금에 불모가 된 주민들
구명보트에 오른 난파선의 생존자
절제를 모르는 '파충류의 뇌'
낙관주의의 양면성

툰드라의 월스트리트 -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금융왕국, 아이슬란드의 붕괴

-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
- * 2008년 9월 국가 파산
- * 파산 당시 3대 주요 은행 대출이 GDP의 10배
- * 파산 후 6개월 만에 실업률 3배 증가
- * 2011년 11월 S&P 신용등급 BBB-(안정적)로 조정

2003년도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 자산은 100억 달러 정도,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GDP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3년 6개월 뒤 이들 은행의 자산은 1,4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해 아이슬란드 GDP보다 훨씬 많아졌다. GDP의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한 경제학자가 내게 말한 대로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금융 시스템 확장”이었다.



여기에는 은행이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면서 아이슬란드의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분별하게 해외자본을 차입한 아이슬란드는 국제 규모의 은행 세 곳이 파산하자 그제야 금융계의 국제적인 야심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남의 돈으로 흥청거려온 아이슬란드의 30만 시민은 은행 손실 1,000억 달러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 손실액을 인구수로 나누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인당 약 33만 달러에 달했다. 더욱이 기묘한 외환 투기로 인해 개개인이 입은 손실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렀고, 여기에 주가마저 85퍼센트나 폭락하는 바람에 그보다 더 커다란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아이슬란드의 부채는 GDP의 8.5배에 이르렀다. 부채에 치어 죽을 지경인 미국도 3.5배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아이슬란드의 세 은행은 일시에 국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 손실이 어찌나 엄청났던지 파산한 지 몇 주도 안 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을 고려할 정도였다.

정부의 관리 아래 안정을 누리던 사회의 한 측면에 새로 도입된 경제생활 방식이 겨우 3~4년 만에 나라 전체를 집어삼킨 셈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아이슬란드인이 앞을 다 뒤 위협한 투기에 뛰어들었다. 금리가 15.5퍼센트에 이르고 코로나화 가치가 상승하자, 무언가 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던 그들은 코로나화가 아니라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를 빌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화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들은 엔화에 3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고도 외환 트레이드로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올라프손은 이렇게 말했다. “어부들은 대부분 외환 트레이드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외환 트레이드로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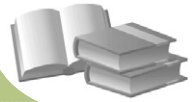
무 많은 돈을 버는 바람에 모두들 어업을 제쳐두고 금융 거래에 매달렸죠.”

나는 아이슬란드 은행의 무모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금에 의한 기업 매수-옮긴이)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한 런던의 또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를 만났다. 그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이슬란드 금융 시스템의 내막을 조사하게 했다. 탐정들은 거미줄처럼 뒤얽힌 복잡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도표를 만들었지만, 요약하면 금융 경험이 전혀 없는 몇몇 사람이 외국에서 단기대출로 수백억 달러를 차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자금을 자신이 대출 받아 쓰거나 친구들에게 대출해줘 은행 또는 축구팀 등의 자산을 매입하게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분적으로 마치 정신병자처럼 벼락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는 내게 아이슬란드 금융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이 개 한 마리를 기르고,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른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애완동물들이 각각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의합니다. 당신은 내게 개를 10억 달러에 팔고, 나는 당신에게 고양이를 10억 달러에 팝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애완동물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10억 달러를 갖춘 아이슬란드 은행을 소유합니다.

런던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지적한다. “그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자기들끼리 자산을 거래해 가짜 자본을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이 은행과 투자 회사가 계속 성장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런던 트라팔가 에셋 매니저스의 테오 파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의 신출내기들을 표적으로 삼고 저급한 자산, 가령 이류 항공사와 하급 소매업체 등을 팔아먹었죠. 그 자산들은 전부 최악의 LBO였습니다.”



그럼에도 총리를 비롯한 아이슬란드의 지도자들은 진실을 알려주는 목소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다.

현재 세계 금융위기의 감춰진 원인 중 하나는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널리 알리려 하기보다 매도포지션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이슬란드를(혹은 리먼브러더스를) 금융 범죄로 확실하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만 돌보는 어리석은 모리배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수확을 창조했다 - 싸구려가 되어버린 국가신용, 그리스의 위기

- * 2011년 디폴트 위기, IMF 구제금융 국가
- * 국가 부채 3,500억 유로(약 511조 원)
- * 전체 실업률 16.5%, 청년실업률 43.5%
- * 정크등급(투자부적격)으로 국제 신용등급 강등
- * 탈세 비율 GDP의 약 14%(연간 약 30조 원)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그리스인은 일단 불이 꺼지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부를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로 만들어 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한몫씩 안겨주고 싶어했다. 물론 정부를 돈 보따리로 만든 것은 막대한 대출자금이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그리스의 공공부문 실질 임금은 두 배나 올랐다. 이는 공무원들이 챙기는 뇌물은 계산에 넣지 않은 수치다. 그리스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민간 부문의 거의 세 배나 된다.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민간 부문의 거의 세 배나 된다. 국영 철도는 연간 임금이 4억 유로에, 기타 지출이 3억 유로인데 비해 연간 수익은 1억 유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영 철도 직원의 연간 소득은 평균 6만 5천 유로(약 9,500만 원)다. 재무장관을 지낸 스테파노스 마노스가 그리스의 철도 승객 전체를 택시에 태우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

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그리스인이 '중노동'으로 분류한 직종의 정년은 남성이 55세, 여성이 50세이다. 이때부터 국가에서는 연금을 넉넉하게 퍼주기 시작하며 600개 이상의 직업이 소위 '중노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에는 미용사, 라디오 아나운서, 웨이터, 음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의 공공 의료 제도는 물품 공급을 위한 지출이 유럽 평균보다 훨씬 많다.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퇴근할 때마다 종이 수건, 기저귀 등 물품 보관실에서 꺼내갈 수 있는 것은 무엇든 한 아름씩 안고 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리스의 은행가들은 거의 나무랄 데가 없다. 유럽의 은행가들 중에서 사실상 그들만이 비우량 주택 담보부채권을 매입하지도,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거나 혹은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도 않았다. 단 한 가지 은행의 커다란 문제는 그리스 정부에 약 300억 유로를 대출해주었다는 점이다. 정부에 빌려준 돈은 도난당하거나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스에서는 은행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은행을 망하게 했다.

그리스인의 탈세 규모와 그 범위는 정말 놀라웠다. 그리스의 의사들 중 약 3분의 2가 1년 소득을 1만 2,000유로(약 1,7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1만 2,000유로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1년에 수백만 유로를 버는 성형외과 의사도 세금 한 톨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문제는 법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법의 집행에 있었다. 사실 법전에는 15만 유로 이상을 탈세하면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세무원 1이 말했다. "그 법을 집행하면 그리스의 모든 의사가 감옥에 갈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모두가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법원이 세금 사건을 해결하는 데 15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스 경제에서 소득세 대상 중 30~40퍼센트는 공식적으로 신고



를 하지 않는다. 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이 비율이 평균 약 1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에 대한 조직적인 속임수 때문에 탈세가 어려운 세 금, 즉 부동산세와 판매세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었다.

그리스의 징세 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고 세 무원도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세금을 속 이거나 조작을 한다.

그리스의 경제 구조는 공공관리적이지만 실제 구조는 모 두 자기중심적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체제에다 수천억 달러 를 쏟아부었다. 결국 신용경제 호황으로 온 나라가 미쳐 돌 아갔고 이는 완전한 도덕적 붕괴로 이어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그리스의 금리는 독일보다 정확히 10퍼센트 높았다.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 이 희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스에는 신용이 없었다. 그 럼에도 그리스는 금융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북유럽 국 가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다.

1990년대 말, 마침내 그리스인에게 그럴 기회가 생겼다. 자국의 통화를 없애고 유로화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 말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일정한 국가적 목표를 충족 시키고 그들이 훌륭한 유럽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유로존의 다른 국가가 갇아줘야 할 만큼 빚을 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결국 그리스는 2000년에 한바탕 통계를 조작한 끝에 목 표를 달성했다. 2001년 그리스는 유럽 통화연합에 가입해 그리스의 화폐 단위 드라크마를 유로화로 바꾸고, 부채에 대한 유럽(독일을 의미한다)의 암묵적인 보증을 얻어냈다. 이제 그리스는 대략 독일과 동일한 금리, 즉 18퍼센트가 아 닌 5퍼센트로 장기기금을 빌릴 수 있었다. 유로존에 남아 있으려면 이론적으로 예산적자를 GDP의 3퍼센트 미만으

로 유지해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장부 조작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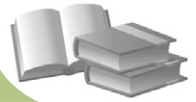
그리스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 흐름은 선불로 팔아 지출했다. 채권자들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을 유럽 연 합이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 외부에서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리스는 실제 재정 상태를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 내부에는 경고를 발할 시장이 없 었다. 근본적으로 모두가 한통속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009년 10월 4일 그리스 정부는 붕괴하고 말았다.

세금을 집어삼키는 괴물 -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 제국, 미국의 추락

-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 * 2009년 경제성장률 -2.9%
- * 2010년 재정적자는 세계 2차대전 이래 최고 수준
- * 2011년 S&P 신용등급 AA+로 강등

2011년 8월 5일, 신용평가기관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자 재무부 채권 시장이 급등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미국 정부가 새로 발행한 10년짜리 채권 의 금리는 2.04퍼센트로 떨어져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 다. 미국 재무부 채권과 함께 금 가격은 올랐지만 서구 선진 국의 다른 모든 증권과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미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 이 전보다 작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은 뒤, 미국 정부가 빚을 얻는 비용은 줄어들고 다른 나라는 모두 비용이 늘어났다. 이는 분에 넘치는 살림을 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에 대해 많 은 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잠깐이지만 백지수표를 얻은 셈이었다. 미국 정부는 위태롭게 보였음에도 오히려 더욱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덕분에 미국은 아직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을 위협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았다.

정부가 의심을 받는 순간 돈을 빌리는 비용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면 더 큰 의심을 불러와 비용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 같은 처지에 놓일 때까지 악순환이 반복된다.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아직 비현실적이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각 주는 시민과 함께 계속 부채를 늘려왔다. 그들의 부채 수준은 거의 두 배로 늘었고 주의 지출은 3분의 2가 증가했다. 당시 그들은 연금제도와 미래의 다른 채무에 필요한 약 1조 5,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따로 확보해둔 연금기금을 점점 위협해지는 자산에 투자했다.

1980년에는 국가 연금기금의 23퍼센트만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나, 2008년 무렵에는 그 수치가 60퍼센트까지 증가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사회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이들 연금기금은 모두 투자자금에 대해 8퍼센트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의료보호제도, 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 달러의 삭감, 소프트 이코노미(soft economy, 성장률은 높지만 그 기초나 국민생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경제-유흥)로 인한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하면 수조 달러에 이르는 빈 구멍이 드러났다. 이들 구멍은 두 가지 방법, 즉 공공서비스를 대폭 삭감하거나 채무불이행 중 하나를 수행해야만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중에서는 어떤 도시를 가든 재정적 위기 상황을 접할 수 있다. 산 호세는 1인당 소득이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구 25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신용등급이 가장 높다. 산 호세는 미국에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지만, 이는 채권 소유자가 채권 상환을 위해 시에 압력을 넣어 자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시 자체가 파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오후 늦게 나는 시청 건물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에서 척 리드 시장을 만났다. 2000년에 시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6년 뒤에 시장이 되었고 2010년에 77퍼센트의 표를 얻어 재선되었다. 그는 엄청난 문제에 갇혀 있었다. 시가 직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반으로 줄여도 결국 파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산 호세의 예산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안직 공무원의 임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임금이 모든 재량 소비 지출의 75퍼센트를 차지했다.

리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경찰관과 소방관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직원들에게 병가를 주는 대신 그들에게 그걸 모아 은퇴할 때 수십만 달러의 현금으로 바꾸게 했나요? 여기에는 부패가 있어요. 단순히 금전적인 부패가 아닙니다. 이진 공직자의 자세가 부패한 겁니다.”

2002년 샌디에이고가 파산을 고려하자 그는 비로소 산 호세의 재정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내게 도표를 건네주었다. 도표를 보면 그가 처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 때 시의 연금비용이 연간 7,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연금비용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러, 은퇴한 공무원의 연금과 의료비용이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3년간 연금비용만 무려 4억 달러에 달했는데 실제 예상 수명을 고려하면 6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니 법적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책임이 있는 시는 다른 지출을 삭감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한때 7,450명이던 산 호세 시의 공무원은 현재 5,400명으로 줄었다. 산 호세 시는 서비스 대상자인 주민이 25만 명 이하이던 1988년의 직원수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을 10퍼센트 삭감했지만 그래도 시가 부담해야 할 연금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엔 부족했다. 시는 일주일에 사흘은 시립도서관을 열지 않았고 공원 관리비용도 삭감했다. 또한 주택 붐 이전에 지은 새로운 문화회관의 개관도 보류했다. 회관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해고했다. 리드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산 호세는 미국에서 열 번째로 큰 100만 인구의 도시를 1,600명의 공무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 정도의 인원으로는 한 도시를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

다. 어쩌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란 무엇일까? 왜 구태여 함께 모여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상황은 ‘공무원이 단 한 명에 이를 때까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면 시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만 남게 될 거라는 말이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먼 훗날의 일은 아닐 겁니다.”

한토막의 여유



10년후 한국경제 책임질 10대 기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0년 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2012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술명	세부내용
암 바이오마커 분석	다양한 특성의 암세포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하는 바이오마커와 다중암 진단키트 개발
실시간 음성자동통역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기술 결합해 실시간 통역 가능, 생략·도치 등 음성언어 특성 반영
스핀트랜지스터	전자의 전하와 스핀 이용하는 전자소자 기술, 비휘발성·초고속·초저전력 소모가 강점
미생물연료전지	미생물을 이용, 하수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기술
슈퍼독감백신	계속 변종을 일으키는 독감을 광범위하게 예방하는 백신기술
초전도 송전	대용량·고효율·장거리 전력 수송 가능한 초전도케이블을 이용해 전력 공급하는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피	반사·회절되는 빛에 담긴 물리적 특성 정보를 세밀하게 저장,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수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땅속에 묻히거나 빛을 오래 쬔면 자연분해되는 신물질
4G플러스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수십배 이상 전송용량이 뛰어난 기술
친환경 천연물 농약	식물추출물 등 천연물질을 이용, 환경과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농약

- KISTEP 발표 내용임

증시자금조달현황

(단위 : 건, 십억원)

연 / 월	주 식 ¹⁾										회 사 채 ²⁾		합 계	
	기업공개						유상증자		주 식 계					
	모 집		매 출		소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0	182 -	2,568.6 -	- -	- -	182 -	2,568.6 -	254 (86)	10,363.7 (5,788.9)	436 (86)	12,932.3 (5,788.9)	886	58,662.9	1,322	71,595.2
2001	169 (3)	1,531.1 (217.8)	- -	- -	169 (3)	1,531.1 (217.8)	215 (99)	6,356.9 (5,097.8)	384 (102)	7,888 (5,315.6)	1,245	87,194.9	1,629	95,082.9
2002	130 (8)	1,710.1 (594.5)	3 (3)	632.9 (632.9)	133 (11)	2,343 (1,227.4)	226 (124)	6,722.3 (6,207.1)	359 (135)	9,065.3 (7,434.5)	1,580	77,522.0	1,939	86,587.3
2003	79 (9)	1,102.4 (524.8)	1 (1)	35.5 (35.5)	80 (10)	1,137.9 (560.3)	311 (100)	8,282 (7,166.4)	391 (110)	9,419.9 (7,726.7)	1,697	61,757.5	2,088	71,177.4
2004	54 (8)	991.9 (555.6)	2 (2)	85.7 (85.7)	56 (10)	1,077.6 (641.3)	189 (57)	6,436.8 (4,526.2)	245 (67)	7,541.4 (5,167.5)	1,501	50,379.0	1,746	57,920.4
2005	77 (10)	1,298.8 (449.0)	1 (1)	2.7 (2.7)	78 (11)	1,301.5 (451.7)	246 (44)	3,514.1 (1,876.8)	324 (55)	4,815.6 (2,328.5)	1,451	48,103.1	1,775	52,918.7
2006	60 (9)	1,705.8 (1,116.7)	- -	- -	60 (9)	1,705.8 (1,116.7)	233 (37)	4,458.7 (2,389.5)	293 (46)	6,164.5 (3,506.2)	1,250	41,678.2	1,543	47,842.7
2007	68 (9)	2,302.2 (1,525.3)	- -	- -	68 (9)	2,302.2 (1,525.3)	326 (65)	14,291.9 (10,479.9)	394 (74)	16,594.1 (12,005.2)	1,188	45,159.8	1,582	61,753.9
2008	60 (8)	1,112.6 (549.7)	- -	- -	60 (8)	1,112.6 (549.7)	306 (53)	5,321.5 (1,986.4)	368 (61)	6,434.1 (2,536.1)	1,631	74,115.5	1,997	80,549.6
2009	65 (10)	1,674.1 (472.7)	- -	- -	65 (10)	1,674.1 (472.7)	309 (74)	9,222.8 (5,659.9)	374 (84)	10,896.9 (6,132.6)	530	47,681.4	904	58,578.3
2010	96 (21)	4,303.9 (2,938.6)	- -	- -	96 (21)	4,303.9 (2,938.6)	135 (35)	4,362.4 (3,138.6)	231 (56)	8,666.3 (6,077.2)	476	47,681.4	707	56,347.7
2011	67 (13)	2,438.5 (1,358.9)	- -	- -	67 (13)	2,438.5 (1,358.9)	78 (34)	9,409.6 (8,803.3)	145 (47)	11,848.1 (10,162.2)	583	61,797.3	728	73,645.4
2012. 1	2 (0)	57.4 (0)	- -	- -	2 (0)	57.4 (0)	3 (2)	219.0 (150.5)	5 (2)	276.4 (150.5)	51	5,105.0	56	5,381.4
2012. 2	3 (1)	80.6 (64.1)	- -	- -	3 (1)	80.6 (64.1)	5 (0)	45.1 (0)	8 (1)	125.7 (64.1)	56	6,684.4	64	6,810.1

주) 1. 주식 수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증권시장의 합계이며, ()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건수와 금액임.

2. 회사채는 2009년부터 일반회사채 발행실적임.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임.

상장주식 총괄

(단위 : 개사, 천주, 백만원)

연 / 월	회 사 수	상장주식수	상장자본금	시가총액	거 래 량	
					합 계	일 평 균
2000	704 (702)	19,638,667	84,929,875	188,041,489	73,785,337	306,163
2001	689 (688)	19,578,295	82,755,354	255,850,069	116,417,317	473,241
2002	683 (679)	26,463,384	109,786,871	258,680,756	209,167,796	857,245
2003	684 (677)	23,662,097	87,941,680	355,362,625	133,876,427	542,009
2004	683 (668)	23,426,899	85,518,481	412,588,138	92,850,770	372,894
2005	702 (662)	23,235,743	80,586,911	655,074,594	116,439,734	467,629
2006	727 (679)	24,960,514	82,945,813	704,587,507	68,936,782	279,096
2007	745 (686)	28,238,124	85,588,994	951,900,446	89,477,973	363,731
2008	765 (707)	29,097,293	89,662,221	576,927,703	88,149,063	355,439
2009	770 (711)	31,377,117	92,467,844	887,935,182	7,371,315	351,015
2010	777 (719)	33,706,254	98,411,692	1,141,885,458	8,778,235	399,010
2011	791 (732)	35,402,934	102,935,404	1,014,999,162	9,118,909	434,233
2012. 1	791 (731)	35,551,670	103,663,493	1,117,151,541	8,596,087	429,804
2012. 2	791 (732)	35,663,560	104,258,939	1,163,380,789	13,202,088	628,670

주) 1. 상기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외국주 및 해외DR은 제외되었음.

3. 회사수(안)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택투자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수임.